
알기쉬운 조세제도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세는 국가 재정의 주요한 수입원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과 소득분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각 국가에서는 효율적이고 공평한 과세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조세법률 주의를 채택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 조세를 부과·징수하고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세제도는 특성상 세목이 다양하고 과세체계 등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동일 세목이라도 나라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체계 전반과 해외 주요국들의 조세 현황을 비교·정리해 「알기쉬운 조세제도」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재정위기 극복과 각국의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수립, 복지제도의 확대에 따른 재정기반 마련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조세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국회의원님들의 조세관련 입법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조세정책의 주요 쟁점 정리와 조세제도의 효과 분석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 5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주 영 진

총괄	박종규	경제분석실장
기획·조정	조의섭	조세분석심의관
	신향진	세제분석과장
집필	최천규	김대철 이영숙
	강민지	채은동 경제분석관
지원·편집	박미현	세제분석과

「알기쉬운 조세제도」는 조세제도 및 조세정책에 대한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788-3778 rtsa@nabo.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I 조세개요

1. 조세의 개념	19
2. 조세의 분류	20
가. 국세와 지방세	20
나. 직접세와 간접세	21
다. 보통세와 목적세	21
라. 독립세와 부가세	22
마. 종가세와 종량세	22
바.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기타 - OECD 분류기준	22
사.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23
3. 세목별 세입예산	26
가. 2011년 국세 세입예산	26
나. 2010년 지방세 세입예산	29
4. 주요 조세지표 비교	32
가. 조세부담률	32
나. 국민부담률	34
다. 조세체계	36
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	38

II 소득세

1. 2012년 소득세 과세체계	43
가. 과세방식 및 소득세 결정과정	43
나. 종합소득금액 도출	46
다. 소득공제제제도	48
라. 기본세율 및 분리과세 대상 원천징수세율	52
마. 세액공제·세액감면제도	55
2. 세율구조 및 주요 공제제도의 변화	57
가. 소득세 세율구조 변경내역	57
나. 주요 공제제도 변경내역	59
3. 우리나라 및 OECD국가의 소득세 부담 현황	63
4. 주요국의 소득세제	68
가. 과세단위	68
나. 세율구조	69
다. 과표구간 수 및 최고 과표구간 문턱	76
라. 공제제도	79
마. 주요국의 소득세제 요약	81
바. 소득세 부담현황	83
5. 주요국의 소득세제 최근 동향	87

Ⅲ 법인세

1. 우리나라 법인세제 개요 및 연혁 91

- 가. 법인세 91
- 나. 법인 구분 92
- 다. 법인 구분별 납세의무 92
- 라. 법인세 연혁 93

2.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제 96

- 가. 과세체계 96
- 나. 세부담 구조 97
- 다. 각 사업년도 소득 99
- 라. 익금 및 익금불산입 99
- 마. 손금 및 손금불산입 100
- 바. 공제 102
- 사. 총당금 102
- 아. 양도손익 103
- 자. 연결납세제도 104
- 차. 동업기업 과세특례 104
- 카. 법인 관련 주요 조세지원제도 105
- 타. 국제 조세 107

3. 주요국의 법인세제 비교 108

- 가. 과세대상자 108
- 나. 법인세 비중 109

다. 과세구간과 세율 113
 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120
 마. 자본소득 121
 바. 조세감면제도 122
 사. 연결납세제도 123
 아. 주요국의 법인세제 기타 사항 124

4. 주요국의 법인세제 최근 동향 125

IV 소비세제

1. 부가가치세 131

가. 개요 131
 나. 납세의무자 135
 다.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136
 라. 과세기간 및 과세거래 137
 마. 과세표준 및 세율 139
 바. 납부세액의 산출 139
 사. 영세율과 면세 140
 아. 간이과세제도 143

2. 개별소비세 146

가. 개요 146
 나. 과세방법 150

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세율	150
라. 주요 면세대상	152
3. 기타 소비세제	153
가. 교통·에너지·환경세	153
나. 주세	156
다. 담배소비세	160
4. 주요국의 소비세제 비교	163
가. 우리나라 및 OECD국가의 소비세제 부담 현황	163
나.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제)	166
다. 개별소비세	170
5. 주요국의 소비세제 최근 동향	174

V **재산과세**

1. 양도소득세	179
가. 과세체계	179
나. 양도소득세 현황	185
2. 상속세 및 증여세	190
가. 개요	190
나. 상속세	195

다. 증여세 202
라. 주요국의 상속세제 및 최근 동향 207

3. 종합부동산세 213
가. 과세체계 213
나. 종합부동산세 현황 217

VI 부 록

부록 1: 2012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정리 223

부록 2: 세제용어 해설 230

표 차례

[표 1] 일반세법의 종류와 내용	20
[표 2] OECD 조세 분류체계에 따른 우리나라 국세분류	23
[표 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25
[표 4] 2011년 국세징수 실적	27
[표 5] 국세 세목별 세수구성비	28
[표 6] 연도별 지방세 세수실적	30
[표 7] 지방세 세목별 세수구성비	31
[표 8] 연도별 조세부담률 추이	32
[표 9] OECD국가들의 연도별 조세부담률 추이	33
[표 10] OECD국가들의 연도별 국민부담률 추이	35
[표 11] 한국과 OECD평균의 조세구조 비교	37
[표 12] OECD국가들의 연도별 국세 및 지방세 비중 추이	39
[표 13] 근로소득공제 및 연금소득공제 제도, 2012	47
[표 14]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연금소득공제, 2012	52
[표 15] 종합소득세 적용 기본세율, 2012	53
[표 16] 분리과세대상 소득 원천징수세율, 2012	54
[표 17] 주요 세액공제·감면 제도, 2012	55
[표 18] 소득세 세율체계의 변화추이	57
[표 19] 이자·배당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추이	58
[표 20] 근로소득공제 제도 변화	59
[표 21] 인적공제 제도의 변화	60
[표 22]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 변화	61
[표 23] 특별공제 제도의 변화	62

[표 24] 한국과 OECD국가의 소득세 부담구조 비교	64
[표 25] 종합소득세 부담구조, 2010	67
[표 26] 근로소득세 부담구조, 2010	67
[표 27]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단위	68
[표 28] 소득세 명목최고세율(중앙정부기준)	70
[표 29] 중앙정부 기준 소득세 최고 세율 및 과표구간 문턱, 2012	73
[표 30] 소득세 명목최고세율(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기준)	75
[표 31] 중앙정부기준 과세표준 구간 개수	77
[표 32] 소득세 최고세율 문턱(평균소득의 배수)	78
[표 33] 주요국의 소득세 공제제도, 2012	79
[표 34] 한국 및 주요 OECD국가의 소득세 과세체계현황(2012년 기준)	81
[표 35] 평균유효세율(무자녀 1인 가구 기준)	84
[표 36] OECD국가의 GDP대비 소득세 부담	85
[표 37] OECD국가의 총조세대비 소득세 부담	86
[표 38] 소득세제 관련 최근 동향	87
[표 39] 현행 우리나라 법인 구분 및 과세내용	93
[표 40] 우리나라 법인세 개정 추이	95
[표 41] 과세표준별 법인세 부담구조(2010, 신고기준)	97
[표 42] 기업규모별 법인세 부담구조(2010, 신고기준)	98
[표 43] 법인세 익금 불산입	100
[표 44] 법인세 손금 불산입	101
[표 45] 법인 관련 주요 공제 및 감면제도	106
[표 46] 주요국의 법인세 과세대상 비교	108
[표 47] 주요국의 법인세 비중 비교: GDP vs. 총조세	109

[표 48] OECD국가의 GDP대비 법인세 부담	111
[표 49] OECD국가의 총조세대비 법인세 부담	112
[표 50] OECD 국가의 과세구간 개수	114
[표 51] OECD 국가의 법인세 명목최고세율(중앙정부 기준)	115
[표 52] OECD 국가의 법인세 명목최고세율(지방세 포함)	116
[표 53] 미국의 법인세율 구조 및 추이	117
[표 54] 영국의 법인세율 구조 및 추이	118
[표 55] 일본의 법인세율 구조 및 추이	119
[표 56] 주요국의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 비교	120
[표 57] 주요국 자본소득세제 비교	121
[표 58] 주요국 조세감면제도 비교	122
[표 59] 주요국 연결납세제도 비교	123
[표 60] 주요국 법인세제 기타 사항	124
[표 61] 주요국 법인세제 최근 동향	125
[표 62] 참고: 기타 아시아 주변국들의 법인세 현황(2012년 기준)	127
[표 63] 최근 5년간 국세 국세징수액 중 부가가치세 비중	133
[표 64] 최근 5년간 간접세의 비중	134
[표 65] 2010년도 과세유형별 신고인원과 과세표준 및 납부신고세액	135
[표 66] 과세기간	138
[표 67]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대상	141
[표 68]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142
[표 69]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	143
[표 70] 업종별 부가가치율	145
[표 71] 최근 5년간 개별소비세 신고현황	148

[표 72] 2010년 기준 개별소비세 품목별 신고현황	149
[표 73] 과세물품 적용세율	151
[표 74] 과세물품 적용세율	151
[표 75] 유흥음식행위 적용세율	152
[표 76] 개별소비세법상 주요 면세대상	152
[표 77]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현황	154
[표 78] 2010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현황(유류별)	154
[표 79] 주세 신고 현황(연도별)	157
[표 80] 2010년 주세 신고 현황(주류별)	158
[표 81] 주류의 증가세율	160
[표 82] 최근 5년간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비중(징수액 대비)	161
[표 83] 2010년 종별 담배소비세 과세현황	162
[표 84] 담배소비세의 세율	163
[표 85] OECD국가의 GDP대비 소비세제 부담	164
[표 86] OECD국가의 총조세대비 소비세제 부담	165
[표 87]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도입연도	166
[표 88]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주요 비과세 품목	167
[표 89]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세율구조	168
[표 90] 주요국의 중소기업자에 대한 배려조치	169
[표 91] 주요국의 주세 비교	170
[표 92] 주요국의 담배소비세 세율 등	172
[표 93] 주요국의 유류세 비교	173
[표 94] 양도소득금액 규모별 추이: 2006~2010년	187
[표 95] 세액공제·감면액 추이: 2006~2010년	188
[표 96] 2010년 세액감면 현황	189
[표 97] 상속세 징수추이: 2006~2010년	191

[표 98] 상속세 결정 현황	192
[표 99] 자산종류별 상속세 결정 현황: 2006~2010년	193
[표 100] 국세 수납액 중 증여세의 비중	194
[표 101] 증여재산종류별 결정 현황	194
[표 102] 상속세의 과세대상	196
[표 103]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198
[표 1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공제	200
[표 105] 상속세율	201
[표 106] 상속세의 세액공제 등	202
[표 107] 과세대상	204
[표 108] 납세의무자	205
[표 109] 과세표준 구분	206
[표 110] 증여재산공제	206
[표 111] 증여세 세액공제	207
[표 112] 주요국의 상속세 과세방법	208
[표 113] 주요국의 상속세 계산시 증여세 고려방법	208
[표 114] 주요국의 상속세 기본공제 등	209
[표 115] 주요국의 상속세율	209
[표 116] 상속·증여세율 체계	211
[표 117] 연도별 비과세금액	212
[표 118]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 변화: 2005~2012년	213
[표 119]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214
[표 120] 종합부동산세 세율 추이	215
[표 121] 과세대상별 종합부동산세: 2010년	219

그림 차례

[그림 1]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식	44
[그림 2]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과정	45
[그림 3] 소득금액 계산구조	46
[그림 4] 종합소득자 대상 소득공제	51
[그림 5] GDP 대비 소득세 비중 및 최고구간 명목세율 추이	65
[그림 6] 근로소득자 과세자비율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비율 추이	66
[그림 7] 경상GDP vs. 법인세액(징수 기준)	91
[그림 8] 법인세 계산 절차	96
[그림 9] 과세표준별 법인세 부담 분포 추이(신고 기준)	97
[그림 10] 기업규모별 법인세 부담 분포 추이(신고 기준)	98
[그림 11] 주요국의 법인세 비중 비교: GDP 기준	110
[그림 12] 주요국의 법인세 비중 비교: 총조세 기준	110
[그림 13]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계산	140
[그림 14] 양도소득세수 추이: 2000~2010년	185
[그림 15] 상속세의 과세체계	195
[그림 16] 증여세 과세체계	203
[그림 17] 종합부동산세 계산 흐름도	216
[그림 18]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인원과 세수: 2005~2010	217
[그림 19] 종부세 과세대상 인원과 1인당 세액: 2005~2010년	218

I

조세개요

1. 조세의 개념	19
2. 조세의 분류	20
3. 세목별 세입예산	26
4. 주요 조세지표 비교	32



I 조세개요

1. 조세의 개념

- 조세는 정부의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자원을 민간부문으로부터 정부부문으로 강제로 이전하는 수단임
 -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공권력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이 소유한 재산이나 소득, 소비로부터 개별적으로 대가를 보상함이 없이 강제력에 의해 징수하는 돈임
-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조세를 정의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¹⁾
 - 법학적으로 조세를 정의하고 있는 입법례는 1977년에 제정된 독일의 조세기본법으로, 1919년에 제정한 Reich 조세기본법의 규정을 거의 답습함
 - － 동법 제3조에서 “조세는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며, 공법상 단체가 수입을 얻기 위하여 법률로 당해 급부에 결부되는 요건사실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게 과해지는 금전급부이다”라고 규정
- 우리나라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1) 최명호, 「세무학 강의」, 영화조세통람, 2007



2. 조세의 분류

가. 국세와 지방세

- 국세와 지방세는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세주체가 중앙정부에 있느냐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느냐에 따른 분류임
 - 국세는 중앙정부인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 내국세와 관세로 분류됨
 - 우리나라의 경우 내국세는 각 세목마다 따로 세법을 제정하고 있고, 관세는 「관세법」에 의해 규정
 - 내국세는 국세 중 관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로 함)를 제외한 국세임
 - 관세에 대해서는 국세에 관한 일반법적 내지 통칙법적 성격을 갖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및 동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세율 등은 국제조약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것이 일반적임

▮ [표 1] 일반세법의 종류와 내용 ▮

종류	내용
국세기본법	국세에 관한 기본적 공통적인 사항 및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죄에 대한 처벌 절차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제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 사항 및 국가간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1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과세권에 의해 부과하는 조세로, 도세와 시·군세로 분류됨
 -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는 단일의 「지방세법」에 의해 여러 가지 세목을 규정

나. 직접세와 간접세

- 직접세와 간접세는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경제상의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가의 유무에 따른 분류임
 - 직접세는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경제상의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조세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임
 - 간접세는 조세부담이 경제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어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경제상의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임

다. 보통세와 목적세

- 보통세와 목적세는 조세수입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가의 유무에 따른 분류임
 - 보통세는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조세로, 대부분의 국세와 지방세가 보통세임
 - 목적세는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하는 조세로, 국세 중에서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목적세이고, 지방세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임



라. 독립세와 부가세

- 독립세와 부가세는 다른 조세에 부가 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임
 - 부가세(surtax)는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로, 국세 중에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가 있음

마. 종가세와 종량세

- 종가세와 종량세는 과세표준을 화폐금액으로 표시하느냐 혹은 물량으로 표시되느냐의 기준에 따른 분류임
 - 종가세는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로, 대부분의 조세가 여기에 속함
 - 종량세는 과세표준을 중량, 용량, 건수, 인원 등 물량에 의하여 표시하며,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의 과세장소 입장행위 중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과 주세 중 주정이 여기에 속함

바.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기타 - OECD 분류기준

- OECD에서는 과세물건을 기준으로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기타과세로 분류함
 - 소득세는 수입 또는 소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임
 -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한다는 사실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과세되는 조세임
 - 소비세는 납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대해 간접적으로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임

[표 2] OECD 조세 분류체계에 따른 우리나라 국세분류

종류	내용
소득(income and profits)과세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세·법인세 감면분)
재산(property)과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분)
소비(consumption)과세	부가가치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관세, 교육세(주세·교통세·개별소비세·금융보험업자 수입분), 농어촌특별세(개별소비세·관세 감면분)
기타(other taxes)	과년도 수입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1

사.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대체로 1967년의 대대적인 세제개혁에 의해 기본 골격이 처음으로 현대화되었고, 그 이후의 중요한 세제개혁은 다음과 같음²⁾

- 1974년에 종래 분리과세를 그 기본구조로 하면서 일정금액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만 종합과세하던 소득세체계를 전면적인 종합과세체계로 전환
- 1976년에 종래의 일반소비세인 영업세를 폐지함과 동시에 잡다했던 개별소비세 세목을 통합하여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인 특별소비세를 도입
- 1989년에 토지공개념 관련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토지과세와 관련하여 종합토지세(지방세)와 토지초과이득세(내국세)를 도입하였으나, 무리한 입법으로 폐지

2) 최명호, 「세무학 강의」, 영화조세통람, 2007



- 2003년에 변칙상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강화하고, 특히 증여세는 항목별 포괄주의에서 완전포괄주의로 전환
 - 2004년에 부동산세제상의 보유과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 종합토지세(지방세)와 건물분 재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로 개편
- 우리나라의 조세는 2012년 현재 14개의 국세 세목과 11개의 지방세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14개 국세 중에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 10개의 내국세와 관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3개의 목적세로 구성
 - 10개의 내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5개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주세 5개의 간접세로 구성
 - 11개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9개의 보통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개의 목적세로 구성

■ [표 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

국세 (14개)	내국세 (10개)	직접세 (5개)	소득세	소득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¹⁾	종합부동산세법
	간접세 (5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인지세	인지세법	
		주세 ¹⁾	주세법	
관세(1개)			관세법	
목적세 (3개)	교통·에너지·환경세 ³⁾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육세 ²⁾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 ²⁾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 (11개)	도세 (6개)	보통세 (4개)	취득세	지방세법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목적세 (2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 (5개)	보통세 (5개)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²⁾	
			담배소비세	

주: 1) 종합부동산세와 주세의 경우 행정부는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세목의 세수가 지방교부 대상이 되는 내국세 세목(세수 사용목적이 특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재정수요에 총당하는 세목)으로 간주하여 내국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2)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는 부가세(surtax)임

3)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폐지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될 예정임



3. 세목별 세입예산

가. 2011년 국세 세입예산

- 2011년 총국세 규모는 실적기준으로 192.4조원으로, 2010년 국세실적(177.7조원) 대비 8.3%(14.7조원) 증가
 - 대부분의 국세(12개)는 모두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세입으로 계상되는데, 일반회계 세입은 185조원으로 2010년 실적(170.9조원) 대비 8.2%(14.1조원) 증가
 - 국세 중 주세는 기획재정부 소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세입항목으로, 농어촌특별세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항목으로 계상되는데, 특별회계 세입은 7.4조원으로 2010년 실적(6.8조원) 대비 9.5%(0.6조원) 증가

- 2011년 총국세 중에서 2010년 실적 대비 증가한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목이 증가하였고, 감소한 세목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세임
 - 법인세의 경우 2010년 귀속 기업실적 호조로 2010년 실적 대비 20.4%(7.6조원) 증가하였으며, 소득세의 경우에도 2010년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2010년 실적 대비 12.9%(4.8조원) 증가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2011.12.31(토) 공휴일로 인한 2012.1.2로의 연도이월(-0.9조원) 등에 기인하여 2010년 실적 대비 17.4%(2.3조원) 감소

【표 4】 2011년 국세징수 실적

(단위: 조원, %)

	2010 실적	2011		2010 실적 대비		2011 예산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²⁾	증감률 ²⁾	증감액 ²⁾	증감률 ²⁾
총 국 세	177.7	187.6	192.4	14.7	8.3	4.8	2.5
[일반회계]	170.9	180.8	185.0	14.1	8.2	4.2	2.3
○ 내국세 ¹⁾	140.7	151.3	157.1	16.4	11.7	5.8	3.8
• 소득세	37.5	40.0	42.3	4.8	12.9	2.3	5.6
- 종합소득세	6.4	6.4	8.3	1.9	30.3	1.9	29.1
- 근로소득세	15.6	16.5	18.4	2.8	18.1	1.9	11.5
- 양도소득세	8.2	8.7	7.4	-0.8	-9.5	-1.3	-15.0
• 법인세	37.3	41.3	44.9	7.6	20.4	3.6	8.7
• 상속증여세	3.1	3.1	3.3	0.2	8.3	0.2	7.8
• 부가가치세	49.1	52.9	51.9	2.8	5.7	-1.0	-1.9
• 개별소비세	5.1	5.1	5.6	0.5	9.3	0.5	10.5
• 증권거래세	3.7	3.9	4.3	0.6	16.7	0.4	9.1
• 인 지 세	0.5	0.5	0.6	0.1	19.5	0.1	17.2
• 과년도수입	4.4	4.5	4.2	-0.2	-4.8	-0.3	-6.6
○ 교통에너지환경세	13.9	12.4	11.6	-2.3	-17.4	-0.8	-6.6
○ 관 세	10.7	11.4	11.0	0.3	3.0	-0.4	-3.3
○ 교 육 세	4.6	4.6	4.2	-0.4	-8.6	-0.4	-7.7
○ 종합부동산세	1.0	1.1	1.1	0.1	7.1	0.0	3.2
[특별회계]	6.8	6.8	7.4	0.6	9.5	0.6	8.1
○ 주 세	2.9	2.6	2.5	-0.4	-12.1	-0.1	-4.4
○ 농 특 세	3.9	4.2	4.9	1.0	25.5	0.7	15.9

주: 1)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세목의 세수가 지방교부 대상이 되는 내국세 세목(세수 사용목적이 특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세목)을 말하는 것으로 강화상의 내국세 범위와는 다름

2) 증감액과 증감률은 단위를 조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반올림되어 세목별계와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11년 국세징수 실적, 2012



□ 2011년 국세 세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27%)가 총국세 중에서 가장 세수비중이 높은 세목이고, 그 다음으로 법인세(23.3%), 소득세(22.0%), 교통·에너지·환경세(6.0%)가 뒤를 잇고 있음³⁾

【표 5】 국세 세목별 세수구성비

(단위: 조원, %)

	2010		2011	
	실적	구성비 ¹⁾	실적	구성비 ¹⁾
총 국 세	177.7	100.0	192.4	100.0
[일반회계]	170.9	96.2	185	96.2
○ 내국세 ¹⁾	140.7	79.2	157.1	81.7
• 소득세	37.5	21.1	42.3	22.0
- 종합소득세	6.4	3.6	8.3	4.3
- 근로소득세	15.6	8.8	18.4	9.6
- 양도소득세	8.2	4.6	7.4	3.8
• 법인세	37.3	21.0	44.9	23.3
• 상속증여세	3.1	1.7	3.3	1.7
• 부가가치세	49.1	27.6	51.9	27.0
• 개별소비세	5.1	2.9	5.6	2.9
• 증권거래세	3.7	2.1	4.3	2.2
• 인 지 세	0.5	0.3	0.6	0.3
• 과년도수입	4.4	2.5	4.2	2.2
○ 교통·에너지·환경세	13.9	7.8	11.6	6.0
○ 관 세	10.7	6.0	11	5.7
○ 교 육 세	4.6	2.6	4.2	2.2
○ 종합부동산세	1	0.6	1.1	0.6
[특별회계]	6.8	3.8	7.4	3.8
○ 주 세	2.9	1.6	2.5	1.3
○ 농 특 세	3.9	2.2	4.9	2.5

주: 1) 구성비는 단위를 조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반올림되어 세목별계와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음

3)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

나. 2010년 지방세 세입예산

- 2010년 지방세 규모는 실적기준으로 49조 1,062억원으로, 2009년 지방세 실적(45조 1,679억원) 대비 8.6%(3조 9,383억원) 증가
 - 지방세 세수실적이 2010년에 호전된 것은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악화된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취·등록세의 세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또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도입

- 2010년 지방세 중에서 2009년 실적 대비 증가한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등 대부분의 세목이 증가하였고, 감소한 세목은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임
 - 국세의 부가세인 주민세의 경우 많은 세수가 지방소득세로 전환함으로써 2009년 실적 대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지방소득세가 8조 1,454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



[표 6] 연도별 지방세 세수실적

(단위: 억원, %)

	2008		2009		2010	
	실 적	증감률	실 적	증감률	실 적	증감률
취득세	69,160	-5.0	66,439	-3.9	68,249	2.7
등록세	71,429	-1.5	71,314	-0.2	73,701	3.3
면허세	726	-5.4	735	1.2	762	3.7
레저세	9,890	12.6	10,023	1.3	10,675	6.5
공동시설세	5,885	7.7	5,912	0.5	6,496	9.9
지역개발세	926	-8.0	908	-1.9	954	5.1
지방교육세	48,644	7.2	47,944	-1.4	48,710	1.6
주민세	81,630	9.2	75,519	-7.5	2,234	-95.7
재산세	44,113	14.9	44,233	0.3	48,173	8.9
자동차세	26,109	9.2	28,340	8.5	31,195	10.1
주행세	30,812	-6.1	32,871	6.7	31,691	-3.6
도축세	524	0.9	557	6.3	581	4.3
담배소비세	29,204	5.5	30,107	3.1	28,749	-4.5
종합토지세	0	-	9	-	-8	-
도시계획세	21,828	13.7	22,692	4	24,653	8.6
지방소비세	-	-	-	-	26,789	-
지방소득세	-	-	-	-	81,454	-
사업소세	7,995	9.4	8,080	1.1	-8	-
과년도수입	5,923	-13.5	5,996	1.2	5,996	0.0
합 계	454,798	4.3	451,679	-0.7	491,062	8.6

주: 1.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는 2011년부터 취득세로 통합
 2. 등록세(취득무관분)와 면허세는 2011년부터 등록면허세로 통합
 3.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2011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
 4.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2011년부터 자동차세로 통합
 5. 도축세는 2011년부터 폐지
 6. 종합토지세는 2005년부터 폐지
 7. 도시계획세는 2011년부터 재산세로 통합
 8. 사업소세는 2011년부터 지방소득세(중업원분)와 주민세(재산분)로 분할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1

□ 2010년 지방세 세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16.6%)가 지방세 중에서 가장 세수비중이 높은 세목이고, 그 다음으로 등록세(15%), 취득세(13.9%), 지방교육세(9.9%), 재산세(9.8%)가 뒤를 잇고 있음

■ [표 7] 지방세 세목별 세수구성비 ■

(단위: 억원, %)

	2009		2010	
	실적	구성비	실적	구성비
취득세	66,439	14.7	68,249	13.9
등록세	71,314	15.8	73,701	15.0
면허세	735	0.2	762	0.2
레저세	10,023	2.2	10,675	2.2
공동시설세	5,912	1.3	6,496	1.3
지역개발세	908	0.2	954	0.2
지방교육세	47,944	10.6	48,710	9.9
주민세	75,519	16.7	2,234	0.5
재산세	44,233	9.8	48,173	9.8
자동차세	28,340	6.3	31,195	6.4
주행세	32,871	7.3	31,691	6.5
도축세	557	0.1	581	0.1
담배소비세	30,107	6.7	28,749	5.9
종합토지세	9	0.0	-8	-
도시계획세	22,692	5.0	24,653	5.0
지방소비세	-	-	26,789	5.5
지방소득세	-	-	81,454	16.6
사업소세	8,080	1.8	-8	-
과년도수입	5,996	1.3	5,996	1.2
합계	451,679	100.0	491,062	100.0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1을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4. 주요 조세지표 비교

가. 조세부담률

-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임
 - 조세부담률은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text{조세부담률} = \frac{\text{국세} + \text{지방세}}{\text{GDP}} \times 100$$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2006년 19.7%에서 2010년 19.3%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표 8】 연도별 조세부담률 추이

(단위: 조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GDP		908.7	975	1,026.50	1,063.10	1,172.9
규 모	조세	179.3	205	212.8	209.7	226.9
	- 국세	138	161.5	167.3	164.5	117.7
	- 지방세	41.3	43.5	45.5	45.2	49.2
부담률 ¹⁾	조세부담률	19.7	21.0	20.7	19.7	19.3
	- 국세	15.2	16.5	16.3	15.5	15.1
	- 지방세	4.5	4.5	4.4	4.2	4.2

주: 1) 국민계정 기준년도(2005년)에 기초하여 산정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1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임

■ [표 9] OECD국가들의 연도별 조세부담률 추이 ■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호주	29.8	29.3	29.4	27.0	25.9	-
오스트리아	27.7	27.3	27.7	28.5	27.8	27.5
벨기에	30.9	30.7	30.1	30.2	28.7	29.6
캐나다	28.4	28.4	28.2	27.5	27.0	26.2
칠레	20.1	21.8	22.7	21.1	16.9	19.4
체코	21.5	20.8	21.1	20.0	19.4	19.3
덴마크	49.7	48.6	47.9	47.1	47.1	47.2
핀란드	31.9	31.6	31.1	30.9	29.9	29.6
프랑스	27.8	28.0	27.5	27.3	25.7	26.3
독일	21.0	21.9	22.8	23.1	22.9	22.1
그리스	20.6	20.6	20.9	20.5	19.8	20.2
헝가리	25.7	25.3	27.2	27.1	27.4	26.1
아이슬란드	37.5	38.2	37.6	33.9	30.8	32.0
아일랜드	25.7	27.1	26.2	23.9	22.2	22.3
이탈리아	28.3	29.8	30.4	29.8	29.7	29.4
일본	17.3	17.7	18.0	17.4	15.9	-
한국	18.9	19.7	21.0	20.7	19.7	19.3
멕시코	15.2	15.5	15.0	18.2	14.5	15.2
네덜란드	25.4	25.1	25.3	24.7	24.4	-
노르웨이	34.6	35.2	34.5	33.9	32.8	33.1
폴란드	20.7	21.8	22.8	22.9	20.4	-
포르투갈	22.7	23.4	24.0	23.8	21.6	22.3
스페인	23.7	24.6	25.2	21.2	18.6	19.7
스웨덴	35.8	36.0	35.0	34.9	35.3	34.3
스위스	22.2	22.2	22.1	22.4	22.6	22.9
터키	18.8	19.0	18.9	18.2	18.6	19.6
영국	29.0	29.7	29.4	28.9	27.6	28.4
미국	20.5	21.3	21.4	19.8	17.6	18.3
OECD 평균	26.1	26.3	26.4	25.7	24.6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2



나. 국민부담률

□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들의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임

- 국민부담률은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임

$$\text{국민부담률} = \frac{\text{국세} + \text{지방세} + \text{사회보장기여금}}{\text{GDP}} \times 100$$

□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과 같이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임

- 국민부담률도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2006년 25.0%에서 2010년 25.1%로 거의 변화가 없는 추세임

■ [표 10] OECD국가들의 연도별 국민부담률 추이 ■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호주	29.8	29.3	29.4	27.0	25.9	-
오스트리아	42.1	41.5	41.8	42.8	42.7	42.0
벨기에	44.6	44.2	43.6	44.1	43.2	43.8
캐나다	33.4	33.3	33.0	32.2	32.0	31.0
칠레	21.6	23.2	24.0	22.5	18.4	20.9
체코	37.5	37.0	37.3	36.0	34.7	34.9
덴마크	50.8	49.6	48.9	48.1	48.1	48.2
핀란드	43.9	43.8	43.0	42.9	42.6	42.1
프랑스	44.1	44.4	43.7	43.5	42.4	42.9
독일	35.0	35.6	36.0	36.4	37.3	36.3
그리스	31.9	31.2	31.8	31.5	30.0	30.9
헝가리	37.3	37.3	40.3	40.1	39.9	37.6
아이슬란드	40.7	41.5	40.6	36.7	33.9	36.3
아일랜드	30.3	31.7	31.0	29.1	27.8	28.0
이탈리아	40.8	42.3	43.4	43.3	43.4	43.0
일본	27.4	28.0	28.3	28.3	26.9	-
한국	24.0	25.0	26.5	26.5	25.5	25.1
멕시코	18.1	18.2	17.7	20.9	17.4	18.1
네덜란드	38.4	39.1	38.7	39.1	38.2	-
노르웨이	43.5	43.9	43.6	42.9	42.9	42.8
폴란드	33.0	34.0	34.8	34.2	31.8	-
포르투갈	31.2	31.9	32.5	32.5	30.6	31.3
스페인	35.7	36.6	37.2	33.3	30.6	31.7
스웨덴	48.9	48.3	47.4	46.4	46.7	45.8
스위스	29.2	29.1	28.9	29.1	29.7	29.8
터키	24.3	24.5	24.1	24.2	24.6	26.0
영국	35.7	36.4	36.0	35.7	34.3	35.0
미국	27.1	27.9	27.9	26.3	24.1	24.8
OECD 평균	35.0	35.1	35.2	34.6	33.8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2



다. 조세체계

-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는 OECD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원으로, 2009년 전체 세수의 33%를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모두 OECD 평균에 비해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⁴⁾

- OECD국가에서 개인소득세는 1985년 전체 세원의 30%에서 2009년 25%로 하락했지만,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험료 비중은 1985년 22%에서 2009년 27%로 증가함
 -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 비중도 1985년 2%에서 2009년 23%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27%)에 비해 4%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OECD국가에서 재산세 비중은 1985년에서 2009년까지 비교적으로 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산세 비중은 1985년 9%에서 2009년 12%로 증가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캐나다, 일본, 영국, 미국의 재산세 비중이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OECD국가에서 소비세 비중은 32%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가 대부분인 일반소비세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OECD국가들의 일반소비세 비중은 1985년 16%에서 2009년 20%로 증가한 반면, 특별소비세 비중은 1985년 16%에서 2009년 11%로 감소함⁵⁾⁶⁾

4) 호주,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합한 비중은 전체 세수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0, 2011)

5) OECD 분류에 따르면, 일반소비세(General consumption tax)는 부가가치세(VAT)와

-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세 비중은 1985년에 주요 세원으로 자리 잡았으나, 2009년에 32% 수준으로 OECD 평균에 도달함
 - 반면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비중은 1985년 21%에서 2009년 17%로 감소하여 OECD 평균인 20%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특별소비세 비중은 2009년 15%로 OECD 평균인 11%에 비해 높은 수준임

【표 11】 한국과 OECD평균의 조세구조 비교

(단위: %)

	1985		1995		2005		2009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개인소득세 ¹⁾	15	30	18	26	13	24	14	25
법인소득세	11	8	12	8	16	10	14	8
사회보험료	2	22	12	25	21	25	23	27
급여세	1	1	0	1	0	1	0	1
재산세	9	5	14	5	12	6	12	5
소비세	59	32	41	32	34	31	32	31
- 일반소비세 ²⁾	21	16	18	19	17	20	17	20
- 특별소비세	38	16	23	13	17	11	15	11
기타	3	2	3	3	3	3	5	3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OECD 기준으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분류하기 어려운 1985년의 주민세와 1995년의 농특세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 개인소득세로 포함

2)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소비세는 부가가치세(VAT)만 존재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0, 2011

판매세(sales tax)이며, 특별소비세(Specific consumption tax)는 개별소비세(excises tax), 관세(custom tax) 등이 포함됨

- 6) 전반적으로 OECD국가들의 특별소비세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멕시코(30%)와 터키(25%)의 특별소비세 비중은 전체 세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

-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가 재정분권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방세수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방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것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09년 기준 78.5%: 21.5%로 국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⁷⁾
 - 동 비율은 연방제 국가들의 평균(68.7%: 31.3%)보다 국세 비중은 높고, 지방세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비연방제 국가들의 평균(84%: 16%)보다 국세 비중은 낮고, 지방세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1975년 89.8%: 10.2%에서 1995년 78.7%: 21.3%를 거쳐 2009년 78.5%: 21.5%까지 지방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7) 2010년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8.3%: 21.7%임(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1)

■ [표 12] OECD국가들의 연도별 국세 및 지방세 비중 추이

(단위: %)

	1975		1995		2009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연방제국가(Federal Countries)]						
호주	80.1	19.9	77.6	22.4	80.1	19.9
오스트리아	69.2	30.8	91.7	8.3	93.1	6.9
벨기에	93.8	6.2	90.2	9.8	84.8	15.2
캐나다	52.9	47.1	45.5	54.5	46.0	54.0
독일	52.6	47.4	52.5	47.5	51.8	48.2
멕시코			96.2	3.8	95.6	4.4
스위스	39.4	60.6	43.0	57.0	47.2	52.8
미국	57.0	43.0	55.9	44.1	47.8	52.2
평균	61.9	38.1	69.5	30.5	68.7	31.3
[지역제국가(Regional country)]						
스페인	91.8	8.2	79.3	20.7	45.6	54.4
[비연방제국가(Unitary countries)]						
칠레	-	-	93.3	6.7	92.0	8.0
체코	-	-	98.5	1.5	97.9	2.1
덴마크	69.4	30.6	67.4	32.6	73.7	26.3
핀란드	70.4	29.6	68.9	31.1	66.0	34.0
프랑스	87.2	12.8	79.5	20.5	70.5	29.5
그리스	95.2	4.8	98.7	1.3	98.9	1.1
헝가리	-	-	96.2	3.8	90.4	9.6
아이슬란드	81.3	18.7	79.2	20.8	72.7	27.3
아일랜드	91.6	8.4	97.2	2.8	96.2	3.8
이탈리아	98.3	1.7	92.1	7.9	78.2	21.8
일본	63.9	36.1	62.0	38.0	53.3	46.7
한국	89.8	10.2	78.7	21.3	78.5	21.5
네덜란드	98.1	1.9	95.4	4.6	94.2	5.8
노르웨이	69.3	30.7	74.9	25.1	86.0	14.0
폴란드	-	-	89.2	10.8	79.4	20.6
포르투갈	100.0	0.0	94.6	5.4	92.5	7.5
스웨덴	63.7	36.3	60.5	39.5	58.6	41.4
터키	-	-	85.4	14.6	88.3	11.7
영국	86.6	13.4	95.5	4.5	93.4	6.6
평균	83.7	16.3	86.2	13.8	84.0	16.0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0, 2011

II

소득세

1. 2012년 소득세 과세체계	43
2. 세율구조 및 주요 공제제도의 변화	57
3. 우리나라 및 OECD국가의 소득세 부담 현황	63
4. 주요국의 소득세제	68
5. 주요국의 소득세제 최근 동향	87



II 소득세

1. 2012년 소득세 과세체계

-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서 원천별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 개인 단위로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가. 과세방식 및 소득세 결정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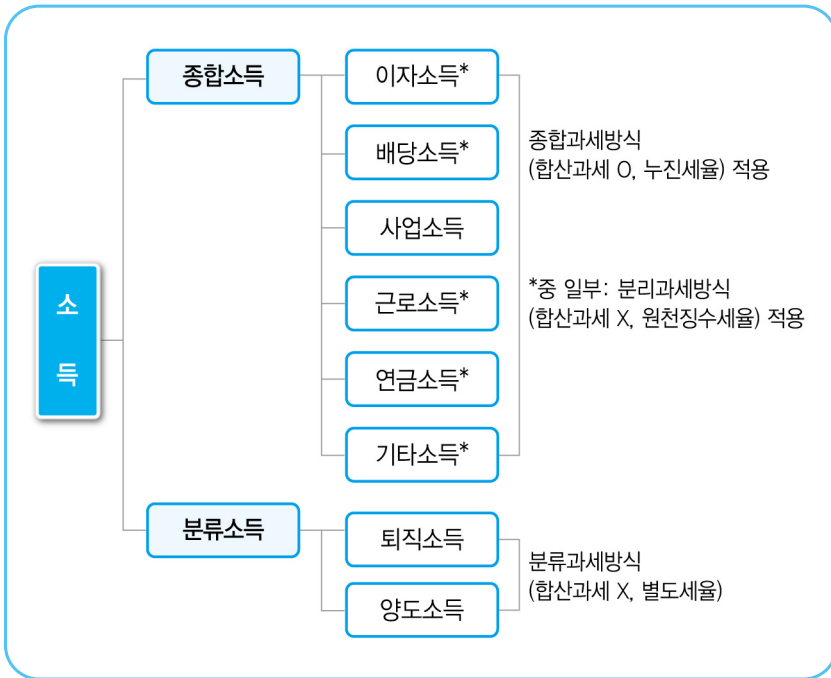
-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은 총 8개이며,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방법은 종합과세가 원칙이나, 양도·퇴직소득 등 장기형성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하고 있음
 -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위 6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소득과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구분 가능
 - 종합과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과세하는 방식
 - 분리과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⁸⁾

8) 분리과세 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가능



- (예)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해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하나,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 과세됨 (금융소득종합과세)
- 분류소득은 퇴직·양도소득으로 종합과세와 상반되는 분류과세를 적용받음
 - 분류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개별 소득별로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 [그림 1]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식 ■



-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도출한 과세표준에 각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세액감면을 차감하여 도출

【그림 2】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과정



- 주: 1)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한 것임)
2) 퇴직소득금액에서 비과세 퇴직소득 제외
3)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



나. 종합소득금액 도출

- 종합소득금액은 각 개별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후 도출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적 성격의 항목을 차감하여 도출
 - 8가지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을 도출한 후 6가지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계산하고, 분류과세 소득은 별도로 소득금액 계산

■ [그림 3] 소득금액 계산구조 ■



- 근로소득자·연금소득자의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사업소득자의 필요 경비에 상응하여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금액 도출
 - 근로소득공제율 및 연금소득공제율은 소득증가에 따라 축소

■ [표 13] 근로소득공제 및 연금소득공제 제도, 2012 ■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 공제율	총연금액	연금소득 공제율
0~500만원	80%	0~350만원	100%
500~1,500만원	50%	350~700만원	40%
1,500 ~ 3,000만원	15%	700 ~ 1,400만원	20%
3,000 ~ 4,500만원	10%	1,400만원 ~	10%
4,500만원 ~	5%	-	-

- 양도소득금액은 자산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설계한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여 도출(뒤의 V장 참조)



다. 소득공제제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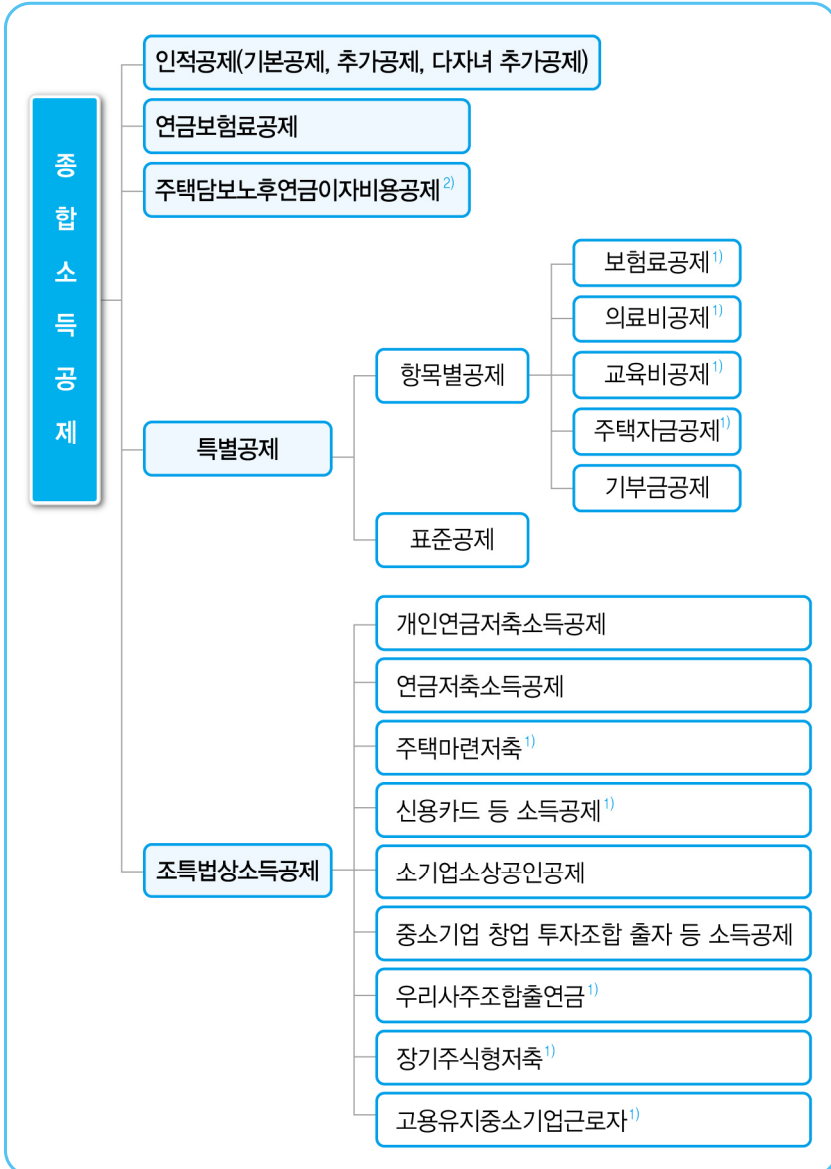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 항목이 차등 적용됨
 - 종합소득에는 종합소득공제, 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공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됨
- **종합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조특법상 소득공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로 구성되며, 가구원 수 및 구성에 따라 적용됨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추가공제**: 특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일정금액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임.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원, 부양가족 있는 여성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경우 1인당 50만원, 6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 100만원, 출산·입양신고자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100만원 + (기본공제 자녀수-2) × 200만원] 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및 지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가입자의 근로자 본인 부담금 전액공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공제회법에 따른 근로자 부담금 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액과 합해 연 400만원 한도)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연금소득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액을 200만원 한도로 공제
-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기부금 등의 비용을 공제해주는 것
 - 근로소득자의 경우, 위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표준공제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의 공제 받음
 - 종합소득자의 경우 표준공제만 적용되는데, 성실사업자의 경우 100만원이며 이 외의 자는 60만원(단, 성실사업자의 경우 2008년부터 의료비·교육비 공제 허용)
 -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등 공적보험은 전액, 보장성보험료 등 사적보험은 100만원 한도로 공제
 - **의료비공제**: 총급여 3% 초과액을 공제해주는데,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의 경우 공제한도가 없으며, 부양가족 등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 한도 적용
 - **교육비공제**: 본인 교육비 전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전아동·초중고생과 대학생에 지출한 교육비를 각각 1인당 연간 300만원과 900만원 한도로 공제, 장애인은 전액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40%공제 및 연간 총급여 5,000만원 미만인 자의 월세액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500만원 한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은 1500만원이 한도)
 - **기부금공제**: 법정·특례·지정 기부금 등 종류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적용
- **조특법상 소득공제**: 종합소득의 종류에 따라서도 소득공제항목 차등 적용됨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2000.12.31이전 가입분에 대해 불입금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공제
- **연금저축 소득공제**: 2001.1.1 이후 가입분에 대해 불입금액 전액 공제(연금보험료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공제**: 청약저축 등 불입금액의 40%를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 소득공제와 합해 300만원 한도, 위 3가지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공제 합해서 1,000만원 한도이나,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 경우 한도가 1,500만원까지 상승)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 25% 초과 금액의 20%(체크카드 등 및 전통시장사용분 30%)를 총급여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해 줌.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초과액과 전통시장사용분 공제액 중 적은 금액(연 1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에 추가하여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불입금액 전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벤처기업의 경우 20%)를 종합소득금액의 40% 한도로 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
- **장기주식형저축**: 2009.12.31까지 가입분에 대해 3년간만 불입액 × 공제율만큼 공제(연간 납입한도 1200만원, 2012년 공제율 5%)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임금 삭감액의 50%를 연 1,000만원 한도로 공제

■ [그림 4] 종합소득자 대상 소득공제 ■



주: 1) 근로소득자만 이용 가능한 소득공제제도
 (단, 성실사업자의 경우 2008년부터 의료비·교육비 공제 허용)
 2) 연금소득자만 이용 가능



-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로 구성됨
 - 퇴직소득자는 (1) 퇴직소득금액의 40%를 공제받고(기본공제), (2)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받음

【표 14】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연금소득공제, 2012

근속연수	공제액
0~5년	30만원×근속연수
5~10년	150만원+(근속연수-5년) × 50만원
10~20년	400만원+(근속연수-10년)×80만원
20년~	1,200만원+(근속연수-20년) × 120만원

- 양도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됨
 -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양도시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함

라. 기본세율 및 분리과세 대상 원천징수세율

- 종합소득세는 총 5개 과세표준구간에 대해 초과누진세제 적용
 - 1996년 이후 기존 6개에서 4개 과표구간으로 축소된 이후 2011년 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5개 구간으로 변경

【표 15】 종합소득세 적용 기본세율, 2012

과세표준	세율
0~1,200만원	6%
1,200만원 ~ 4,600만원	72만원 + 1,200만원 초과분의 15%
4,600만원 ~ 8,800만원	582만원 + 4,600만원 초과분의 24%
8,800만원 ~ 3억원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분의 35%
3억원~	9,01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8%

- 퇴직소득세율: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후 종합소득세 적용 기본세율 부과(연분연승법에 의한 세액계산)
- 양도소득세율: 'V장 재산과세' 부분 참조
- 분리과세대상소득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음
 -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장기저축 이자소득의 경우 30%, 비실명금융소득은 그 요건에 따라 14/35/90% 이나, 일반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14%임
 - 일용근로자의 경우 6%의 원천징수로 소득세 부담이 종결되며, 연금소득의 경우 총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외에 3억원 초과 복권 당첨금등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30%, 그 외의 기타소득은 20%의 원천세율 적용



【표 16】 분리과세대상 소득 원천징수세율, 2012

종류	원천징수세율
(1)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1-1)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 분리과세 신청 10년 이상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30%
-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	35%
-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14%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 거래할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소득	14%
- 연도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종합과세 기준금액)이하	14%
(1-2)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 상환기간 7년 이상 사회간접자본(SOC)채권 등 이자	14%
- 2014.12.31.까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	9%
- 2013.12.31.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회사별 액면가액 1억원 미만/초과)과 2014.12.31이전에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미만/초과)	5%/14%
- 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로부터 2012.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회사별 액면가액 1억원 미만/초과)	5%/14%
- 고수익고위험집합투자기구 등에 2009.12.31까지 가입하여 1억원 이하를 투자하고 지급받는 이자·배당	5%
-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정한 투자신탁·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2009.12.31.까지 가입하여 2012.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 중 투자금액 1억원 초과하는 배당소득(투자금액 1억미만은 비과세)	14%
-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조합원이 2012.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	5%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2012.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	14%
(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 금융기관 통해 지급되는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	90%
-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발행된 비실명채권의 이자	14%

종류	원천징수세율
(2)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원천징수세액 = (1일 급여 - 100,000원) × 6% × 45% × 45% = 100- 근로소득세액공제 55%	6%
(3) 연금소득	
- 총연금액(연금소득 제외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 가능(공적연금/사적연금)	기본세율 5%
(4) 기타소득	
- 복권당첨금등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3억원 초과 (3억원 초과분에 적용)	30%
-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	20%

마. 세액공제·세액감면제도

【표 17】 주요 세액공제·감면 제도, 2012

		주요내용(공제금액 및 한도 등)
세 액 공 제	배당세액공제	Gross-up 대상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11%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복식기장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 공제, 연 100만원 한도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해로 인해 사업용자산(토지제외) 총액의 20%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액 중 상실비율에 따라 공제
	근로소득 ¹⁾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30% 공제, 연 50만원한도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¹⁾	1995.11.1~1997.12.31 취득한 주택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기부정치자금 ¹⁾	본인의 정당 기부금(10만원)의 100/110 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외국납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전체종합소득에서 외국에서 소득세 납부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외국납부세액 공제



		주요내용(공제금액 및 한도 등)
세 액 공 제	전자신고	전자신고 방법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표 신고하는 경우 해당 납부세액에서 2만원 공제
	현금영수증 가맹점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경우 해당과세기간 발급건수×20원 공제
	기타조특법상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투자/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 연구·인력개발비/ 연구 및 인력개발 위한 설비투자/ 기술취득/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안전설비투자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환경보전시설투자/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고용창출투자/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해외자원개발투자/ 지방대학 연구·인력개발설비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전자신고/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세 액 감 면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간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 정부로부터 받은 급여 거주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가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은 소득(단, 그 비거주자 등의 국적지국에서 동일한 면제 있는 경우만 해당)
	조특법상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사업전환중소기업/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공장/ 농공단지입주기업/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일정기간 적용)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주: 1) 근로소득자만 해당

2. 세율구조 및 주요 공제제도의 변화

가. 소득세 세율구조 변경내역

【표 18】 소득세 세율체계의 변화추이

(단위: 만원, %)

1982년		1983년		1989년		1991년		1993년		1996년	
17단계		16단계		8단계		5단계		6단계		4단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이하	6	180이하	6	250이하	5	400이하	5	400이하	5	1,000이하	10
120~180	7	180~250	8	250~500	10	400~1,000	16	400~800	10	1,000~4,000	20
180~240	8	250~350	10	500~800	15	1,000~2,500	27	800~1,600	20	4,000~8,000	30
240~300	10	350~480	12	800~1,200	20	2,500~5,000	38	1,600~3,200	30	8,000초과	40
300~390	12	480~630	15	1,200~1,700	25	5,000초과	50	3,200~6,400	40		
390~480	15	630~800	18	1,700~2,300	30			6,400초과	50		
480~600	18	800~1,000	21	2,300~5,000	40						
600~840	22	1,000~1,250	24	5,000초과	50						
840~1,140	26	1,250~1,550	27								
1,140~1,500	30	1,550~1,900	31								
1,500~1,900	34	1,900~2,300	35								
1,900~2,400	38	2,300~2,900	39								
2,400~3,000	42	2,900~3,700	43								
3,000~3,800	46	3,700~4,700	47								
3,800~4,800	50	4,700~6,000	51								
4,800~6,000	55	6,000초과	55								
6,000초과	60										



2002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4단계		4단계		4단계		4단계		4단계		5단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표	세율	과표	세율	과세표준	세율
1,000이하	9	좌동	8	1,200이하	8	좌동	6	좌동	6	1,200이하	6
1,000~4,000	18	좌동	17	1,200~4,600	17	좌동	16	좌동	15	1,200~4,600	15
4,000~8,000	27	좌동	26	4,600~8,800	26	좌동	25	좌동	24	4,600~8,800	24
8,000초과	36	좌동	35	8,800초과	35	좌동	35	좌동	35	8,800~3억원	35
										3억초과	38

【표 19】 이자·배당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추이

(단위: %)

기간	기본			세금우대		
	소득 세율	주민 세율	합계	소득 세율	농특 세율 ¹⁾	합계
1991.1~1994.6	20	1.5	21.5	5	-	5.0
1994.7~1995.12				5	1.5	6.5
1996.1~1997.12	15	1.5	16.5	10	0.5	10.5
1998.1~1998.9	20	2.0	22.0	10	1.0	11.0
1998.10~1999.12 ²⁾	22	2.2	24.2	10	1.2	11.2
2000.1~2000.12	20	2.0	22.0	10	1.0	11.0
2001.1~2001.6	15	1.5	16.5	10	0.5	10.5
2001.7~2004.12	15	1.5	16.5	10	0.5	10.5
2005.1~	14	1.4	15.4	9	0.5	9.5
2012.1~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주: 1) 농어촌특별세율: 저축감면액의 10% 가산(surtax)

2) 1998.10~1999.12 동안 이자소득세율만 22%로 상승시켰고, 배당소득 세율은 20%로 이전 기간 (1998.1~1998.9)과 동일함

나. 주요 공제제도 변경내역

■ [표 20] 근로소득공제 제도 변화 ■

	제도	공제한도
1991	총급여 230만원 이하 / 초과: 전액/ 30%	490만원
1993	총급여 250만원 이하 / 초과: 전액/ 30%	600만원
1994	총급여 270만원 이하 / 초과: 전액/ 30%	620만원
1995	총급여 310만원 이하 / 초과: 전액/ 30%	690만원
1996	총급여 400만원 이하 / 초과: 전액/ 30%	800만원
1997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초과: 전액/ 30%	900만원
1999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500만원 ~ 1,500만원: 40%	1,200만원
2001	총급여 1,500만원 초과 : 10%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500만원 ~ 1,500만원: 40%	한도 없음
	총급여 1,500만원 초과 : 10%	
	총급여 4,500만원 초과 : 5%	
2002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500만원 ~ 1,500만원: 45%	
	총급여 1,500만원 ~ 3,000만원 : 15%	
	총급여 3,000만원 ~ 4,500만원 : 10%	
	총급여 4,500만원 초과 : 5%	
2003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500만원 ~ 1,500만원: 47.5%	
	총급여 1,500만원 ~ 3,000만원 : 15%	
	총급여 3,000만원 ~ 4,500만원 : 10%	
	총급여 4,500만원 초과 : 5%	
2004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500만원 ~ 1,500만원: 50%	
	총급여 1,500만원 ~ 3,000만원 : 15%	
	총급여 3,000만원 ~ 4,500만원 : 10%	
	총급여 4,500만원 초과 : 5%	
2009	총급여 500만원 이하 : 80% 총급여 500만원 ~ 1,500만원: 50%	
	총급여 1,500만원 ~ 3,000만원 : 15%	
	총급여 3,000만원 ~ 4,500만원 : 10%	
	총급여 4,500만원 초과 : 5%	
2012	상동	



【표 21】 인적공제 제도의 변화

(단위: 만원)

구 분		공제 수준									
		1996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2
기본공제	본인공제	100	→	→	→	→	→	→	150	→	→
	배우자공제	100	→	→	→	→	→	→	150	→	→
	부양가족공제	100	→	→	→	→	→	→	150	→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50	100	100 (65세 이상 150 (70세 이상))	→	→	→	→	100 (70세 이상)	→	→
	장애인공제	50	100	→	200	→	→	→	→	→	→
	부녀자공제	50	→	→	→	→	→	→	→	→	→
	6세 이하 공제	50	→	100	→	→	→	→	→	→	→
	출산·입양공제	-	-	-	-	-	-	신설 200	→	→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100 (1인) 50 (2인)	→	→	→	→	폐지	-	-	-	-	
다자녀 추가공제	-	-	-	-	-	신설 50+ (자녀수 -2) ×50	→	→	100+ (자녀수 -2) ×200	→	

【표 22】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 변화

	제도	공제한도
1991	총급여 360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20%	50만원
1993	산출세액의 20%	50만원
1996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4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20%	50만원
1997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4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30%	60만원
2002	상동	40만원
2003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0%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30%	45만원
2004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30%	50만원
2012	상동	상동



【표 23】 특별공제 제도의 변화

(단위: 만원)

		1993	1996	1999	2000	2002	2003	2004	2009	2012
보 험 료	국민건강 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	→	→	→	→	→	→	→
	보장성보험료	50 만원	→	70 만원	100 만원	→	→	→	→	→
	장애인전용보 장성보험료	-	-	-	100 만원	→	→	→	→	→
의 료 비	본인·노인· 장애인	급여 3% 이상	→	3% 이상	3% 이상	→	3% 이상	3% 이상전 액	→	→
	부양가족 ¹⁾	100 만원	→	200 만원	300 만원	→	500만 원	3% 이상 500 만원	3% 이상 700 만원	→
교 육 비	본인	전액	→	→	→	→	→	→	→	→
	취학전아동	-	1인당 70 만원	100	→	→	150	200	300	→
	초중고	전액	→	150	→	→	200	200	300	→
	대학	-	1인당 230 만원	300	→	→	500	700	900	→
	장애인 특수교육	-	-	-	-	150	전액	→	→	→

주: 1) 2004년 이전에는 현재와 같이 본인·노인·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해 주지 않음. 노인·장애인 등에 지출한 의료비로 인해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한도초과 지출 의료비와 노인·장애인 지출의료비 중에서 작은 금액을 기존 공제한도에 추가하여 공제해 줌

3. 우리나라 및 OECD국가의 소득세 부담 현황

-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
 -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은 2010년 GDP대비 3.6%로 OECD 28개 국 중 26위에 불과(OECD 국가 평균 8.7%)
 - 무자녀 1인가구의 평균유효세율은 2010년 평균임금(AW) 100% 수준에서 한국이 4.1%로 OECD 국가평균 14.2%의 1/3에 못 미침
 - 반면, 최고명목세율은 2010 한국이 38.5%, OECD 평균 41.7%로 유사한 편이며, 최고세율 문턱(threshold)이나 과표구간 수 모두 큰 차이 없음
 - 명목세율과 평균유효세율의 격차는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의 크기에 비례함

- 이러한 특징은 2000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나, 한국의 소득세부담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음

- 다만, 지난 10여 년 동안 OECD국가의 소득세 부담 및 평균유효세율이 하락한 것과 달리 한국의 경우 소폭 상승함



【표 24】 한국과 OECD국가의 소득세 부담구조 비교

(단위: %, %p, 평균소득배수, 개)

	2000		2010			2010-2000 변화	
	한국	OECD 평균	한국	순위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소득세 부담¹⁾							
GDP대비 %	3.3	9.4	3.6	26	8.7	0.3	-0.7
총조세대비 %	14.6	25.4	14.3	25	24.6	0.3	-0.8
평균유효세율²⁾							
AW 67%	0.7	12.0	1.3	31	10.0	0.6	-2.0
AW 100%	2.1	15.9	4.1	32	14.2	2.0	-1.7
AW 167%	6.4	22.2	8.3	32	20.5	1.9	-1.7
명목세율							
최고세율 ³⁾	44.0	46.5	38.5	26	41.7	-5.5	-4.8
최고세율 문턱 ⁴⁾	5.5	4.9	3.1	13	3.4	-2.4	-1.5
과표구간 개수 ⁵⁾	4.0	4.9	4.0	15	4.2	-	-0.7

주: 1) OECD 34개 국가 중 2010년 세 부담 수치 보고되지 않은 6개국을 제외한, 28개국을 대상으로 함(2009년 OECD평균: GDP대비 8.7%, 총조세대비 24.7%)

2) 무자녀 1인 가구 기준, 평균임금(AW)

3) 가산세 포함,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최고세율은 41.8%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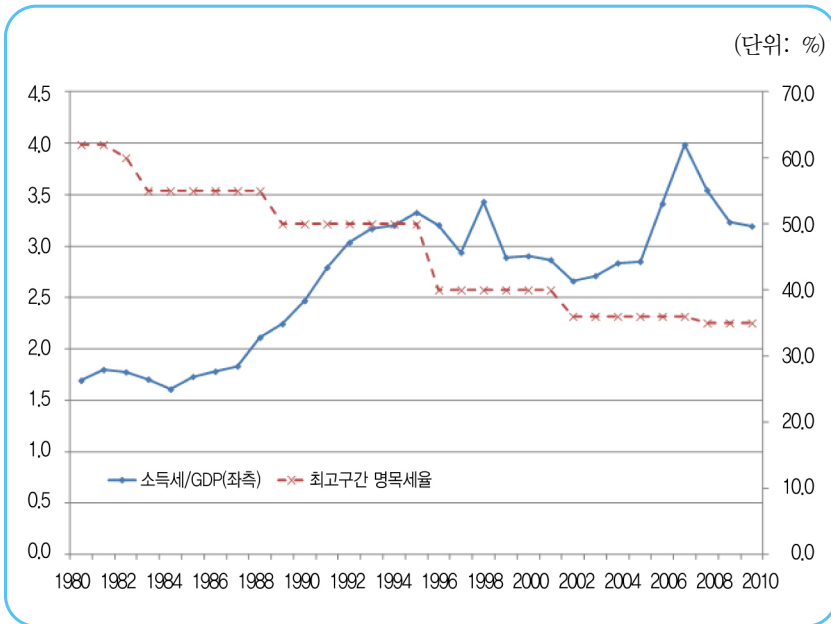
4) 중앙정부 기준 Threshold, 평균소득의 배수(OECD Taxing wages 계산)

5) 중앙정부 기준,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과표구간수 5개로 상승

자료: OECD, Tax database,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9, 2010

-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 수준 및 명목세율을 1980년부터 현재까지 살펴 보면, 명목최고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반면, GDP대비 소득세 부담은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
 - 우리나라의 최고명목세율은 1980년 62%에서 2011년 3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이와 동시에 과표구간 수도 축소되어 왔음 (단, 2012년 이후 38%, 5개 구간)
 - GDP 대비 소득세부담은 외환위기가 초래된 1998년까지는 상승하던 추세였으나, 이 이후 큰 변화가 없다가 2005년 이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 2007년 이후 다시 하락하는 모습

■ [그림 5] GDP 대비 소득세 비중 및 최고구간 명목세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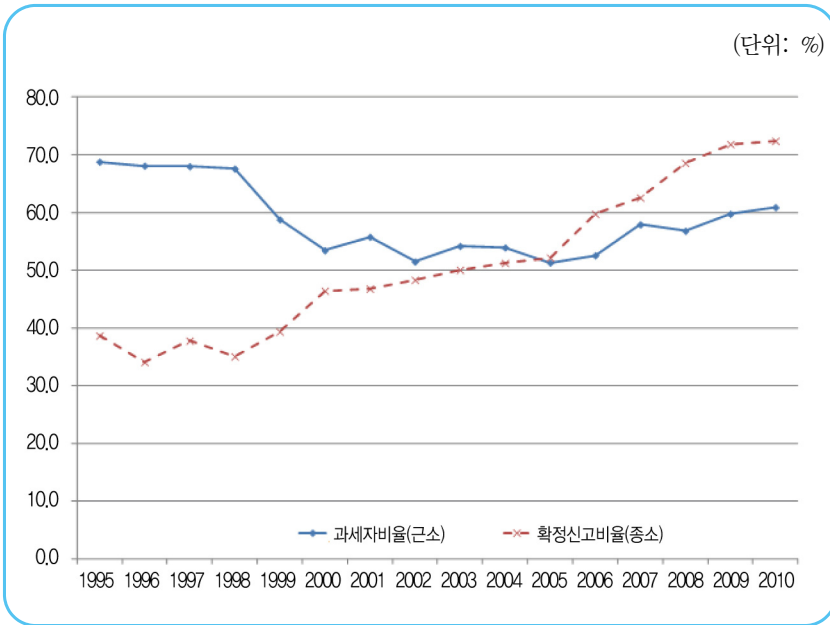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자 및 근로소득자의 과세미달자 비중

- 종합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자의 확정신고비율이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1987년 33.0%, 1995년 38.7%, 2010년 72.4%)
- 근로소득자의 경우, 과세자비율이 1995년 68.8%에서 2002년 51.5%까지 하락한 이후 일정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이후 소폭 상승세 보임(2007년 57.9%, 2010년 60.9%)
 - 1997~2002년 동안 발생한 큰 폭의 과세자 비율 하락은 근로소득 공제율 상향조정에 기인

■ [그림 6] 근로소득자 과세자비율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비율 추이 ■



주: 근로소득자의 과세자비율 자료는 1995년부터 이용가능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과표구간별 세부담 구조

【표 25】 종합소득세 부담구조, 2010

과세표준기준	인원		종합소득금액		결정세액		유효세율 (B/A,%)
	천명	%	조원 (A)	%	조원 (B)	%	
합계	378.5	100.0	100.3	100.0	13.2	100.0	13.1
과세미달자	75.9	20.1	2.6	2.6	-	-	-
0~1200만원	193.7	51.2	17.9	17.9	0.4	3.1	2.2
1200~4600만원	74.8	19.8	24.9	24.9	1.6	12.2	6.4
4600~8800만원	19.1	5.0	14.5	14.4	1.7	12.7	11.6
8800만원 초과	15.0	4.0	40.3	40.2	9.5	72.1	23.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1

【표 26】 근로소득세 부담구조, 2010

과세표준기준	인원		급여총계		결정세액		유효세율 (B/A,%)
	천명	%	조원 (A)	%	조원 (B)	%	
합계	1,517.7	100.0	401.1	100.0	15.6	100.0	4.4
과세미달자	593.2	39.1	44.7	11.2	-	-	-
0~1200만원	559.8	36.9	126.5	31.6	0.7	4.6	0.6
1200~4600만원	306.3	20.2	159.5	39.8	5.8	37.3	3.6
4600~8800만원	46.9	3.1	45.0	11.2	4.0	25.7	8.9
8800만원 초과	11.4	0.8	25.3	6.3	5.1	32.5	2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1



4. 주요국의 소득세제

가. 과세단위

- 소득세 과세단위 설정은 그 방식(개인, 부부, 가구)에 따라 누진성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중요함
 - 우리나라, 영국 및 일본은 개인단위로 과세 하는데 비해, 미국과 독일은 납세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라 부부가 개별적으로 소득을 신고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신고할 수도 있는 선택적 이분이승제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세대단위로 과세를 함

▮ [표 27]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단위 ▮

	과세단위
한국	• 개인단위 과세
미국	• 선택적 이분이승제(임의적 선택에 따라 부부가 각각 별도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공동으로 신고 가능)
영국	• 개인단위 과세
일본	• 개인단위 과세
독일	• 선택적 이분이승제(임의적 선택에 따라 부부가 각각 별도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공동으로 신고 가능)
프랑스	• 세대단위 과세

나. 세율구조

- 중앙정부 기준 최고명목세율은 2000년 이후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로, OECD 34개국 중 26개국이 최고명목세율을 인하함([표 28] 참조)
 - OECD 평균 중앙정부 기준 최고명목세율은 2000년 40.3%에서 2012년 34.8%로 약 5.5%p 인하
 - 동 기간 동안 최고세율 인하 폭이 가장 큰 국가는 슬로바키아로 23%p 인하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체코(17%p), 프랑스(13.3%p), 스페인(12.5%p), 멕시코(10%p), 덴마크(9.3%p) 등이 있음
 - 동 기간 동안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영국(10%p), 포르투갈(5.9%p), 일본(3%p), 스위스(1.7%p)임

- 다만, 금융위기 이후 일부 국가에서 이루어진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2009년 이후 OECD 평균 최고세율이 소폭 상승
 - OECD 평균 중앙정부 기준 최고명목세율: 2009년 34.8%에서 2010년 35.3%으로 소폭 상승, 2012년 평균세율은 34.8%로 다시 하락한 것으로 보이나 최고세율이 16%p 인하된 헝가리를 제외할 경우 OECD 평균은 35.4%로 상승
 -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1년 말 세법개정 통해 기존 35%에서 2012년부터 38%로 중앙정부 기준 최고세율 인상

【표 28】 소득세 명목최고세율(중앙정부기준)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2
호주	47.0	47.0	47.0	47.0	47.0	47.0	47.0	45.0	45.0	45.0	45.0	45.0
오스트리아	50.0	50.0	50.0	41.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벨기에	55.0	55.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캐나다	29.0	26.0	29.0	29.0	29.0	29.0	29.0	29.0	29.0	29.0	29.0	29.0
칠레	45.0	45.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체코	32.0	32.0	32.0	32.0	32.0	32.0	32.0	32.0	15.0	15.0	15.0	15.0
덴마크	28.0	27.3	26.5	26.5	26.6	26.5	26.5	26.5	26.5	26.0	18.7	15.0
에스토니아	26.0	26.0	26.0	26.0	26.0	24.0	23.0	22.0	21.0	21.0	21.0	21.0
핀란드	37.5	37.0	35.0	35.0	34.0	33.5	32.5	32.0	31.5	30.5	30.0	29.8
프랑스	53.3	52.8	48.1	48.1	48.1	48.1	48.1	40.0	40.0	40.0	40.0	41(45)
독일	51.0	48.5	48.5	48.5	48.0	42.0	42.0	45.0	45.0	45.0	45.0	45.0
그리스	45.0	42.5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5.0	45.0
헝가리	40.0	40.0	40.0	40.0	38.0	38.0	36.0	36.0	36.0	36.0	32.0	16.0
아이슬랜드	33.4	33.1	30.8	30.8	29.8	26.8	23.8	22.8	22.8	24.1	33.0	31.8
아일랜드	44.0	42.0	42.0	42.0	42.0	42.0	42.0	41.0	41.0	41.0	41.0	41.0
이스라엘	50.0	50.0	50.0	50.0	49.0	49.0	49.0	48.0	47.0	46.0	45.0	48.0
이탈리아	45.0	45.0	45.0	45.0	45.0	43.0	43.0	43.0	43.0	43.0	43.0	43(46)
일본	37.0	37.0	37.0	37.0	37.0	37.0	37.0	40.0	40.0	40.0	40.0	40.0
한국	40.0	40.0	36.0	36.0	36.0	35.0	35.0	35.0	35.0	35.0	35.0	38.0
룩셈부르크	46.0	42.0	38.0	38.0	38.0	38.0	38.0	38.0	38.0	38.0	38.0	39.0
멕시코	40.0	40.0	34.0	34.0	33.0	30.0	29.0	28.0	28.0	28.0	30.0	30.0
네덜란드	60.0	52.0	52.0	52.0	52.0	52.0	52.0	52.0	52.0	52.0	52.0	52.0
뉴질랜드	39.0	39.0	39.0	39.0	39.0	39.0	39.0	39.0	39.0	38.0	35.5	33.3
노르웨이	29.9	28.4	31.3	31.3	31.7	27.3	23.8	24.6	25.3	24.6	24.6	24.6
폴란드	40.0	n.a.	40.0	40.0	40.0	40.0	40.0	40.0	40.0	32.0	32.0	32.0
포르투갈	40.0	38.0	40.0	40.0	40.0	40.0	42.0	42.0	42.0	42.0	45.9	46.5(49)
슬로바키아	42.0	42.0	38.0	38.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슬로베니아	50.0	50.0	50.0	50.0	50.0	50.0	50.0	41.0	41.0	41.0	41.0	41.0
스페인	39.6	39.6	29.2	29.2	29.2	29.2	29.2	27.1	27.1	27.1	27.1	27.1
스웨덴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스위스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3.2	11.5
터키	40.0	40.0	40.0	40.0	40.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영국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50.0	50.0
미국	39.6	35.5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OECD평균	40.3	39.4	38.1	37.8	37.4	36.6	36.5	35.7	35.2	34.8	35.3	34.8

자료: OECD Tax Database

- 금융위기 이후 주로 PIGS국가(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를 중심으로 소득세율이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음
 - [표 29]를 통해 2009년 이후 세율 인상 및 인하 국가 참조
 - 2009-2010 기간 동안 아이슬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영국 등 총 5개국 이 세율을 인상하였고, 2010-2012 기간 동안 한국, 프랑스, 이스라엘,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8개국 이 세율을 인상함
 - 포르투갈은 중앙정부 기준 최고세율을 2009년 42%에서 2010년 45.9%, 2012년 46.5%까지 인상
 - 아이슬랜드는 2009년 24.1%이던 중앙정부 기준 최고세율을 2010년 33%로 인상하였다가, 2012년 31.8%로 인하
 - 그리스는 2009년 40%이던 최고세율을 2010년 45%로 인상
 - 스위스의 경우 중앙정부 기준 최고세율이 2010년 13.2%에서 2012년 11.5%로 변경되었는데, 과세 소득이 755,200 스위스 프랑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 누진과세 적용 없이 전 소득구간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고소득계층의 세부담이 증가함
 -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는 고소득계층에 한시적으로 가산세(surtax)를 부과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 전 소득구간에 대해 누진적인 구조로 가산세 부과, 그리스는 일부 소득구간에 대해 누진적 구조로 가산세 부과
 - 포르투갈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간 153,300 유로(최고과표구간에 해당) 이상의 고소득자에 2.5%의 가산세(“solidarity tax; 연대세”)를 부과할 예정임
 - 프랑스는 2011년부터 재정적자 목표 달성시점까지 연간 25만유로 이상의 고소득 납세자에게 3~4%의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함 (25만유로 이상 50만유로 미만: 3%, 50만유로 초과: 4%)



- 이탈리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과세대상소득이 30만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3%의 가산세 부과, 공공부문 근로소득자(국회의원)의 경우 9만 유로 초과시 5%(10%)의 가산세를 15만 유로 초과시 10%(20%)의 세율 부과
- 스페인은 2012-2013년 동안 전 소득구간에 대해 최소 0.75%에서 최대 7%의 가산세를 부과함(예: 175,000유로 이상 300,000이하 구간에는 6%, 300,000유로 이상 구간에는 7% 부과)
- 그리스는 2012-2014년 동안 한시적으로 과세소득 12,000 유로 이상 소득자에게 1~4%의 가산세(“solidarity tax, 연대세”) 부과 (EUR 12,001~20,000: 1%, EUR 20,001~50,000: 2%, EUR 50,001~100,000: 3%, EUR 100,000~: 4%)
- 동 기간 동안 덴마크, 헝가리, 뉴질랜드 등이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헝가리의 경우 누진세율 체계에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함
 - 헝가리는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면서, 최고세율을 2010년 32%에서 2012년 16%로 인하

■ [표 29] 중앙정부 기준 소득세 최고 세율 및 과표구간 문턱, 2012 ■

(단위: %, 각국 화폐)

	최고 세율			최고 과표 구간 문턱	
	2009	2010	2012	2010 ¹⁾	2012
호주	45.0	45.0	45.0	180,000 (2.9)	180,000
오스트리아	50.0	50.0	50.0	60,000 (2.1)	60,000
벨기에	50.0	50.0	50.0	34,330 (1.0)	34,330
캐나다(지방세포함)	29.0	29.0	29.0	127,021 (2.9)	132,406
칠레	40.0	40.0	40.0	67,689,000(16.4)	67,689,000
체코(2015~: 19%)	15.0	15.0	15.0	단일세율 (0.4)	단일세율
덴마크	26.0	18.7	15.0	389,900 (1.1)	389,900
에스토니아(2015~: 20%)	21.0	21.0	21.0	단일세율 (0.2)	단일세율
핀란드	30.5	30.0	29.8	66,400 (1.9)	70,300
프랑스(11부가세신설)	40.0	40.0	41.0(45)	69,783 (2.8)	70,830(500,000)
독일	45.0	45.0	45.0	250,730 (6.2)	250,730
그리스	40.0	45.0	45.0	100,000 (6.8)	100,000
헝가리	36.0	32.0	16.0	5,000,000 (1.6)	단일세율
아이슬랜드	24.1	33.0	31.8	7,800,000 (1.9)	8,452,400
아일랜드	41.0	41.0	41.0	36,400 (4.4)	36,800
이스라엘	46.0	45.0	48.0	472,080 (4.0)	489,481
이탈리아	43.0	43.0	43(46)	75,000 (3.0)	300,000
일본	40.0	40.0	40.0	18,000,000 (4.7)	18,000,000
한국	35.0	35.0	38.0	88,000,000 (3.1)	3,000,000,000
룩셈부르크	38.0	38.0	39.0	39,885 (1.0)	41,794
멕시코(13: 29%, 14: 28%)	28.0	30.0	30.0	392,842 (4.5)	392,842
네덜란드	52.0	52.0	52.0	54,367 (1.2)	56,491
뉴질랜드	38.0	35.5	33.3	70,000 (1.5)	70,000
노르웨이	24.6	24.6	24.6	741,700 (1.6)	122,100
폴란드	32.0	32.0	32.0	85,528 (2.7)	85,528
포르투갈	42.0	45.9	46.5(49)	150,000 (9.6)	153,300
슬로바키아	19.0	19.0	19.0	단일세율 (0.5)	단일세율
슬로베니아	41.0	41.0	41.0	15,058 (1.4)	15,681
스페인(지방세포함)	27.1	27.1(43)	27(45+7)	53,407 (2.4)	175,000(300,000)
스웨덴(지방세포함)	25.0	25(56.6)	25(56.6)	532,700 (1.5)	574,300
스위스	11.5	13.2	11.5	712,500 (3.6)	751,300
터키	35.0	35.0	35.0	76,200 (4.3)	88,000/55,000
영국	40.0	50.0	50.0	150,000 (4.3)	150,000
미국	35.0	35.0	35.0	373,650 (8.9)	388,350
OECD평균	34.8	35.3	34.8	-(3.4)	-

자료: IBFD, OECD Tax Database

주: 1) ()는 평균소득대비 비율임

2) 최근 소득세율 개정동향은 “4. 주요국 소득세법 최근 개정동향” 참조



- 각 개인의 소득세 부담을 명확히 비교하기 위해 지방정부 등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34개 OECD 국가 중 27개국의 세율이 인하되었음을 알 수 있음([표 30] 참조)
 - OECD 평균은 2000년 46.5%에서 2011년 41.5%로 인하
 - 한국의 경우 2000년 44%에서 두 차례의 세율인하를 통해 2011년 38.5%로 인하되었으며, 2011년 현재 9번째로 낮음
 - 동 기간 동안 최고세율이 인상된 국가는 아이슬란드(2000년 45.4% → 2011년 46.2%), 아일랜드(44% → 48%), 포르투갈(40% → 50%), 스웨덴(55.4% → 56.6%), 영국(40% → 50%)임

- 2011년 현재 한국의 개인소득세 최고명목세율은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보다 낮은 편
 - 2011년 기준 최고명목세율은 스웨덴이 56.6%로 가장 높고, 벨기에 53.7%, 덴마크 52.2%, 네덜란드 52%, 일본·오스트리아·포르투갈·영국 50%, 핀란드 49.2% 등이 그 다음 순서임
 - 한국: 26번째로 높음
 - 2011년 최고 명목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체코로 15%이며, 그 다음은 헝가리 16%, 슬로바키아 19%, 에스토니아 21%, 멕시코 30%, 폴란드 32%, 뉴질랜드 33%, 터키 25.7%, 한국 38.5% 등임

【표 30】 소득세 명목최고세율(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기준)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호주	48.5	48.5	48.5	48.5	48.5	48.5	48.5	46.5	46.5	46.5	46.5	46.5
오스트리아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벨기에	60.5	63.3	55.6	53.5	53.5	53.5	53.5	53.7	53.7	53.7	53.7	53.7
캐나다	47.9	46.4	46.4	46.4	46.4	46.4	46.4	46.4	46.4	46.4	46.4	46.4
칠레	45.0	n.a.	43.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체코	32.0	32.0	32.0	32.0	32.0	32.0	32.0	32.0	15.0	15.0	15.0	15.0
덴마크	59.7	59.7	54.4	59.7	59.7	59.7	59.7	59.7	59.7	59.6	52.2	52.2
에스토니아	26.0	n.a.	n.a.	n.a.	n.a.	n.a.	n.a.	n.a.	n.a.	n.a.	21.0	21.0
핀란드	55.2	54.7	53.8	53.0	52.1	51.8	50.9	50.5	50.1	49.1	49.0	49.2
프랑스	58.3	58.3	57.8	54.8	53.4	53.5	53.5	45.8	45.8	45.8	45.8	46.7
독일	53.8	51.2	51.2	51.2	47.5	44.3	44.3	47.5	47.5	47.5	47.5	47.5
그리스	45.0	42.5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5.0	45.0
헝가리	40.0	40.0	40.0	40.0	38.0	38.0	36.0	36.0	36.0	36.0	32.0	16.0
아이슬랜드	45.4	42.7	45.5	43.5	42.6	39.7	36.7	35.7	58.5	37.2	46.1	46.2
아일랜드	44.0	42.0	42.0	42.0	42.0	42.0	42.0	41.0	41.0	41.0	47.0	48.0
이스라엘	50.0	n.a.	n.a.	n.a.	n.a.	n.a.	n.a.	n.a.	n.a.	46.0	45.0	45.0
이탈리아	46.4	45.9	46.1	40.1	46.1	44.1	44.6	44.9	44.9	44.9	44.9	45.6
일본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한국	44.0	44.0	39.6	39.6	39.6	38.5	38.5	38.5	38.5	38.5	38.5	38.5
룩셈부르크	47.2	43.0	39.0	38.9	39.0	39.0	39.0	38.9	38.9	38.9	38.9	41.3
멕시코	40.0	40.0	35.0	34.0	33.0	30.0	29.0	28.0	28.0	28.0	30.0	30.0
네덜란드	60.0	52.0	52.0	52.0	52.0	52.0	52.0	52.0	52.0	52.0	52.0	52.0
뉴질랜드	39.0	39.0	39.0	39.0	39.0	39.0	39.0	39.0	39.0	38.0	35.5	33.0
노르웨이	47.5	47.5	47.5	47.5	47.5	43.5	40.0	40.0	40.0	40.0	40.0	40.0
폴란드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32.0	32.0	32.0
포르투갈	40.0	40.0	40.0	40.0	40.0	40.0	42.0	42.0	42.0	42.0	45.9	50.0
슬로바키아	42.0	35.0	38.0	38.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슬로베니아	50.0	n.a.	n.a.	n.a.	n.a.	n.a.	n.a.	n.a.	n.a.	41.0	41.0	41.0
스페인	48.0	48.0	49.0	45.0	45.0	45.0	45.0	43.0	43.0	43.0	43.0	45.0
스웨덴	55.4	55.5	55.5	56.2	56.5	56.6	56.6	56.5	56.4	56.5	56.6	56.6
스위스	43.8	43.2	38.4	42.1	42.1	42.1	42.1	42.1	41.7	41.7	41.7	41.7
터키	40.6	40.6	40.6	40.6	40.6	35.6	35.6	35.6	35.6	35.6	35.7	35.7
영국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50.0	50.0
미국	46.7	46.1	45.2	41.6	41.5	41.4	41.4	41.4	41.9	41.9	41.9	41.9
OECD평균	46.5	46.0	45.0	44.5	43.8	43.1	42.8	42.4	42.6	41.7	41.7	41.5

자료: OECD Tax Database



다. 과표구간 수 및 최고 과표구간 문턱

- 금융위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표구간 개수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소폭 증가([표 31] 참조)
 - OECD국가의 평균 소득세 과표구간 수는 2000년(4.4개) 이후 2009년(4.0개)까지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4.2개) 소폭 상승
 - 우리나라의 과세표준구간 수는 1988년 16개에서 1989년 8개로 축소되었고, 1991년 5개로, 1993년 6개로 잠시 확대되었다가 1996년 4개로 축소된 후, 2012년 최고구간 신설에 따라 5개로 상향조정
-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문턱을 평균소득의 배수로 측정함으로써, 각 구간의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비교해 볼 수 있음([표 32] 참조)
 - 2000년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 문턱의 평균소득대비 비율은 우리나라 및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하는 모습
 - OECD 평균: 2000년 4.9배 → 2011년 3.4배
 - 한국: 2000년 5.1배 → 2011년 3.1배 (2012년 3억원의 최고구간을 신설함에 따라, 이 비율 상승할 것)
 -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 문턱은 2000년에는 OECD평균보다 높았으나, 2011년에는 그보다 낮아짐
 - 2000년 이후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과표구간 금액 및 개수의 변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임

【표 31】 중앙정부기준 과세표준 구간 개수

(단위: 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호주	5	5	5	5	5	5	5	5	5	5	5
오스트리아	5	5	5	5	5	4	4	4	4	4	4
벨기에	7	7	6	5	5	5	5	5	5	5	5
캐나다	3	4	4	4	4	4	4	4	4	4	4
칠레	6	6	7	7	7	7	7	7	7	7	7
체코	4	4	4	4	4	4	4	4	1	1	1
덴마크	3	3	3	2	3	3	3	3	3	2	2
에스토니아	1	1	1	1	1	1	1	1	1	1	1
핀란드	7	6	6	6	6	6	6	5	5	5	5
프랑스	7	7	7	7	7	7	7	5	5	5	5
독일	3	3	3	3	3	3	3	3	3	3	3
그리스	5	5	4	3	3	3	3	3	3	4	9
헝가리	3	3	3	3	3	2	2	2	2	2	2
아이슬랜드	2	2	2	2	2	2	1	1	1	1	3
아일랜드	2	2	2	2	2	2	2	2	2	2	2
이스라엘	5	5	7	6	6	6	6	6	6	6	6
이탈리아	5	5	5	5	5	3	3	5	5	5	5
일본	4	4	4	4	4	4	4	6	6	6	6
한국	4	4	4	4	4	4	4	4	4	4	4
룩셈부르크	10	10	10	10	10	10	10	10	17	17	17
멕시코	10	10	8	7	6	5	5	5	8	8	8
네덜란드	4	4	4	4	4	4	4	4	4	4	4
뉴질랜드	4	4	4	4	4	4	4	4	7	4	4
노르웨이	3	3	3	3	3	3	3	3	3	3	3
폴란드	3	n.a.	3	3	3	3	3	3	3	2	2
포르투갈	5	6	6	6	6	6	7	7	7	7	8
슬로바키아	7	7	5	5	1	1	1	1	1	1	1
슬로베니아	6	6	6	6	6	5	5	3	3	3	3
스페인	6	6	6	5	5	5	5	4	4	4	4
스웨덴	3	3	3	3	3	3	3	3	3	3	3
스위스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터키	6	6	6	6	6	5	4	4	4	4	4
영국	3	3	3	3	3	3	3	3	2	2	3
미국	5	6	6	6	6	6	6	6	6	6	6
OECD평균	4.4	4.5	4.4	4.2	4.1	3.9	3.9	3.8	4.1	4.0	4.2

자료: OECD Tax Database



【표 32】 소득세 최고세율 문턱(평균소득의 배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호주	1.3	1.5	1.3	1.3	1.2	1.4	1.8	2.7	2.6	3.0	2.9	2.6
오스트리아	2.3	2.3	2.2	2.2	2.0	2.0	1.9	1.9	1.8	2.1	2.1	2.1
벨기에	2.3	1.2	1.1	1.1	1.1	1.0	1.0	1.0	1.0	1.1	1.0	1.0
캐나다	2.1	2.7	2.7	2.7	2.9	2.9	2.9	2.9	2.9	2.9	2.9	2.8
칠레	16.3	n.a	19.7	19.2	19.0	18.7	18.3	18.2	18.3	16.9	16.4	13.6
체코	2.5	2.4	2.3	2.2	2.0	1.9	1.6	1.5	0.4	0.4	0.4	0.4
덴마크	1.0	1.0	1.0	1.0	1.0	1.1	1.1	1.0	1.0	1.0	1.1	1.1
에스토니아	0.2	n.a	n.a	n.a	n.a	n.a	n.a	n.a	n.a	n.a	0.2	0.2
핀란드	2.1	2.1	2.0	1.9	1.9	1.8	1.9	1.8	1.8	1.8	1.9	1.8
프랑스	2.9	2.8	2.7	2.7	2.7	2.7	2.7	2.8	2.8	2.8	2.8	2.7
독일	1.8	1.5	1.5	1.5	1.3	1.3	1.3	5.9	6.1	6.2	6.2	5.9
그리스	6.0	3.8	1.7	1.6	1.4	1.3	1.2	3.7	3.7	4.8	6.8	7.6
헝가리	0.9	0.8	0.8	0.9	0.9	0.8	0.8	0.8	0.7	0.8	1.6	0.8
아이슬랜드	1.5	1.6	1.6	1.5	1.4	1.3	0.3	0.3	0.3	0.3	1.9	1.5
아일랜드	0.7	1.1	1.1	1.1	1.0	1.0	1.1	1.0	0.9	0.9	4.4	1.0
이스라엘	2.4	n.a	n.a	n.a	n.a	n.a	n.a	n.a	n.a	4.0	4.0	4.1
이탈리아	3.6	3.7	3.5	3.4	3.3	4.5	4.4	3.3	3.2	3.2	3.0	2.9
일본	4.5	4.5	4.5	4.5	4.5	4.5	4.5	4.5	4.5	4.7	4.7	4.7
한국	5.5	5.0	4.4	4.1	3.9	3.6	3.4	3.2	3.3	3.3	3.1	3.1
룩셈부르크	2.1	1.1	1.1	1.0	1.0	1.0	0.9	0.9	0.9	1.0	1.0	3.3
멕시코	49.3	46.6	10.9	3.6	1.7	1.5	1.4	1.4	4.9	4.7	4.5	4.4
네덜란드	1.8	1.4	1.4	1.4	1.4	1.4	1.3	1.2	1.2	1.2	1.2	1.2
뉴질랜드	1.7	1.7	1.6	1.6	1.5	1.5	1.4	1.3	1.5	1.5	1.5	1.4
노르웨이	2.6	2.4	2.4	2.5	2.5	2.1	1.9	1.5	1.6	1.6	1.6	1.6
폴란드	3.5	3.5	3.7	3.3	3.3	3.2	3.1	3.1	2.9	2.8	2.7	2.6
포르투갈	3.4	4.9	4.7	4.7	4.2	4.2	4.4	4.3	4.4	4.2	9.6	9.8
슬로바키아	7.9	4.3	3.8	3.6	0.5	0.5	0.5	0.4	0.4	0.5	0.5	0.4
슬로베니아	4.3	n.a	n.a	n.a	n.a	n.a	n.a	n.a	n.a	1.4	1.4	1.4
스페인	4.3	4.2	4.1	2.7	2.7	2.6	2.6	2.6	2.5	2.4	2.4	7.1
스웨덴	1.5	1.5	1.5	1.5	1.5	1.5	1.5	1.5	1.4	1.5	1.5	1.5
스위스	4.1	3.9	3.9	3.7	3.6	3.6	3.6	3.4	3.6	3.6	3.6	3.6
터키	11.5	5.6	9.3	9.8	10.4	5.3	3.0	2.9	2.8	3.1	4.3	4.0
영국	1.3	1.3	1.3	1.3	1.2	1.2	1.2	1.2	1.2	1.3	4.3	4.4
미국	8.9	9.0	9.0	8.9	8.9	8.9	8.8	9.1	9.1	9.1	8.9	8.3
OECD평균	4.9	4.3	3.6	3.3	3.1	2.9	2.8	3.0	3.0	3.0	3.4	3.4

자료: OECD Tax Database, OECD, *Taxing wages 2009-2010*

라. 공제제도

【표 33】 주요국의 소득세 공제제도, 2012

주요 소득세 공제제도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공제(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노인, 장애인 등, 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특별공제: 항목별 공제 혹은 표준공제 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별 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공제 등) • 기타 조특법상소득공제(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등)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산출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IRA기여금, 별거·이혼수당, 이사비용, 의료저축납입금, 자영업자의 기여금 및 의료보험 등) • 표준공제 혹은 항목별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별 공제(의료비, 지방정부 납부 세금, 주택대출금 이자비용, 상해 및 절도손실, 피고용인으로 지출하는 경비 등) • 인적공제 •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노인·장애인 세액공제 등)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대출금이자공제, 생계비 또는 별거·이혼수당, 기부금공제, 생명보험공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공제, 벤처캐피탈 신탁지분 중 기업투자지분 공제, 채권손실액공제 등) • 인적공제(기본공제, 노인추가공제 등) • 세액공제(근로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 공제, 사회보험료 공제, 고용소득공제, 생명보험 납입액과 개인연금 납입액 공제, 의료비공제, 지진보험료공제, 기부금 공제 등) • 인적공제(본인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이혼·사별자 공제 등) • 세액공제(외국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세액공제 등)



주요 소득세 공제제도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비용공제(Special expenses deduction)(연금보험료, 건강·책임·장애인·노인·실업보험공제, 비영리활동 증진기부금 공제, 이혼·별거자에 지불하는 생활비, 납세자본인의 최초 직업교육비용, 교회세 등) • 비경상 비용공제(Extraordinary expensed deduction)(화재·도난·홍수 등 불가피한 사건으로 가정용품 또는 의복 등이 분실된 경우 재취득 비용, 병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 등) • 인적공제(기본공제, 자녀공제, 자녀양육비공제) • 세액공제(사업소득자 일정액공제, 자영업자 혹은 근로자의 가사도우미 세액공제)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인적공제, 사회보장분담금, 업무관련 비용, 이혼·별거자에 지불하는 생활비 등) • 세액공제(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 세액공제, 일시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부양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획득소득세액공제 등)

자료: IBFD

마. 주요국의 소득세제 요약

【표 34】 한국 및 주요 OECD국가의 소득세 과세체계현황(2012년 기준)

조세유형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1. 거주자					
소득세율 (중앙정부)	누진과세 최고세율 38% (3억원 초과) : 지방소득세 부과 전	연방정부 누진과세 최고세율 35%; 주에 따라 다르나, 주정부 최고세율 11%	누진과세 최고세율 40%(JPY 18,000,000 이상)	누진과세 최고세율 50%(GBP150, 000이상); 배당소득 GBP 150,000이상 42.5%)	누진과세 최고세율 41%(EUR 70,830 이상)
중앙정부 과표 구간 수	5개 (6/15/24/35/ 38%)	6개 (10/15/25/28 /33/35%)	6개 (5/10/20/23/ 33/40%)	3개 (20/40/50%)	5개 (0/5.5/14/30/ 41%)
자본이득 (양도소득)	특별제도 (양도소득세제)	최대 35% (15%에서 상승)	소득 일부로 간주하되, 별도세율 적용	일반 18%, 고소득자 28%, 기업가 감면 자격 얻는 경우 10%, 단기이익 사업소득간주	단기이익은 사업소득간주, 8년 이상 보유시 장기이익은 19% 면세
이중과세 방지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외국인 세액공제	없음
2. 비거주자					
소득세율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적용	거래와 영업 소득에 대해 부과: 연방최고세율 35%; 주정부 최고세율 11%, 주에 따라 다름	20% (일본 원천수당)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적용	프랑스 원천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세율로 적용, 프랑스원천 소득이 아니거나, 프랑스에 한 곳 이상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 특별 법칙 적용



조세유형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국내기업 주식 양도차익 과세	있음 (소액주주가 보유한 국내 상장 기업의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	미국 기업의 거래와 영업활동과 관계되어있거나, 미국의 실물자산 보유한 회사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있음	18%	자본금의 25%이상 일 때 주식양도차익 부과
최종 원천징수세율					
근로소득	누진세율 최고세율 38% (3억원 초과) : 지방소득세 부과 전	30% (통상 미국 원천징수 원칙이 적용)	20% (일본 원천수당)	누진세율 최고세율 50% (GBP 150,000 이상)	최고세율 20% (EUR 41,327 이상)
배당금	14% (15.4%: 지방소득세 포함시)	30%	20% 국내 상장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2013.12.31. 까지 7%, 이후 15%	0%	25% (EEA거주자) 19% (2011.1.1이후, NCST 거주자에 배당된 경우 50% 원천세 부과; 조세조약 예외 인정)
이자	14% (15.4%: 지방소득세 포함시)	30% (은행예금과 포트폴리오 이자에 대해 0%)	20%;15% (은행이나 금융기관)	20%	0% (2010.3.1이후 NCST에 위치한 회사가 받는 이자에 50% 원천세 부과; 조세조약 예외 인정)

자료: IBFD

바. 소득세 부담현황

- 우리나라의 소득세제가 세율구조 등에서 OECD국가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세 부담은 차이가 큰 편임
 - 최고명목세율, 최고 과세표준 구간의 문턱, 과표 구간 개수 등에서 OECD 국가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그러나 명목세율과 달리 평균유효세율의 격차는 큰 편임
 - GDP대비 혹은 총조세대비 소득세 부담의 격차도 큰 편임
- 무자녀 1인가구를 기준으로 평균유효세율을 비교해보면, 2010년 우리나라의 평균유효세율은 4.1%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음([표 33] 참조)
 - 그리스의 평균유효세율이 2.8%로 가장 낮고, 우리나라 4.1%, 멕시코 4.3%, 폴란드 6.7%, 일본 7.7% 순서임
 - 평균유효세율이 가장 높은 벨기에는 28.1%, 그 다음은 덴마크 27.9%, 아이슬란드 24.7%, 핀란드 22.0% 순서임
- 낮은 유효세율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GDP대비 소득세부담 및 총조세 대비 소득세부담 역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표 34, 35] 참조)
 - GDP대비 소득세 부담 및 총조세대비 소득세부담 모두 OECD 34개 국 중 30위에 불과함



【표 35】 평균유효세율(무자녀 1인 가구 기준)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호주	25.9	22.7	23.6	24.0	23.9	23.9	23.6	23.0	22.1	21.5	21.6
오스트리아	12.9	13.3	13.5	13.9	15.0	14.7	15.1	15.5	16.0	14.6	14.7
벨기에	29.0	29.0	28.7	28.0	27.9	28.0	27.9	28.1	28.5	28.0	28.1
캐나다	19.5	18.0	17.6	17.5	17.1	16.4	16.4	15.8	16.1	15.3	14.9
칠레	-	-	-	-	-	-	-	-	-	-	-
체코	10.0	10.0	10.5	10.8	11.3	11.5	9.9	10.4	11.1	11.3	11.5
덴마크	32.3	32.5	31.6	31.5	30.2	30.1	30.2	30.4	30.2	28.8	27.9
에스토니아	21.9	21.5	21.7	22.0	20.9	18.8	18.1	18.1	17.3	16.8	16.6
핀란드	27.2	26.4	26.3	25.8	25.0	25.0	23.8	23.7	24.2	22.7	22.0
프랑스	15.4	15.6	15.8	15.3	15.2	15.3	15.4	14.0	14.1	14.0	14.1
독일	22.7	21.5	22.0	22.4	21.4	20.8	20.8	21.1	21.3	20.7	18.7
그리스	1.1	0.6	1.0	1.0	1.7	1.0	1.8	3.3	3.3	4.8	2.8
헝가리	23.2	25.9	24.0	20.5	20.9	20.2	21.0	21.8	21.3	20.7	14.2
아이슬랜드	22.5	22.8	24.5	25.1	25.6	25.5	25.2	24.1	24.3	23.4	24.7
아일랜드	22.0	17.9	17.0	17.0	18.0	18.2	16.2	14.0	13.6	14.7	14.4
이스라엘	17.5	18.0	18.1	15.0	13.0	12.7	11.9	12.7	10.2	8.9	8.6
이탈리아	19.7	19.1	19.5	18.5	19.0	18.6	19.3	19.5	20.1	20.3	20.3
일본	7.0	7.0	6.4	6.7	6.6	6.6	7.2	8.1	8.1	7.8	7.7
한국	2.1	2.4	2.2	2.3	2.7	2.7	3.4	4.7	4.5	3.9	4.1
룩셈부르크	17.1	15.5	12.4	13.0	13.5	14.2	14.9	15.6	15.3	14.0	14.2
멕시코	0.8	1.5	2.7	3.2	3.7	3.1	3.5	4.6	3.8	4.0	4.3
네덜란드	8.9	10.5	11.0	10.2	10.7	11.2	13.3	14.6	16.0	16.5	16.4
뉴질랜드	19.4	19.4	19.4	19.5	19.6	19.9	20.2	20.8	20.3	17.7	16.9
노르웨이	22.9	23.6	23.0	22.4	22.3	21.2	21.3	21.7	21.7	21.0	20.9
폴란드	6.6	6.3	6.2	6.3	6.3	6.4	6.5	6.8	7.2	6.6	6.7
포르투갈	11.4	10.3	11.7	11.5	11.5	10.8	11.2	11.8	11.8	11.6	11.9
슬로바키아	7.8	7.9	7.1	7.7	8.4	8.4	8.7	8.9	9.4	8.0	8.1
슬로베니아	13.5	13.3	13.2	13.3	13.5	12.6	12.7	10.7	11.0	10.8	11.0
스페인	13.5	13.8	14.1	13.4	13.7	13.9	14.1	14.2	12.9	13.4	15.2
스웨덴	26.7	25.4	23.6	24.2	24.5	24.2	23.9	20.6	19.9	18.4	17.7
스위스	9.9	9.9	10.0	9.9	10.1	10.1	10.1	10.3	9.8	9.9	10.0
터키	14.7	14.9	15.1	14.8	15.5	15.5	15.4	15.4	12.7	12.0	12.1
영국	17.4	17.3	17.4	17.5	17.6	17.6	17.7	17.7	16.4	16.2	16.3
미국	17.3	17.2	17.0	16.8	16.7	16.6	16.8	16.6	16.0	15.1	15.3
OECD평균	15.9	15.6	15.5	15.3	15.4	15.2	15.2	15.3	15.0	14.5	14.2

자료: OECD, *Taxing wages 2010, 2011*

【표 36】 OECD국가의 GDP대비 소득세 부담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2010	순위(09)
호주	11.4	12.5	11.9	11.4	11.4	11.8	9.7	-	11
오스트리아	9.0	9.4	8.3	8.6	9.5	9.2	9.5	9.4	13
벨기에	15.0	15.8	13.4	14.2	14.0	13.0	12.1	12.3	6
캐나다	10.6	11.5	14.7	13.4	13.1	11.9	11.4	10.8	8
칠레	-	-	-	-	-	-	-	-	-
체코	-	-	-	4.8	4.6	4.6	3.6	3.6	31
덴마크	22.5	23.4	24.8	26.2	25.6	24.9	26.4	24.4	1
에스토니아	-	-	-	8.5	6.8	5.6	5.7	5.4	25
핀란드	12.8	14.9	15.2	14.2	14.5	13.5	13.3	12.5	3
프랑스	4.7	4.9	4.5	4.9	8.0	8.0	7.3	7.3	20
독일	10.8	10.3	9.6	10.2	9.5	8.1	9.4	8.9	14
그리스	3.2	3.5	3.7	3.5	5.0	4.7	5.1	-	27
헝가리	-	-	-	6.7	7.3	6.7	7.5	6.8	19
아이슬랜드	6.8	5.5	8.3	9.7	12.9	14.2	12.8	12.9	5
아일랜드	9.9	10.8	10.6	10.0	9.5	8.3	7.7	7.5	18
이스라엘	-	-	-	10.0	10.7	7.7	6.3	6.2	22
이탈리아	6.9	9.0	9.9	10.4	10.5	10.4	11.7	11.7	7
일본	6.1	6.7	8.1	6.0	5.7	5.0	5.4	5.2	26
한국	2.0	2.2	3.9	3.6	3.3	3.2	3.6	3.6	30
룩셈부르크	9.6	10.1	8.4	8.0	7.2	7.1	7.8	7.8	17
멕시코	-	-	-	-	-	-	-	-	-
네덜란드	11.3	8.2	10.6	7.8	6.0	6.9	8.7	-	15
뉴질랜드	18.8	18.7	17.7	16.3	14.3	15.1	12.9	11.7	4
노르웨이	12.1	9.6	10.7	10.6	10.3	9.7	10.4	10.2	10
폴란드	-	-	-	8.3	4.4	3.9	4.6	-	28
포르투갈	-	-	4.3	5.4	5.5	5.2	5.7	5.6	24
슬로바키아	-	-	-	3.6	3.4	2.6	2.4	2.3	32
슬로베니아	-	-	-	5.8	5.6	5.5	5.9	5.7	23
스페인	4.6	5.4	7.1	7.6	6.4	6.4	6.6	6.9	21
스웨덴	19.0	18.4	20.1	15.9	17.1	15.4	13.5	12.8	2
스위스	9.8	10.1	10.0	10.1	10.5	10.4	9.5	9.6	12
터키	5.8	3.2	4.0	3.6	5.4	3.6	4.0	3.7	29
영국	10.2	9.6	10.4	9.8	10.7	10.4	10.5	10.0	9
미국	10.3	9.7	10.1	9.9	12.3	9.5	8.1	8.0	16
OECD평균	10.1	10.1	10.4	9.3	9.4	8.8	8.7	-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9, 2010

[표 37] OECD국가의 총조세대비 소득세 부담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2010	순위(09)
호주	44.0	45.2	43.0	40.6	37.8	39.7	37.4	-	4
오스트리아	23.2	22.9	21.0	20.9	22.1	22.0	22.3	22.5	17
벨기에	36.4	35.6	32.0	32.6	31.3	29.1	28.0	28.1	11
캐나다	34.1	35.2	40.8	37.5	36.8	35.6	35.5	35.0	5
칠레	-	-	-	-	-	-	-	-	-
체코	-	-	-	12.8	12.9	12.2	10.3	10.3	31
덴마크	52.2	50.7	53.2	53.7	51.8	48.9	55.0	50.6	1
에스토니아	-	-	-	23.3	22.1	18.2	15.9	16.0	27
핀란드	35.7	37.4	34.7	31.1	30.6	30.7	31.2	29.7	8
프랑스	11.6	11.5	10.7	11.4	18.0	18.0	17.2	16.9	24
독일	29.6	28.7	27.6	27.5	25.3	23.1	25.3	24.4	14
그리스	14.9	13.9	14.1	12.0	14.7	14.6	17.0	-	25
헝가리	-	-	-	16.1	18.6	18.0	18.9	18.0	22
아이슬랜드	23.1	19.5	26.9	31.1	34.8	34.8	37.9	35.5	3
아일랜드	32.0	31.3	31.9	30.7	30.4	27.3	27.6	27.0	12
이스라엘	-	-	-	27.1	29.0	21.7	20.1	19.1	20
이탈리아	23.1	26.7	26.3	26.0	24.8	25.5	27.0	27.2	13
일본	24.3	24.7	27.8	22.4	21.1	18.3	20.0	32.4	21
한국	11.5	13.4	20.0	18.1	14.6	13.3	14.2	14.3	30
룩셈부르크	27.0	25.5	23.5	21.7	18.3	19.0	20.7	21.4	19
멕시코	-	-	-	-	-	-	-	-	-
네덜란드	26.3	19.4	24.7	18.9	15.2	18.0	22.8	-	16
뉴질랜드	61.6	60.5	48.0	45.0	43.1	41.1	41.0	37.5	2
노르웨이	28.5	22.5	26.2	25.9	24.1	22.2	24.1	23.8	15
폴란드	-	-	-	22.9	13.5	11.9	14.6	-	29
포르투갈	-	-	15.9	18.4	17.7	16.8	18.8	17.9	23
슬로바키아	-	-	-	8.9	9.9	8.4	8.4	8.2	32
슬로베니아	-	-	-	15.0	15.0	14.3	15.7	15.2	28
스페인	20.4	19.4	21.7	23.6	18.6	18.0	21.7	21.7	18
스웨덴	41.0	38.7	38.5	33.5	33.3	31.6	28.9	28.0	10
스위스	38.9	39.2	38.8	36.3	34.9	35.7	32.1	32.3	7
터키	43.5	27.5	26.8	21.6	22.2	14.7	16.4	14.1	26
영국	29.4	26.0	29.4	28.8	29.4	29.2	30.5	28.6	9
미국	39.1	37.8	37.0	35.7	41.8	35.1	33.6	32.1	6
OECD평균	31.3	29.7	29.6	26.0	25.4	24.0	24.7	-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9, 2010

5. 주요국의 소득세제 최근 동향

【표 38】 소득세제 관련 최근 동향

최근 소득세법 개정 동향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세율 인상 및 최고 과표구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4개 구간 35%(8,800만원 초과) → 2012년 5개 구간 38%(3억원 초과) •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인하 및 소득공제체계 개편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통합당 2012년 총선공약: 최고과표구간 문턱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하향조정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누리당 2012년 총선공약: 2012년 3,000만원, 2015년 2,000만원 - 민주통합당 2012년 총선공약: 2013년 3,000만원
미국	<p>(2012.2.13. 오바마 행정부의 국회제출 2013회계연도 예산안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득 가구에 대한 2001년 및 2003년 감세혜택 종료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5만달러(기타 연소득 20만달러)이상의 고소득 가구에 대한 위 감세법 적용 배제 - 연간 개인소득 100만달러 넘는 경우 최저세율 30%이상 적용제한 -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 충족할 경우(기혼납세자 25만달러 이상, 독신 20만 달러 이상) 일반소득과 동일하게 과세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6%에서 39.6%로 인상 제안 - 항목별 비용공제와 소득비과세 수준을 과세소득의 28%로 제한할 것을 제안 •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에 대한 2001년 및 2003년 감세혜택 계속 적용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세(payroll tax)에 대한 2% 세금감면 혜택 일몰 연장 - 일시적으로 인하였던 고용인부담 사회보장기여금 일몰 연장 - 대학교육비 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의 일몰을 연장해 영구화 • 헤지펀드 매니저 등에 대한 과도한 투자이익분배금(carried interest)에 대해 자본이득세와 동일한 세율 부과하도록 규정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2010 과세연도: 최고세율 40% → 2010~2011 과세연도: 15만 유로이상 최고 과표구간 신설, 최고세율 50% • 최고과표구간 신설에 따라 기본세율(20%) 구간 문턱 조정: 2009~2010 과세연도 34,800파운드 → 2010~2011 과세연도 37,400파운드로 상향조정 → 2011~2012 과세연도 35,000파운드로 상향조정



최근 소득세법 개정 동향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이후 소득세율 체계 변경 없음 • 2007년 세율구간 조정(4단계 → 6단계), 최고세율 인상(37% → 40%)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율 체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변화 없음 - 과표구간만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상향조정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과세소득 153,300 유로이상 고소득자에게 2.5%의 가산세(“solidarity tax, 연대세”) 부과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만유로 초과 과표구간에 세율 3%p 가산(중앙정부 최고세율 43% → 46%)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최고구간 및 세율: 75,000 유로이상, 40% → 2010년: 100,000 유로 이상 45% • 과표구간 2010년 5개 → 2011년 9개 → 2012년 8개 • 2011년 면세점 인하: 12,000유로 → 5,000 유로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과세소득 12,000 유로이상 소득자에게 1~4%의 가산세(“solidarity tax, 연대세”) 부과 - EUR 12,001~20,000: 1%, EUR 20,001~50,000: 2%, EUR 50,001~100,000: 3%, EUR 100,000~: 4%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최고구간 및 세율: 120,000 유로이상 43% → 2011년: 175,000 유로 이상 45% • 2011년 최고구간 신설(과표구간수 2010년 4개 → 2011년 6개) - 12만유로 초과시 44%, 17.5만유로 초과시 45%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부터 연간 25만유로 이상의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부가세(surtax, exceptional contribution) 부과 - 25만유로이상 50만 유로이하: 3% 가산 - 50만유로 이상: 4% 가산세 부과되어 최고세율 45% - 동 부가세는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할 때 까지 지속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표구간 개수 축소 - 2011.8이전 9개 구간 → 2011.9 이후 7개 구간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세율 인상: 2009년 11.5% → 2010년 13.2% • 2011년부터 CHF 751,300 이상 최고구간에서는 전체소득에 대해 11.5% 적용(과세 강화)

자료: IBFD, 조세연구원 해외조세동향



법 인 세

1. 우리나라 법인세제 개요 및 연혁 91
2.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제 96
3. 주요국의 법인세제 비교 108
4. 주요국의 법인세제 최근 동향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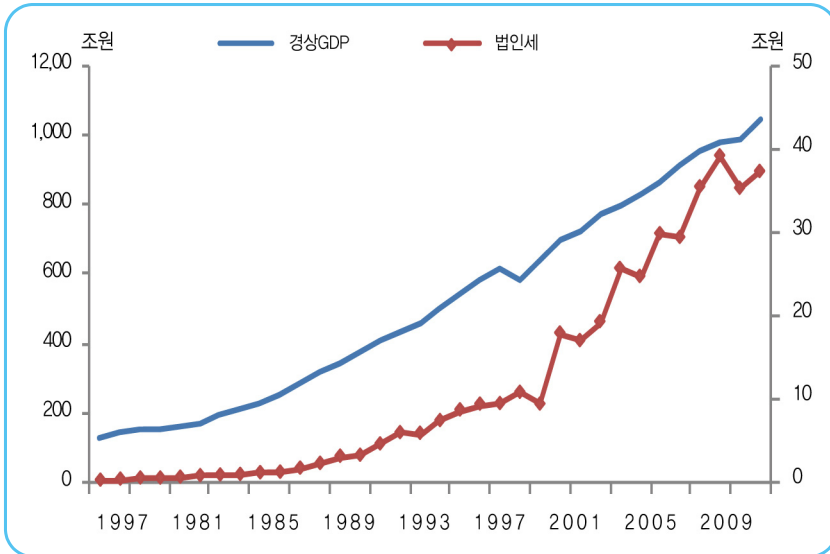
Ⅲ 법인세

1. 우리나라 법인세제 개요 및 연혁

가. 법인세

- 법인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 국세, 직접세, 소득세, 누진세의 성격을 가짐
- 경제성장과 함께 법인세 징수액은 1977년 0.2조원에서 2010년 37.3조원으로 크게 증가
 - 특히 외환위기 이후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됨

【그림 7】 경상GDP vs. 법인세액(징수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나. 법인 구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법인이 법인세 납세의 의무가 있음
 - 내국법인: 영리 내국법인(상법상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및 비영리 내국법인(민법상 사단·재단법인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 외국법인: 영리 및 비영리 외국법인

다. 법인 구분별 납세의무

-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으로 구분됨
 -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함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특별한 형태의 법인세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는 전국에 소재한 것이 과세대상이나, 그 외의 부동산은 투기지역에 소재한 경우만 과세 대상이 됨
 - ‘청산소득’은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될 때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러한 점을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과 성격이 유사
-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됨
 - 법률상 귀속에 관계없이 자산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실질상 해당되는 법인의 귀속으로 함

- 법인세 외에 사업연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지방세와 특별세를 추가로 부담
 -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이전의 ‘주민세법 인세할’)로 납부
 - 농어촌특별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 [표 39] 현행 우리나라 법인 구분 및 과세내용 ■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 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과세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소득		비과세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비과세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과세		

주: * 는 법인의 토지 및 건물, 주택 및 부속토지에 해당됨
 자료: 국세청

라. 법인세 연혁

- 우리나라 최초의 법인과세는 1916년 8월에 실시되었고, 해방 후 1949년에 법인세법이 제정됨
- 이후 경제발전으로 법인수와 함께 법인세징수액이 크게 증가했고 1982년에 신고납부제 도입으로 급증



- 법인세율은 추세적으로 하락하였는데, 특히 2008년 이후 보다 빠르게 하락세를 나타냄
 -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1981년 누진세율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하였고, 이후 과표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980년대 초반 과표구간 5천만원 이하 20%와 5천만원 초과 30% 구조에서 점차적으로 낮아져 2005년에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의 구조로 변화
 - 2008년에 과표기준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을 2%p 인하
 - 2009년에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3%p 낮추었고, 2010년에는 2억원 이하 세율도 1%p 추가 인하
 - 2011년 세법개정에서 법인세 추가감세가 부분철회되며, 2억원 ~ 200억원 구간을 신설해 동 구간의 세율을 20%로 낮추고 200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22%를 유지
 - 이에 따라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는 3단계 누진세율 구조임

【표 40】 우리나라 법인세 개정 추이

구분	일반법인	공공법인
1990	8천만원 이하 20%(20%) 8천만원 초과 30%(33%)	조합법인 5% 기타법인 3억원 이하 10% 3억원 초과 15%
1991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34%	조합법인 10% 기타법인 3억원 이하 17% 3억원 초과 25%
1994	1억원 이하 18% 1억원 초과 32%	조합법인 10% 기타법인 3억원 이하 18% 3억원 초과 25%
1995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30%	조합법인 10% 기타법인 1억원 이하 18% 1억원 초과 25%
1996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8%	조합법인 10% 기타법인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5%
2002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27%	조합법인 12%
2004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	조합법인 12%
2008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5%	조합법인 12%
2009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2%	조합법인 12%
2010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2%	조합법인 9%
2011 (현행)	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조합법인 9%

주: 1) ()안은 비상장대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과 동일
 3) 조합법인은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 72① 각호에 열거된 조합으로, 당기순이익 과세를 받는 법인임
 자료: 법제처



2.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제

가. 과세체계

■ [그림 8] 법인세 계산 절차 ■

각 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	비고
<p>총 수입</p> <p>(-) 총비용 (±)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p> <p>↓</p> <p>각사업연도소득</p> <p>(-) ① 10년내 발생한 이월결손금 ② 비과세소득(공익신탁재산소득 등) ③ 소득공제(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p> <p>↓</p> <p>과세표준</p> <p>(×) 세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11년: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2% '12년 이후 : 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조합법인: 9% <p>↓</p> <p>산출세액</p> <p>(-)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 가산세(무신고·미납부가산세 등)</p> <p>↓</p> <p>결정세액</p> <p>△기납부세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 수시부과세액 <p>↓</p> <p>자진납부세액 (고지세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 및 신고조정 • 기부금 한도초과 및 이월액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임시투자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예납: 사업연도 개시일 ~6월간을 기간으로 2월이내 • 확정신고, 납부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토지 등 양도소득	비고(세율)
$\text{양도소득} = \text{양도금액} - \text{장부가액} \times \text{세율}$	(등기): 10%·30% (미등기): 10%(20%)·40%

나. 세부담 구조

□ ‘과세표준 규모별’ 세부담 구조는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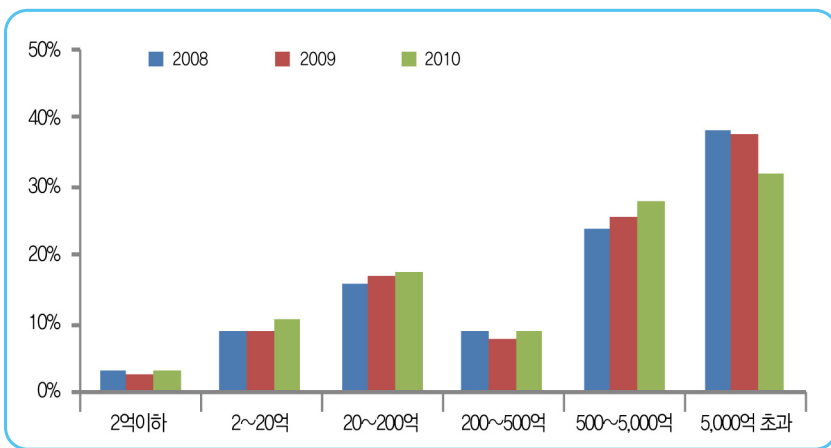
- 2010년도 기준, 2억원 이하 법인의 세액부담이 전체 법인세액의 3.2%이고, 2억원 초과 법인의 부담이 96.8%임
- 2010년 들어 과세표준 5,000억 초과 법인의 세부담이 급감

■ [표 41] 과세표준별 법인세 부담구조(2010, 신고기준) ■

	기업수		당기순이익		총부담세액		평균세율 (B/A,%)
	천개	%	조원(A)	%	조원(B)	%	
합계	440.0	100.0	185.0	100.0	29.6	100.0	16.0
2억원 이하	389.3	88.5	35.4	19.1	0.9	3.2	2.7
2억원 초과	50.7	11.5	149.6	80.9	28.6	96.8	19.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1

■ [그림 9] 과세표준별 법인세 부담 분포 추이(신고 기준)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9~2011



□ ‘기업규모별’ 세부담 구조는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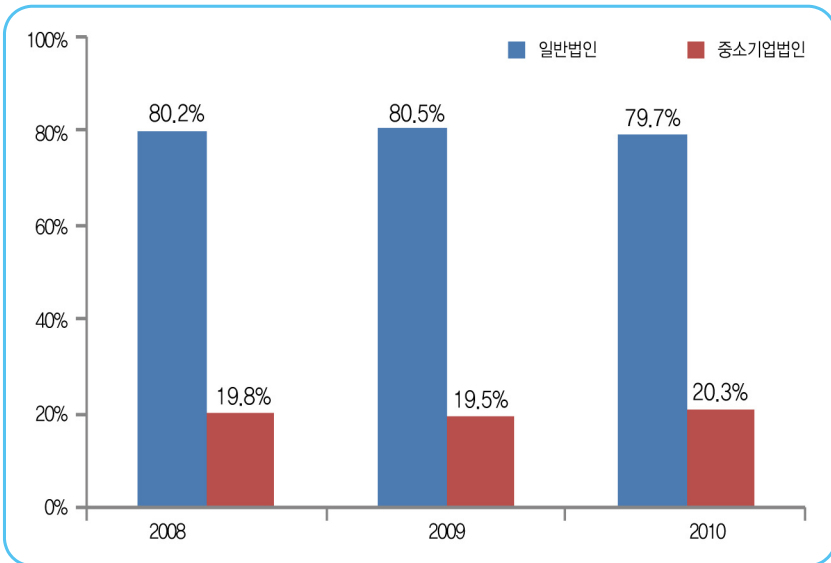
- 2010년도 기준, 일반법인의 세액부담이 전체 법인세액의 79.7%이고, 중소기업법인의 부담이 20.3%임
- 2010년 들어 중소기업 법인의 세부담이 증가

▣ [표 42] 기업규모별 법인세 부담구조(2010, 신고기준) ▣

	기업수		당기순이익		총부담세액		평균 세율 (B/A,%)
	천개	%	조원(A)	%	조원(B)	%	
합계	440.0	100.0	185.0	100.0	29.6	100.0	16.0
일반법인	89.1	20.3	140.6	76.0	23.6	79.7	16.8
중소기업법인	350.9	79.7	44.4	24.0	6.0	20.3	13.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1

▣ [그림 10] 기업규모별 법인세 부담 분포 추이(신고 기준)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9~2011

다. 각 사업년도 소득⁹⁾

-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차감하고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가감한 금액
- 실제로는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에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손금산입을 차감하는 세무조정을 통해 계산
- 결산조정 항목은 감가상각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퇴직급여 및 대손·구상채권상각 총당금, 채무자 파산 등으로 발생한 대손금, 자산의 평가손익 등임

라. 익금 및 익금불산입

- 익금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
 - 배당으로 의제되는 금액, 사업수입금액,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 임대료 및 평가차익, 무상 자산가액 등

9) 아래의 내용부터‘동업기업 과세특례’까지의 내용은 「조세개요」(기재부, 2011)에서 발췌



□ 익금 불산입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3】 법인세 익금 불산입

구분	내 용
지주회사 수입 배당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법인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금액 초과분 • 익금불산입율: 상장·등록법인은 지분율 20~40% 이하는 80%, 40% 초과시 100%이고, 비상장·비등록법인은 지분율 40~80% 이하는 80%, 80% 초과시 100% 임 •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용 차입금 이자 중 '회계상 자산총액'과 '자회사 주식등 장부가액×익금불산입률' 비율은 익금불산입에서 차감
일반법인 수입 배당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법인이 당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일정금액을 익금불산입 • 익금불산입율: 상장·등록법인은 지분율 30% 이하는 30%, 30% 초과시 50%, 100% 초과시 100%이고, 비상장·비등록법인은 지분율 50% 이하는 30%, 50% 초과시 50%, 100% 초과시 100%임 • 법인의 자회사 출자용 차입금 이자 중 '회계상 자산총액'과 '자회사 주식등 장부가액×익금불산입률' 비율은 익금불산입에서 차감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일 전 3월 이내 취득 주식 등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 지주 혹은 명목회사 등의 수입배당금

마. 손금 및 손금불산입

□ 손금 :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 판매상품 매입가액, 제품원료 매입가액, 상품·제품의 보관료, 포장·운반비, 판매부대비용,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인건비, 고정자산 수선비 및 감가상각비, 차입금 이자 등

□ 손금 불산입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4】 법인세 손금 불산입

구분	내용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 •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상가액(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 대비 저가 혹은 고가매입에 따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 • 법정기부금 50%, 지정기부금 10%
접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제비, 사례금 등과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 • 한도액은 기초금액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과 매출액 기준금액(100억원 이하 0.2%, 500억원 이하 0.1%, 500억원 초과 0.03%)의 합계
감가상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자산 취득가액을 내용연수기간(예, 건축물은 20년 혹은 40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한 것 • 대상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모든 유·무형 고정자산 • 감가상각방법은 자산별로 신고유무에 따라 정액법, 정율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적용됨
과다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여금: 임원 상여금 중 지급기준액 초과분, 정당한 사유없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사용인에게 동일직위의 다른 임원·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 지급한 상여금 • 퇴직급여: 실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고, 임원의 퇴직급여는 (1년간 총급여액/10×근속연수)으로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정관에 정해진 금액에 해당 • 퇴직보험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전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퇴직보험 등은 '퇴직급여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의 공제금액에 상당하는 보험료'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의 차감액이 한도 • 공동경비: 조직·사업의 공동 운영에서 발생된 손비 중 출자금액 비율, 매출액 비율, 분담비율 등에 의한 분담금액의 초과분
업무무관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서화·골동품, 자동차·선박 등)의 취득·관리로 인한 비용
지급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상당액



바. 공제

□ 지급배당 소득공제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공제

□ 결손금 공제

-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1년간 소급공제

사. 총당금

□ 퇴직급여 총당금

- 각 사업연도에 임원·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5%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금 추계액의 25% 중 작은 금액

□ 대손총당금

-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해 대손 총당을 위해 설정한 총당금을 손비로 인정
- 채권잔액의 1%(금융기관 2%), 대손 실적률(=당해 연도 대손금/전년말 채권잔액) 중 작은 금액

아. 양도손익

□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

- 납세자가 해산·합병·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양도가액에서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손익’으로 함
- 양도가액에는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합병법인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합병법인이 합병이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과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세금이 포함됨
-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자산 장부가액에서 부채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 적격인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음(과세이연 여부 혹은 과세특례 적용)
-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보다 클 때는 차액을 합병·분할 매수차손으로 해 5년간 월별균등 손금산입하고, 반대로 양도가액이 작을 때는 차액을 합병·분할 매수차익으로 하여 5년간 월별균등 익금산입함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지가급등지역의 토지 등은 양도소득×10%(미등기는 20%),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은 양도소득×30%(미등기는 40%),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30%(미등기는 40%)



자. 연결납세제도

-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 과세표준은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범위에서 연결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하여 산출
 - 단, 연결납세방식 적용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과 연결모법인인 다른 법인 합병시 승계한 이월결손금 및 합병 후 5년내 발생한 승계자산의 처분손실 등은 공제제한

차. 동업기업 과세특례

- 동업기업(Partnership)이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립한 인적회사 성격의 사업체
 - 단, 민법·상법에 따른 조합 및 합명회사·합자회사와 특별법(변호사법, 공인노무사법 등)에 따른 합명회사, 전문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특별법(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에 따른 유한회사 등이 대상임
- 동업기업 과세특례(Partnership taxation)는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임
 - 단, 소득의 계산 및 신고시에는 동업기업을 실체로 인정

-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동업기업 소득은 과세체계가 동일한 동업자군별로 배분하여 소득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부담
 - 동업기업의 결손금은 지분가액을 한도로 동업자에게 배분하고, 동업자는 이를 다른 사업소득 등과 공제
 - 세액공제 및 감면금액, 원천징수세액, 가산세 등은 동업기업 단계에서 계산하여 동업자에게 배분하고 동업자는 이를 소득·법인세 신고납부 시 반영

카. 법인 관련 주요 조세지원제도

- 투자세액공제제도 외에 중소기업 지원, 연구 및 인력 개발, 고용지원, 구조조정,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세 감면 및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지원제도를 운영
- 법인 관련 주요 조세 지원내용은 아래의 [표 45]와 같음
 - 단,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 조세지출효과가 큰 임시투자세액공제(2010년 1.7조원)는 2011년 세법개정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표 45】 법인 관련 주요 공제 및 감면제도

구분	법령	금액* (십억원)	내용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 10	1,841.7	연구 및 인력개발용 당해지출액의 3~6%(중소기업 25%), 직전 4년간 평균지출액 초과분의 40%(중소기업 50%) 중 선택 등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 액공제	조특§ 26	1,702.7	투자금액에 대해 고용유지시 4% 기본공제, 고용창출시 2%(중소기업 3%) 추가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법 57, 조특§ 104 의6	1,462.8	국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에 대해 5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조특§ 25의 2	257.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특§ 11	94.7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5의 3	69.1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세액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조특§ 7	770.9	소득세·법인세의 5~30% 세액감면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조특§ 121의2, 4	576.5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7년간(5년 100%, 2년 50%) 또는 5년간(3년 100%, 2년 50%) 세액감면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시 세액감면	조특§ 63의 2	232.5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 밖 이전시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세액감면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 6	58.4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104 의24	신설	국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에 대해 5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주: * 는 2010년 기준 조세지출 실적치임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1

타. 국제 조세

- 국가간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을 체결, 내국 법인과 상대국 법인에 적용
 -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법인세법이 적용됨. 단,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을 때에는 사업소득에 대해 2%를 원천징수함
 - 이자나 배당소득은 조약 체결 시에는 우대세율로 과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법인세법을 적용
 - 국내기업의 해외 주식양도는 법인소득으로 과세되나 외국자본은 대체로 거주지국에서 과세됨

-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간주 및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손금산입을 허용
 - 국외원천소득을 갖는 내국법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법인세액 납부 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법인세액 감면 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자회사의 이익배당이나 잉여금 분배 시에 각각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됨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이전가격을 독립기업간 거래 보다 높거나 낮게 책정할 때에는 이를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



3. 주요국의 법인세제 비교¹⁰⁾

가. 과세대상자

【표 46】 주요국의 법인세 과세대상 비교

	내 용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점 및 주사무소 위치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 •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같이 종합과세되고, 없으면 분리과세됨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주식회사(C법인^주)는 매년 세금신고와 함께 법인세를 납부 • 개인사업체, 파트너십(합명회사), 특수 주식회사(S법인), 유한책임회사 등은 개인소득세만 부과 • 외국회사도 미국내에서 사업시 내국세법을 동일하게 적용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 법인격 없는 단체, 신탁재산, 외국기업의 지점이 과세대상임 • 법인세 대상이 되는 기업이익은 자본이득을 포함하여 영국에 거주하는 회사들의 전 세계 수입을 포함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내 본점 혹은 주사무소를 갖는 내국법인은 원천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과세 • 외국법인도 일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 등 자본회사의 법적 형태를 갖는 기업, EU형 조합 등 조합, 보험 및 연금펀드연합체 등 • 회사 또는 단체의 관리장소나 주소지가 국내에 있으면 전세계 소득이 과세대상이고, 없을 시에는 국내 발생소득만이 대상
프 랑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가 과세대상이고, 합명회사도 선택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가능 • 협동조합, 영리 목적의 공공단체와 공익시설 및 비영리단체의 부동산 소득 등도 대상이 됨

주: C법인은 일반주식회사로 미국 내국세법 C장에 따라 기업차원에서 과세되고, S법인은 특수주식회사로 내국세법 S장에 따라 주주단계에서 과세됨

10) OECD 34개국 중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5개국을 주요국으로 함

나. 법인세 비중

- 주요국 중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와 영국이 높은 수준이고 독일과 프랑스가 낮음
 - 2007년 이후 동 법인세 비중이 일본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락,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보다 작은 0.5%p 하락

- 주요국 중 법인세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이고 프랑스와 독일이 낮음
 - 2007년 이후 동 법인세 비중이 일본과 미국에서 높아졌으나 독일과 프랑스는 하락,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보다 작은 1.2%p 하락

■ [표 47] 주요국의 법인세 비중 비교: GDP vs. 총조세 ■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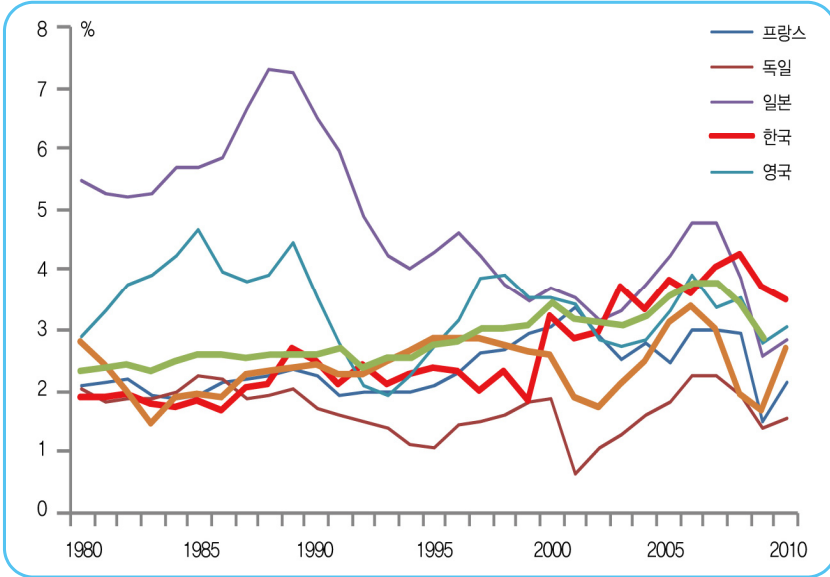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OECD	한국
GDP 기준	2007	3.0	4.8	3.4	2.2	3.0	3.8	4.0
	2010	2.7	2.8	3.1	1.5	2.1	2.8*	3.5
	증감	(-0.3)	(-1.9)	(-0.3)	(-0.7)	(-0.9)	(-0.9)	(-0.5)
총조세 기준	2007	10.8	16.8	9.4	6.1	6.8	10.6	15.1
	2010	10.9	17.8	8.7	4.2	5.0	8.4*	13.9
	증감	(0.1)	(1.0)	(-0.7)	(-1.9)	(-1.9)	(-2.2)	(-1.2)

주: *는 2009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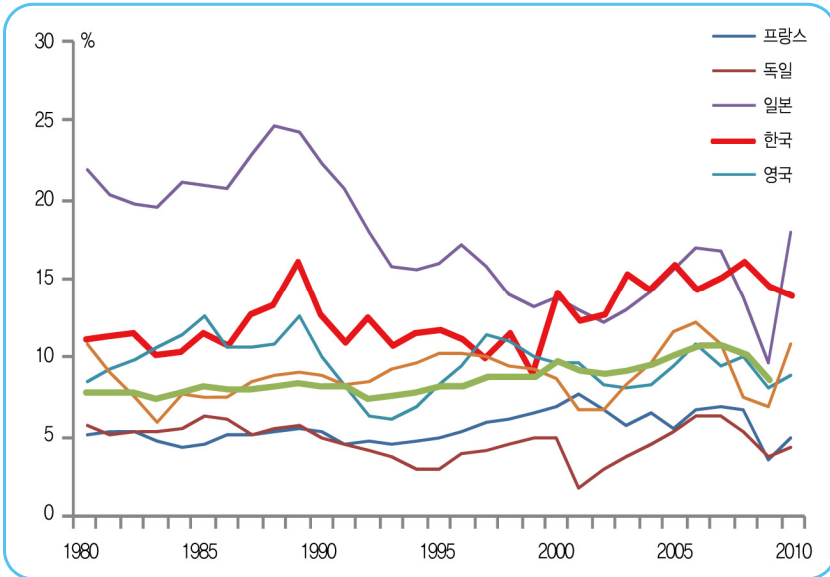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그림 11] 주요국의 법인세 비중 비교: GDP 기준 ■



■ [그림 12] 주요국의 법인세 비중 비교: 총조세 기준 ■



□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OECD 국가 중 GDP 및 총조세 대비 모두 상위 4위에 있음(아래의 [표 48, 49] 참조)

【표 48】 OECD국가의 GDP대비 법인세 부담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2010	순위('09)
호주	3.2	2.6	3.9	4.1	6.1	5.8	4.8	-	3
오스트리아	1.4	1.4	1.4	1.4	2.0	2.2	1.7	1.9	29
벨기에	1.9	2.2	2.0	2.4	3.2	3.3	2.5	2.7	15
캐나다	3.6	2.7	2.5	2.9	4.4	3.5	3.4	3.3	7
칠레	-	-	-	-	-	-	-	-	-
체코	-	-	-	4.6	3.5	4.5	3.7	3.4	5
덴마크	1.4	2.2	1.7	2.3	3.3	3.9	2.4	2.7	17
에스토니아	-	-	-	2.4	0.9	1.4	1.9	1.4	26
핀란드	1.2	1.4	2.0	2.3	5.9	3.3	2.0	2.5	24
프랑스	2.1	1.9	2.2	2.1	3.1	2.4	1.5	2.1	31
독일	2.0	2.2	1.7	1.0	1.8	1.8	1.3	1.5	32
그리스	0.8	0.7	1.4	1.8	4.1	3.3	2.4	-	19
헝가리	-	-	-	1.9	2.2	2.1	2.3	1.2	21
아이슬랜드	0.7	0.9	0.9	0.9	1.2	2.0	1.8	1.7	28
아일랜드	1.4	1.1	1.6	2.7	3.7	3.4	2.4	2.6	18
이스라엘	-	-	-	3.2	3.9	4.0	2.8	2.9	13
이탈리아	2.3	3.1	3.8	3.5	2.9	2.8	3.2	2.8	8
일본	5.5	5.7	6.5	4.3	3.7	4.3	2.6	2.8	14
한국	1.9	1.8	2.5	2.3	3.2	3.8	3.7	3.5	4
룩셈부르크	5.8	7.0	5.6	6.6	7.0	5.8	5.6	5.3	2
멕시코	-	-	-	-	-	-	-	-	-
네덜란드	2.8	3.0	3.2	3.1	4.0	3.8	2.0	-	23
뉴질랜드	2.4	2.6	2.4	4.3	4.1	6.2	3.5	3.9	6
노르웨이	5.7	7.3	3.7	3.8	8.9	11.7	9.3	9.7	1
폴란드	-	-	-	2.8	2.4	2.5	2.3	-	20
포르투갈	-	-	2.1	2.3	3.7	2.7	2.9	2.8	11
슬로바키아	-	-	-	6.0	2.6	2.7	2.5	2.6	16
슬로베니아	-	-	-	0.5	1.2	2.8	1.8	1.9	27
스페인	1.1	1.4	2.9	1.7	3.1	3.9	2.2	1.8	22
스웨덴	1.1	1.7	1.6	2.8	3.9	3.7	3.0	3.5	10
스위스	1.6	1.7	2.0	1.8	2.7	2.6	3.2	3.2	9
터키	0.6	1.1	1.0	1.1	1.8	1.7	1.9	1.9	25
영국	2.9	4.7	3.5	2.8	3.5	3.3	2.8	3.1	12
미국	2.8	1.9	2.4	2.9	2.6	3.2	1.7	2.7	30
OECD평균	2.3	2.6	2.6	2.8	3.5	3.6	2.8	-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표 49] OECD국가의 총조세대비 법인세 부담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2010	순위(09)
호주	12.2	9.4	14.1	14.8	20.2	19.4	18.7	-	2
오스트리아	3.5	3.5	3.6	3.3	4.6	5.2	4.0	4.6	30
벨기에	4.7	4.9	4.8	5.4	7.2	7.4	5.9	6.2	22
캐나다	11.6	8.2	7.0	8.2	12.2	10.5	10.7	10.7	7
칠레	-	-	-	-	-	-	-	-	-
체코	-	-	-	12.2	9.9	12.0	10.6	9.8	8
덴마크	3.2	4.8	3.7	4.8	6.6	7.7	5.1	5.7	27
에스토니아	-	-	-	6.7	2.9	4.7	5.2	4.0	26
핀란드	3.4	3.4	4.5	5.0	12.5	7.6	4.7	6.0	29
프랑스	5.1	4.5	5.3	4.9	6.9	5.5	3.5	4.9	32
독일	5.5	6.1	4.8	2.8	4.8	5.1	3.6	4.2	31
그리스	3.8	2.7	5.5	6.3	12.2	10.3	8.1	-	15
헝가리	-	-	-	4.5	5.7	5.7	5.7	3.3	23
아이슬랜드	2.5	3.1	2.8	3.0	3.3	4.9	5.2	4.6	25
아일랜드	4.5	3.2	5.0	8.5	11.8	11.2	8.8	9.2	12
이스라엘	-	-	-	8.5	10.6	11.2	8.8	9.0	11
이탈리아	7.8	9.3	10.0	8.7	6.9	6.8	7.4	6.5	17
일본	21.8	21.0	22.4	15.9	13.8	15.5	9.6	17.8	9
한국	11.0	11.4	12.8	11.6	14.1	15.9	14.4	13.9	4
룩셈부르크	16.2	17.7	15.8	17.7	17.8	15.4	14.7	14.4	3
멕시코	-	-	-	-	-	-	-	-	-
네덜란드	6.6	7.0	7.5	7.5	10.1	9.8	5.3	-	24
뉴질랜드	7.8	8.3	6.5	11.9	12.4	16.8	11.0	12.4	5
노르웨이	13.3	17.2	9.0	9.2	20.9	27.0	21.7	22.6	1
폴란드	-	-	-	7.7	7.4	7.5	7.2	-	18
포르투갈	-	-	8.0	7.8	12.1	8.6	9.4	9.1	10
슬로바키아	-	-	-	15.0	7.7	8.7	8.6	9.0	13
슬로베니아	-	-	-	1.3	3.1	7.2	4.9	5.0	28
스페인	5.1	5.1	8.8	5.4	8.9	10.8	7.2	5.5	19
스웨덴	2.5	3.5	3.1	5.8	7.6	7.5	6.4	7.6	21
스위스	6.4	6.8	7.6	6.6	9.0	8.9	10.7	10.8	6
터키	4.1	9.5	6.7	6.7	7.3	7.1	7.7	7.3	16
영국	8.4	12.6	9.9	8.1	9.7	9.3	8.1	8.7	14
미국	10.8	7.5	8.9	10.3	8.7	11.6	6.9	10.9	20
OECD평균	7.6	7.9	7.9	8.0	9.7	10.1	8.4	-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다. 과세구간과 세율

- 법인세 과세구간은 크게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 OECD 다수의 국가가 단일세율체계를 채택하고 있고, 3단계 이상의 세율구조인 국가는 3개 국가에 불과(아래의 [표 50] 참조)
 - 프랑스와 일본, 스페인 등 7개국이 2개 과세구간, 한국과 영국, 벨기에 3개국이 3개 구간, 미국이 예외적으로 8개 구간을 갖고, 나머지 국가들은 단일세율 구조를 나타냄

- 중앙정부 기준의 법인세 최고명목세율은 OECD 국가 중 6개국을 제외한 총 28개국에서 인하됨(아래의 [표 51] 참조)
 - OECD 평균 최고명목세율은 2000년 30.1%에서 2010년 23.4%로 약 8.7%p 인하
 - 일본과 법인세율이 낮았던 칠레, 헝가리, 스위스의 법인세율이 인상되었고, 노르웨이와 미국은 동일 세율을 유지
 - 우리나라 명목세율은 2000년에 28%로 OECD 국가 중 상위 25위였으나, 2011년에는 22%로 20위로 높아짐

-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명목세율은 OECD 국가 중 2개국을 제외한 총 32개국에서 인하됨(아래의 [표 52] 참조)
 - OECD 평균 최고명목세율은 2000년 32.6%에서 2010년 25.5%로 7.1%p 가량 인하됨
 - 절대적으로 세율이 낮았던 칠레와 헝가리의 법인세율이 인상되었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독일 등을 중심으로 인하
 - 우리나라 명목세율은 2000년 30.8%에서 2011년에 24.2%로 낮아졌으나, OECD 국가 중 상위 21위 수준을 유지



【표 50】 OECD 국가의 과세구간 개수

(단위: 개)

호주	1	한국	3
오스트리아	1	룩셈부르크	1
벨기에	3	멕시코	1
캐나다	1	네덜란드	2
칠레	1	뉴질랜드	1
체코	1	노르웨이	1
덴마크	1	폴란드	1
핀란드	1	포르투갈	2
프랑스	2	슬로바키아	1
독일	1	스페인	2
그리스	1	스웨덴	1
헝가리	2	스위스	1
아이슬랜드	1	터키	2
아일랜드	1	영국	3
이탈리아	1	미국	8
일본	2		

자료: IBFD, 2012

【표 51】 OECD 국가의 법인세 명목최고세율(중앙정부 기준)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호주	34.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오스트리아	34.0	34.0	34.0	34.0	34.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벨기에	40.2	40.2	40.2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캐나다	29.1	28.1	26.1	24.1	22.1	22.1	22.1	22.1	19.5	19.0	18.0	16.5
칠레	15.0	15.0	15.0	16.0	16.5	17.0	17.0	17.0	17.0	17.0	17.0	20.0
체코	31.0	31.0	31.0	31.0	28.0	26.0	24.0	24.0	21.0	20.0	19.0	19.0
덴마크	32.0	30.0	30.0	30.0	30.0	28.0	28.0	25.0	25.0	25.0	25.0	25.0
에스토니아	26.0	26.0	26.0	26.0	26.0	24.0	23.0	22.0	21.0	21.0	21.0	21.0
핀란드	29.0	29.0	29.0	29.0	29.0	26.0	26.0	26.0	26.0	26.0	26.0	26.0
프랑스	37.8	36.4	35.4	35.4	35.4	35.0	34.4	34.4	34.4	34.4	34.4	34.4
독일	35.0	21.9	21.9	23.2	21.9	21.9	21.9	21.9	15.8	15.8	15.8	15.8
그리스	40.0	37.5	35.0	35.0	35.0	32.0	29.0	25.0	25.0	25.0	24.0	20.0
헝가리	18.0	18.0	18.0	18.0	16.0	16.0	17.3	20.0	20.0	20.0	19.0	19.0
아이슬랜드	30.0	30.0	18.0	18.0	18.0	18.0	18.0	18.0	15.0	15.0	18.0	20.0
아일랜드	24.0	20.0	16.0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이스라엘	36.0	36.0	36.0	36.0	35.0	34.0	31.0	29.0	27.0	26.0	25.0	24.0
이탈리아	37.0	36.0	36.0	34.0	33.0	33.0	33.0	33.0	27.5	27.5	27.5	27.5
일본	27.4	27.4	27.4	27.4	28.0	28.0	28.0	28.0	28.0	28.0	28.0	28.0
한국	28.0	28.0	27.0	27.0	27.0	25.0	25.0	25.0	25.0	22.0	22.0	22.0
룩셈부르크	28.4	28.4	22.9	22.9	22.9	22.9	22.9	22.9	22.9	21.8	21.8	22.1
멕시코	35.0	35.0	35.0	34.0	33.0	30.0	29.0	28.0	28.0	28.0	30.0	30.0
네덜란드	35.0	35.0	34.5	34.5	34.5	31.5	29.6	25.5	25.5	25.5	25.5	25.0
뉴질랜드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0.0	30.0	30.0	28.0
노르웨이	28.0	28.0	28.0	28.0	28.0	23.8	28.0	28.0	28.0	28.0	28.0	28.0
폴란드	30.0	28.0	28.0	27.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포르투갈	32.0	32.0	30.0	30.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슬로바키아	29.0	29.0	25.0	25.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슬로베니아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3.0	22.0	21.0	20.0	20.0
스페인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2.5	30.0	30.0	30.0	30.0
스웨덴	28.0	28.0	28.0	28.0	28.0	28.0	28.0	28.0	28.0	26.3	26.3	26.3
스위스	6.4	6.4	6.4	6.5	6.5	6.7	6.7	6.7	6.7	6.7	6.7	6.7
터키	33.0	33.0	33.0	30.0	33.0	30.0	20.0	20.0	20.0	20.0	20.0	20.0
영국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8.0	28.0	28.0	26.0
미국	32.7	32.7	32.7	32.7	32.7	32.7	32.7	32.7	32.7	32.8	32.7	32.7
OECD평균	30.1	29.2	28.2	27.7	26.9	25.5	24.7	24.5	23.6	23.6	23.6	23.4

자료: OECD Tax Database

【표 52】 OECD 국가의 법인세 명목최고세율(지방세 포함)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호주	34.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오스트리아	34.0	34.0	34.0	34.0	34.0	34.0	25.0	25.0	25.0	25.0	25.0	25.0
벨기에	40.2	40.2	40.2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캐나다	42.4	40.5	40.5	35.9	34.4	34.4	33.9	34.0	31.4	31.0	29.4	27.6
칠레	15.0	15.0	15.0	16.0	16.5	16.5	17.0	17.0	17.0	17.0	17.0	20.0
체코	31.0	31.0	31.0	31.0	28.0	28.0	24.0	24.0	21.0	20.0	19.0	19.0
덴마크	32.0	30.0	30.0	30.0	30.0	30.0	28.0	25.0	25.0	25.0	25.0	25.0
에스토니아	26.0	26.0	26.0	26.0	26.0	26.0	23.0	22.0	21.0	21.0	21.0	21.0
핀란드	29.0	29.0	29.0	29.0	29.0	29.0	26.0	26.0	26.0	26.0	26.0	26.0
프랑스	37.8	36.4	36.4	35.4	35.4	35.4	34.4	34.4	34.4	34.4	34.4	34.4
독일	52.0	38.9	38.9	40.2	38.9	38.9	38.9	38.9	30.2	30.2	30.2	30.2
그리스	40.0	37.5	37.5	35.0	35.0	35.0	29.0	25.0	25.0	25.0	24.0	20.0
헝가리	18.0	18.0	18.0	18.0	16.0	16.0	17.3	20.0	20.0	20.0	19.0	19.0
아이슬랜드	30.0	30.0	30.0	18.0	18.0	18.0	18.0	18.0	15.0	15.0	18.0	20.0
아일랜드	24.0	20.0	20.0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0	12.5
이스라엘	36.0	36.0	36.0	36.0	35.0	35.0	31.0	29.0	27.0	26.0	25.0	24.0
이탈리아	37.0	36.0	36.0	34.0	33.0	33.0	33.0	33.0	27.5	27.5	27.5	27.5
일본	40.9	40.9	40.9	40.9	39.5	39.5	39.5	39.5	39.5	39.5	39.5	39.5
한국	30.8	30.8	30.8	29.7	29.7	29.7	27.5	27.5	27.5	24.2	24.2	24.2
룩셈부르크	37.5	37.5	37.5	30.4	30.4	30.4	29.6	29.6	29.6	28.6	28.6	28.8
멕시코	35.0	35.0	35.0	34.0	33.0	33.0	29.0	28.0	28.0	28.0	30.0	30.0
네덜란드	35.0	35.0	35.0	34.5	34.5	34.5	29.6	25.5	25.5	25.5	25.5	25.0
뉴질랜드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0.0	30.0	30.0	28.0
노르웨이	28.0	28.0	28.0	28.0	28.0	28.0	28.0	28.0	28.0	28.0	28.0	28.0
폴란드	30.0	28.0	28.0	27.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포르투갈	35.2	35.2	35.2	33.0	27.5	27.5	27.5	26.5	26.5	26.5	26.5	26.5
슬로바키아	29.0	29.0	29.0	25.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슬로베니아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3.0	22.0	21.0	20.0	20.0
스페인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2.5	30.0	30.0	30.0	30.0
스웨덴	28.0	28.0	28.0	28.0	28.0	28.0	28.0	28.0	28.0	26.3	26.3	26.3
스위스	24.9	24.7	24.7	24.1	24.1	24.1	21.32	21.3	21.2	21.2	21.2	21.2
터키	33.0	33.0	33.0	30.0	33.0	33.0	20.0	20.0	20.0	20.0	20.0	20.0
영국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8.0	28.0	28.0	26.0
미국	39.3	39.3	39.3	39.3	39.3	39.3	39.3	39.3	39.3	39.1	39.2	39.2
OECD평균	32.6	31.6	31.6	30.1	29.2	29.2	27.5	27.0	26.0	25.7	25.6	25.5

자료: OECD Tax Database

- 아래에서는 OECD 5개 주요국 각각에 대해 법인세율 구조를 정리하였음
- 미국은 일반 주식회사(C법인)에 대해 15~35%의 8단계 누진법인세율을 적용
 - 주식회사에 부과되는 연방세금은 법인세 외에 최저한세, 이윤적립세, 개인지주회사세가 추가될 수 있고, 주정부도 별도의 법인세(최고 12%)를 부과

■ [표 53] 미국의 법인세율 구조 및 추이 ■

1984~1986		1993~현재	
과세소득(달러)	세율	과세소득(달러)	세율
0~25,000	15.0%	0~50,000	15.0%
25,000~50,000	16.5%	50,000~75,000	25.0%
50,000~75,000	27.5%	75,000~100,000	34.0%
75,000~100,000	37.0%	100,000~335,000	39.0%
100,000~335,000	42.5%	335,000~10,000,000	34.0%
335,000~1,000,000	40.0%	10,000,000~15,000,000	35.0%
1,000,000~1,405,000	42.5%	15,000,000~18,333,333	38.0%
1,405,000~	40.0%	18,333,333~	35.0%

주: 매년 주식회사 및 소득 유형에 따라 추가 과세가 부여되기도 함
 자료: 조세연구원



- 영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법인세율이 52%에 달했으나 1998년 재정법 (Finance Act) 수립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

■ [표 54] 영국의 법인세율 구조 및 추이 ■

기업규모	1998	1999~	2008~	2011~
30만 파운드 이하	31.0%	20.0%	21.0%	20.0%
30만~150만 파운드	*특정 계산식을 통해 단계적으로 세율 증가			
150만 파운드 초과	31.0%	30.0%	28.0%	26.0%

자료: 조세연구원

- 프랑스의 법인세율은 1980년대 후반까지 40%대에 있었으나 1993년부터 인하되어 33.33%의 기본세율이 유지되고 있음
 - 소규모기업과세를 적용받는 기업 중 요건 충족시 38,120유로를 한도로 15%의 경감세율을 적용
 - 법인의 사업소득이 76만 3천유로 초과시 3.3%의 사회부담금을 추가
 - 비영리단체로 산업, 상업, 수공업을 하지 않는 법인의 부동산 및 농업 소득 등에는 경감세율 24%를 적용
- 독일은 단일세율로 1980년대까지 40%대 세율을 유지하였으나 2001년부터 인하되기 시작해 2008년에 기존의 25% 법인세율이 15%로 인하됨
 - 이외에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surtax)로 지방정부의 법인소득에 대한 12.98% 수준의 영업세와 5.5%의 연대세를 감안할 때 평균유효세율은 28.8% 수준

- 일본의 법인세율은 1980년대에 40%대에 있었으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1998년에 과세베이스개편과 기본세율 인하 등의 법인세제 개혁을 단행한 이후 인하 추세가 지속되며 최근 26% 수준에 있음
 - 법인에게 주요 지방세인 법인사업세(7.56%)를 부과하되, 동 세금은 기업의 국세법인세 산정에서 비용으로 인정

■ [표 55] 일본의 법인세율 구조 및 추이 ■

구 분	1998 ~	1999 ~	2008 ~	2011 ~
보통법인	34.5%	30.0%	30.0%	25.5%
중소법인, 조합 등	25.0%	22.0%	22.0%	19.0%

주: 중소기업은 연소득 800만엔 이하의 법인임
 자료: 조세연구원



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double taxation) 조정은 국가별로 다르나, 대체로 과세소득 계산시 배당금을 공제하는 ‘수입배당금 공제제도’를 취함

■ [표 56] 주요국의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 비교 ■

	내 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초과 지분 보유시 100% 공제, • 30%(50%) 초과 지분 보유시 50%공제, • 30%(50%)이하 지분보유시 30%공제 <p>* 단, ()의 값은 비상장·비등록 법인에 해당</p>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이상 지분 보유시 100% 공제, • 20%이상 지분 보유시 80% 공제, • 20%미만 지분 보유시 70% 공제 <p>* 단, 일반 주식회사인 C법인에만 해당됨</p>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투자소득(Franked Investment Income: FII)으로 간주되어 전액 익금불산입 소득공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이상 지분을 보유한 특정주식은 100% 공제 • 이 외는 80% 공제 <p>* 단, 수취배당금 익금불산입 기초금액에서 부채이자금액을 제하고, 수취배당금 익금불산입 기초금액은 수취배당금과 단기소유분 배당금의 차액으로 산출</p>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금 전액 소득공제 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회사(자회사 지분의 10%이상 보유)의 자회사 배당수취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과세체계를 선택하는 경우 동 금액을 모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 이외 법인은 배당소득공제(수입배당금액의 40%와 이에 대한 경비 공제)와 원천분리과세(수입배당금액에 18% 원천징수세율 적용) 중에서 선택 가능

자료: 조세연구원 등

마. 자본소득

- 과세대상은 재고자산과 유가증권, 유형고정자산 및 실물자산, 무형자산 등 유사하나 과세 방식상의 차이가 존재
 - 자본소득 산출 시 우리나라는 장부가액을 적용하나 주요국들은 실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특별과세가 있으나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일반세율을 적용

▣ [표 57] 주요국 자본소득세제 비교 ▣

내 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손익을 당기순이익에 포함해 법인세 과세 • 토지와 건물 등은 기준시가, 비상장법인 주식 및 부동산 과다법인 주식 등은 실거래가로 특별부가세를 과세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6년 이후 장기자본소득 우대세율이 폐지되었고, 이후 모든 자본이득을 당기순이익에 합산해 법인세를 과세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를 적용하되 세액공제하고, 토지와 건물, 기계설비, 선박 등의 자본이득은 취득원가를 낮춤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양도익은 50만엔 기초공제 후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고, 토지양도차익은 투기 억제 등을 위해 법인세 외에 5년 초과 장기소유시 5%, 5년 이내는 10%의 특별과세를 부과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이득과세를 별도로 취급하지 않고, 법인의 모든 이익을 사업소득으로 통합 과세 • 단, 주식양도차익은 2000년부터 비과세되고 있으나, 이자는 원천징수 후 과세소득에 포함하되 원천징수액을 세액공제함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증권 및 과점주주의 양도소득, 비상장 부동산 법인의 주식양도는 비과세 • 상장주식 및 유·무형자산은 단기양도로, 상표권 등은 장기양도로 간주해 낮은 세율로 16%를 부과

자료: 조세연구원 등



바. 조세감면제도

【표 58】 주요국 조세감면제도 비교

내 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 26),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조특§ 25의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 7), 고용유지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특§ 30의3)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조특§ 63) 등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생산활동은 과세연도 국내소득과 국내생산 공제전 과세소득 중 적은 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 주식회사의 총공제가 소득보다 많으면 순영업손실(NOL)로 간주, 이전 2년 소급과 이후 20년 이월 근로자 고용, 에너지 절약, 연구개발 및 경제개발, 중소기업 연금공제 등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연구 지출 100% 자본공제, 2006년 이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175% 자본공제 연방투자공제(AIA: annual investment allowance): 연간 10만 파운드 한도로 사업시설과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지출 공제, 소규모 사업장의 정보나 통신기술 투자는 100% 초년도 공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 진흥, 자원에너지대책, 중소기업 등 경영합리화 및 근대화, 산업경쟁력 강화, 지역개발 촉진, 공해대책 등의 정책 목적을 위한 특별공제와 과세 연기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회사 배당금 수입과 다른 기업의 지분 매각으로 얻은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개인연합 회원들이 내는 협회비 비과세 농림업 사업체와 산업공제조합 소득은 사업체의 소득규모 한도내에서 15,000유로 공제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개발비(R&D) 세액공제가 공제, 환급, 손금산입의 방법으로 이루어짐

자료: 조세연구원 등

사. 연결납세제도¹¹⁾

- 미국과 프랑스, 일본은 ‘소득통산형’으로 개별회사 손익을 통산해 세액을 산출한 후 배분하고, 영국과 독일은 ‘손익이체형’으로 개별회사간에 손익을 이체해 회사별 소득을 계산

【표 59】 주요국 연결납세제도 비교

내 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80% 이상 소유하는 경우 연결납세를 통해 소득 및 손실 상쇄, 회원사간 거래 이익의 인정 이연 등의 혜택이 주어짐 • 개별 과세 시에는 그룹 전체로 누진세가 적용되고 계열사간 저세율과 최저한세 면세액, 이윤적립금 세액공제, 감가상각비 경비처리 등이 배분됨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특례의 하나인 ‘그룹공제’(group relief)로 존재 • 손실이전모델에 기반해 그룹내 청구회사가 대회사의 사업손실, 감가상각비, 관리비, 특정비용의 4개 항목을 이전 받아 과세소득과 상계 • 연결그룹의 가입·이탈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나 조세회피 목적을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음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경우 연결그룹내 각 법인의 조정된 소득금액으로 연결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세율을 곱해 다시 조정 • 연결납세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제도를 폐지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개의 기업을 다른 기업과 일체화해 단일 기관으로 과세하는 ‘기관과세제도’로 존재 • 모회사가 자회사 의결권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하고, 주식회사법상 이익각출계약에 기초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구조의 조세 중립화, 원천지 과세원칙상 약점이 되고 있는 국제거래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 • 모회사 지분이 95%이상인 경우 개별 법인별 손익 합산 후 내부자간 거래를 차감해 연결소득을 산출

자료: 조세연구원 등

11) 우리나라의 연결납세제도는 앞절의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제’를 참조

아. 주요국의 법인세제 기타 사항

【표 60】 주요국 법인세제 기타 사항

	내 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주식회사인 C 법인만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이외 S법인과 파트너십, 자영업자 등은 도관업체(flow-through entity)로서 세금신고는 하나 개인소득세만을 납부 • 연방법인세 외에 대부분의 주정부가 별도 세율로 지방정부 법인세를 부과 • 세액공제 등을 이용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감면항목에 다시 세율을 적용하는 대체최저한세제도 운영 • 기업이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해 15%의 유보이익세(Accumulated Earnings Tax)를 부과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세에 대한 부가세(surtax)제도나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 제도가 없음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제가 개인소득세제보다 낮은 세율로 되어 있어 개인기업 보다 법인으로 과세하는 것이 세법상 유리한 구조 • 특정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제도: 중소기업 중 동족회사(오너기업)의 내부유보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유보금액에 대해 10~20%의 누진세율을 적용 • 자회사의 소재지 세부담이 일본 법인세 부담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경우 외국자회사의 유보소득금액을 주식의 직·간접 소유비율에 따라 일본 내국법인의 소득에 합산해 과세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닉배당: 자본회사와 주주 사이의 거래가 쌍방 합의를 통해 실제관계를 은닉하고 과세소득을 줄이는데 이용되는 경우 해당 이익이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소득에 산입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거주지'(residence principle) 과세원칙에 근거하나, 프랑스는 '원천지' 과세원칙(territorial principle)에 근거해 조세조약 규정에 따른 것 외에는 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은 프랑스 국내원천소득에 한정 • 합명회사와 익명회사는 파트너십으로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기는 하나 선택적으로 법인세 적용이 가능

자료: 조세연구원 등

4. 주요국의 법인세제 최근 동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과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와 생산·고용 관련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세수 중립성을 위해 보전세원 확대에도 주력

【표 61】 주요국 법인세제 최근 동향

내 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2월 재무부는 미국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촉진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기존 35% → 28%)를 포함하는 ‘기업과세제도 개편 추진계획’을 발표 • R&E(research and experimentation)제도 영구화하고 세액공제율 인상, 일부 고도기술 활동에 대한 비용공제 혜택확대와 특정 자산 취득비용에 대한 초년도 전액 감가상각제도 연장 포함 • 급여지급 증가액의 10% 세액공제, 해외이전 산업 공제 제한 • 클린에너지 제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한금액 확대, 석유·가스·석탄산업에 대한 혜택 폐지 • 원가상승이 지속되는 산업(석유 등)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후입선출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 폐지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예산안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였고, 이에 따른 은행의 혜택을 상쇄하기 위해 단기부채는 0.075%에서 0.078%로, 장기자본 및 부채는 0.0375%에서 0.039%로 은행세율을 인상 • 자본공제를 위한 단기수명자산 요건을 4년에서 8년으로 연장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용 추가소득공제 비율을 125%에서 175%로 인상 • 고용과 관련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보조세를 20%에서 32%로 한시적 인상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성화를 위해 2011년 세제개편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일정요건 구비시 고용촉진 세액공제 허용 • 구입 설비에 대한 특별상각 혹은 세액공제 선택과 소득공제, CO2 감소효과 등 설비구입시 취득가액 일정비율을 특별상각하고 한도초과액은 1년간 이월공제 • 자국내 글로벌 거점을 두는 경우 소득공제 허용 • 증가형과 고수준형 시험연구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연장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되, 대법인의 공제한도액은 100%에서 80%로 축소



내 용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기업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며 특정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상법상 기장의무 면제와 회계적 법인세 부과기준이 되는 기업규모 수준을 20% 정도 상향조정 • 관계사 등으로부터 과도한 외부자금 차입 규제를 위해 과소자본세제를 ‘이자비용공제제한제도’로 대체 • 에너지세 특혜조치 폐지, 대신 국내 비행기 여객에 대해 출발세를 부과할 계획 • 컴퓨터 트레이딩 및 파생상품 금융거래 과세 신설 및 금융자산 시가평가제 도입, 스스로 형성한 무형자산(특허권, 노하우 등)의 자산화가 가능 • 금융위기에 대비한 비용 마련을 위해 은행세를 도입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자산세, 부유세 등 직접세 부담의 최고한도(tax shield) 폐지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부 기업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R&D세액 환급제도를 모든 법인에 대해 상시화 • 특수관계회사에 의해 보증되는 경우 특수관계가 아닌 회사(금융기관)에 대한 지급이자에도 과소자본세제를 적용, 한도 초과분의 손금 부인 • 특수관계 법인 간에 지급한 지적재산권의 대가도 장기보유 자산으로 간주해 자본이득 과세를 적용 • 주식취득용 차입금에 대한 비용공제 요건 신설, 동일 기업집단내 주식거래 단기자본이득 과세이연제도 폐지 • 지주회사의 과세소득 계산시 실제 발생비용의 손금인정 제도 폐지 • 2011년부터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막기 위해 은행세 도입 • 올해부터 매출액 250만유로를 초과하는 대규모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33.33%에서 36.1%로 인상

【표 62】 참고: 기타 아시아 주변국들의 법인세 현황(2012년 기준)

조세유형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1. 내국법인					
법인세율 (중앙 정부)	25% *저이윤기업 20% (과세소득, 종업원수, 자산 기준)	25% *납입자본 MYR 2.5백만 이하의 법인은 소득 MYR 50만까지 20%	17%	TWD 12만 초과시 17% *단, 최저한세 10%	30% *단, 합병 은행과 중소기업은 경감세율
과세대상	전세계	원천지	원천지	전세계	전세계
자본이득 (양도 소득)	일부 사업소득	없음 *실물자산 및 관련 기업 주식 양도는 특별과세	없음	일부 사업소득	사업소득으로 과세
이중과세 방지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2. 외국법인					
법인세율	25%	25%	17%	내국법인과 상동	30%
국내기업 주식 양도차익	있음(특정 인수·합병 제외)	내국법인과 상동	없음	있음	사업소득으로 과세

자료: IBFD, 2012

IV

소비세제

1. 부가가치세	131
2. 개별소비세	146
3. 기타 소비세제	153
4. 주요국의 소비세제 비교	163
5. 주요국의 소비세제 최근 동향	174



IV 소비세제

1. 부가가치세

가. 개요

(1) 도입경위

- 1971년 행정부가 ‘장기세제의 방향’을 공표하면서 부가가치세제 도입 검토를 시작하게 됨
 - 1972년부터 James C. Duignan, Alan A. Tait 박사 등 부가가치세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자문을 받음
 - 제1차 보고서에서 대체할 세목과 세율·면세범위·경과조치 등을 제시
 - 제2차 보고서에서 부가가치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영업세·물품세 등이 부가가치세로 대체되었을 경우 물가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림
- 1976년 정부는 그동안의 연구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1977. 7. 1.부터 시행하였음
 - 우리나라는 유럽형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아시아 최초의 나라였고, 세계에서 23번째였음



(2) 특징

- **소비형 부가가치세**: 중간재는 물론 자본재 구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음
- **일반소비세**: 모든 재화·용역에 대해 부과되는 일반소비세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과 같이 법에 열거된 특정한 품목과 용역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과 구별됨
- **간접세**: 재화·용역의 공급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 그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자가 다른 간접세에 해당됨
- **전단계세액공제법**: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세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전단계의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
- **소비지국과세원칙**: 수출재화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수입재화에 대해서는 내국물품과 동일하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채택
- **다단계거래세**: 재화나 용역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의 모든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다단계거래세임
- **물세**: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사실에 대하여만 과세되므로 물세에 해당함

(3) 현황

- 아래의 [표 6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국세징수액 전체 평균 약 164조6,636억원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약 46조5,563억원 약 28.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세목임
 - 2011년 현재 전체 국세 징수액 192조3,812억원 가운데 51조9,069억원 약 2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표 63] 최근 5년간 국세 국세징수액 중 부가가치세 비중 ■

(단위: 억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국세합계	1,530,628	1,575,286	1,543,305	1,660,149	1,923,812	1,646,636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부가 가치세	409,419	438,198	469,915	491,212	519,069	465,563
	(26.7)	(27.8)	(30.4)	(29.6)	(27.0)	(28.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기획재정부,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2012.

- 또한 아래의 [표 6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간접세 비중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약 8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11년 기준 간접세 징수액 전체 64조2,522억원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51조9,069억원 약 8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개별소비세 5조5,373억원 약 8.6%과 증권거래세 4조 2,787억원 약 6.7%이고 주세는 2조5,293억원 약 3.9%로 비중이 가장 낮음



【표 64】 최근 5년간 간접세의 비중

(단위: 억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간접세합계	518,342 (100.0)	539,361 (100.0)	569,316 (100.0)	607,324 (100.0)	642,522 (100.0)
부가가치세	409,419 (79.0)	438,198 (81.2)	469,915 (82.5)	491,212 (80.9)	519,069 (80.8)
개별소비세	51,611 (10.0)	44,994 (8.3)	36,420 (6.4)	50,658 (8.3)	55,373 (8.6)
주세	22,623 (4.4)	28,294 (5.2)	27,641 (4.9)	28,782 (4.7)	25,293 (3.9)
증권거래세	34,688 (6.7)	27,875 (5.2)	35,339 (6.2)	36,671 (6.0)	42,787 (6.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기획재정부,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2012.

□ 2010년 기준 과세유형별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65]에 나타난 바와 같음

- 전체 신고인원 523만9,103명 가운데 개인 사업자가 287만4,770명 5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간이과세 사업자가 182만8,101명 34.9%와 법인 사업자 53만6,232명 10.2%의 순서로 나타남
- 그러나 납부신고세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255조629억원 가운데 법인 사업자가 202조7,285억원 약 79.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개인 사업자가 51조5,547억원 약 20.2%이고 간이과세자는 7,797억원으로 0.3%에 불과함

■ [표 65] 2010년도 과세유형별 신고인원과 과세표준 및 납부신고세액

(단위: 명, 억원)

과세유형		신고인원	과세표준	납부신고세액
합계		5,239,103 (100.0)	36,870,281 (100.0)	2,550,629 (100.0)
일 반	법인	536,232 (10.2)	31,179,374 (84.6)	2,027,285 (79.5)
	개인	2,874,770 (54.9)	5,400,707 (14.6)	515,547 (20.2)
간이과세자		1,828,101 (34.9)	290,200 (0.8)	7,797 (0.3)

주: 과세표준은 면세분매출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1

나.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임

- 사업자란 사업목적의 영리성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개인·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
- 재화의 수입에 있어서는 그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 과세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져 있음
 - 법인과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가 적용됨
 -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 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음

-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 사업자로 제반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다.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1) 납세지

-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관청이 부과권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하며, 납세지는 사업장이 됨
 -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며, 기타 제반 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장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가 있음

(2) 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함
 - 사업자 등록을 통하여 과세관청은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여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통한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게 됨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음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음

라. 과세기간 및 과세거래

(1) 과세기간

- 과세기간이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이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기간 및 신고·납부기한을 정하는 기준이 됨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역(曆)에 의하여 1년을 2과세기간으로 나누고, 매 6월마다를 1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조세채권자에게는 조세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자에게는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마다 3개월간의 예정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표 66】과세기간

구분	과세기간	예정신고와 과세기간 최종3월		신고 납부기한
제1기	1월1일~6월30일	예정신고	1.1~3.31	4월25일
		최종3월	4.1~6.30	7월25일
제2기	7월31일~12월31일	예정신고	7.1~9.30	10월25일
		최종3월	10.1~12.31	1월25일

(2) 과세거래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의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은 사업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고 인도 또는 양도 하는 것이지만, 특정 내부거래 또는 무상의 외부거래에 대하여도 과세 형평과 조세 중립성유지를 위하여 재화의 거래로 간주하는 재화의 간주공급이 있음
-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함
- 재화의 수입이란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함

마. 과세표준 및 세율

(1) 과세표준

-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므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산정기준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됨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음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2) 세율

- 일반과세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되지 않는 한 그 거래단계나 거래내용 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동일한 10%의 세율이 적용됨
- 영세율 적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0)의 세율을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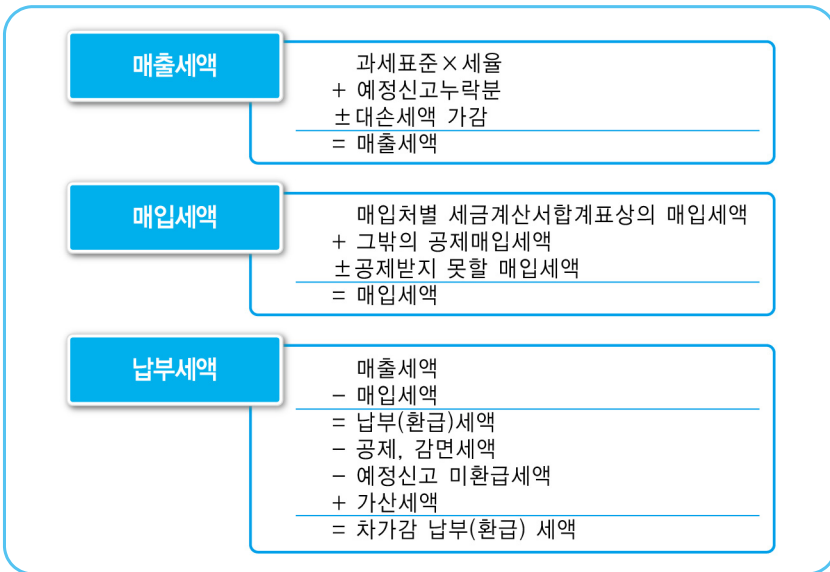
바. 납부세액의 산출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함



-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으면 가산하고 대손세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함
-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 [그림 13]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계산 ■



사.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 영세율제도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0'으로 하며,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하는 제도임

【표 67】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대상

구분	영세율대상
수출하는 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직수출 및 대행위탁수출 • 재화의 공급은 외국에서 이루어지나 실질적인 수출에 해당하는 것 • 국내거래지만 수출하는 재화·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음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함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특정한 재화·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관광알선용역 •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교관 등이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공급받는 특정한 재화·용역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열거된 재화·용역



(2) 면세

- 면세제도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를 면제함으로써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동시에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환급)하지 않는 제도임

▣ [표 68]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

구분	면세대상
기초생활 필수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가공식품 • 국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 수돗물 • 연탄과 무연탄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대중여객운송용역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국민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교육용역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신문·잡지·방송 등(광고 제외) • 예술창작·예술행사·문화행사·아마추어운동경기 • 도서관·과학관·박물관·동물원·식물원에의 입장
생산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 금융·보험 용역 • 인적용역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표, 인지, 복권 • 일정한 법소정 담배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과세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의 2/102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 [표 69]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 ■

일반과세자의 구분		공제율
일반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frac{2}{102}$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법인사업자인 경우	$\frac{6}{106}$
	개인사업자인 경우	$\frac{8}{108}$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frac{4}{104}$

-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대상 등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면세포기를 할 수 있음

아. 간이과세제도

- 일정한 영세 사업자에게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보다 간편한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간이과세제도라고 함

(1) 간이과세제도 변천과정

-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1977년부터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특례제도로써 과세특례제도를 두었으며 연간 매출액이 1,200만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2%를 부가가치세 특례세율로 과세하였음
- 과세특례제도는 이후 세법개정으로 1977년에 연간 2,400만원, 1988년에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음



□ 1996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존속 시키고, 4,800만원 초과 1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였음

□ 2000년부터 기존의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에 포함시키고 기존의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에 포함시켜 과세특례제도를 완전히 폐지함

(2) 간이과세 적용대상자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음

□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함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¹²⁾

12)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대한 구체적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4. 부동산매매업
5. 부동산임대업으로서 둘 이상의 사업장 임대료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 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7의2.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3) 과세표준과 세율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그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10%의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함

(4) 납부세액의 계산

(가) 납부세액 계산구조

-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

$$\text{납부세액} = \text{공급대가} \times \text{부가가치율} \times 10\%$$

■ [표 70]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부가가치율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20% (다만, 소매업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15%)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40% (다만, 음식점업 및 숙박업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30%)



(나) 재고 납부/매입 세액

- 재고납부세액의 계산은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율의 차이로 인한 세액 차이를 조정하는 제도임
 - 일반과세자의 경우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의 전액을 공제받는 반면에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받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인 경우 더 공제받은 세액 (1-업종별부가가치율)만큼을 재고 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임
 - 반대로 재고매입세액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간이과세자인 경우 덜 공제받은 세액 (1-업종별부가가치율)만큼을 재고매입세액공제로 공제받는 것임

2. 개별소비세

가. 개요

- 개별소비세는 일반소비세와는 달리 특정한 물품의 소비사실·특정한 장소에의 입장·유혹음식행위 및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과세하는 소비세임

(1) 연혁

-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와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됨

-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물품세법, 직물류세법, 석유류세법, 입장세법 등의 과세대상 가운데 24개의 과세물품과 5개의 과세장소를 과세대상으로 통일함
- 2007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명을 개정함

(2) 특징

- 사치세: 개별소비세는 사치성이 있는 고가의 물품에 고율로 과세함으로써 사치행위를 억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차등비례세율: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순비례세율에 의한 역진적 부담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비물품 또는 행위에 따라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함
- 탄력세율/잠정세율: 경기조절 등을 위하여 3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에 대하여 잠정세율제도를 두고 있음
- 반출과세제도: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유통 과정에 들어가는 최초의 단계인 반출시점에서 대부분 과세되고 부분적(보석·귀금속제품에 한함)으로 판매과세가 있음
- 종량세와 증가세: 특정한 재화 및 서비스의 제조·생산 또는 유통단계에도 과세대상에 따라 종량세와 증가세의 두 가지 형태로 과세방법을 달리함



(3) 현황

□ 아래의 [표 7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개별소비세의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신고건수는 전체 평균 7만3,540건으로 납부신고세액의 평균은 4조8,989억원으로 신고건수당 세액은 0.83억원임

■ [표 71] 최근 5년간 개별소비세 신고현황 ■

(단위: 건, 억원)

	개별소비세		
	신고건수 (A)	납부신고세액 (B)	신고건수당 세액 (C=B/A)
2006	97,266	51,005	0.52
2007	98,244	50,699	0.52
2008	99,229	45,827	0.46
2009	36,709	42,565	1.16
2010	36,256	54,848	1.51
평균	73,540	48,989	0.8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2010년 기준 개별소비세의 품목별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과세대상 2조 4,614억원 가운데 과세물품에 대한 과세가 2조 2,216억원으로 약 90.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과세유흥장소 1,463억원으로 약 5.94%와 과세장소 935억원 약 3.8%로 그 비중이 매우 낮음

- 과세물품 가운데에는 자동차(승용, 승합 등) 등이 약 50%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등유·중유 등 석유류가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물품은 그 비중이 매우 낮음
- 과세장소에 있어서는 전체 935억원 가운데 골프장이 805억원으로 약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내국인 카지노가 107억원으로 약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장소는 그 비중이 매우 낮음

【표 72】 2010년 기준 개별소비세 품목별 신고현황

(단위: 명, 억원, %)

	신고	비중	과세	납부	비중
	인원		기준	신고세액	
합계	7,869		**	24,614	
과세물품별	478	(6.07)	**	22,216	(90.26)
오락용기구	8	(0.10)	8	2	(0.01)
수렵용 총포류	-	-	-	0	(0.00)
녹용, 로얄제리	1	(0.01)	0	0	(0.00)
방향용 화장품	22	(0.28)	123	9	(0.04)
보석 및 진주	117	(1.49)	820	15	(0.06)
귀금속제품	129	(1.64)	1,274	30	(0.12)
고급사진기		(0.00)	-	0	(0.00)
고급시계	1	(0.01)	1	0	(0.00)
고급모피	37	(0.47)	64	13	(0.05)
고급용단	-	-	-	0	(0.00)
고급가구	1	(0.01)	2	0	(0.00)
승용자동차	43	(0.55)	55,284	5,506	(22.37)
캠핑용자동차	4	(0.05)	12	1	(0.00)
승용자동차	52	(0.66)	122,913	6,054	(24.60)
이륜자동차	2	(0.03)	31	2	(0.01)
등유	6	(0.08)	47,957	4,200	(17.06)
중유	14	(0.18)	156,822	1,202	(4.88)
프로판	14	(0.18)	7,663	149	(0.61)
부탄	21	(0.27)	21,479	4,623	(18.78)
천연가스	1	(0.01)	4,148	244	(0.99)
부생유	1	(0.01)	4,160	108	(0.44)
에너지다소비가전제품	4	(0.05)	1,196	59	(0.24)
과세장소별	95	(1.21)	155	935	(3.80)
경마장	4	(0.05)	39	20	(0.08)
투전기 시설장소	-	-	-	0	(0.00)
골프장	86	(1.09)	67	805	(3.27)
카지노(내국인)	1	(0.01)	31	107	(0.43)
카지노(외국인)	-	-	-	0	(0.00)
경륜장, 경정장	4	(0.05)	18	3	(0.01)
과세유흥장소별	7,296	(92.72)	14,620	1,463	(5.94)
유흥음식주점	7,284	(92.57)	14,609	1,462	(5.94)
외국인전용음식점	12	(0.15)	10	1	(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1



나. 과세방법

(1) 과세형태에 따른 분류

- 과세물품: 보석 등과 귀금속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단계 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과세물품은 반출단계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 과세장소: 과세장소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입장하는 행위를 소비로 보아 과세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유흥장소의 경우에는 대상행위가 유흥음식행위임
- 과세영업장소: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매출액)를 소비로 보아 과세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2) 적용세율에 따른 분류

- 종량세: 과세장소는 1인 1회 입장 행위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량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류에 대해서도 1당 혹은 Kg당 일정액을 과세하는 종량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종가세: 위 과세장소와 유류를 제외한 과세물품과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에 대해서는 종가세율을 적용

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세율

-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임

(1) 과세물품

□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함

■ [표 73] 과세물품 적용세율 ■

과세물품	세율
투전기,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등	물품가격의 20%
녹용 및 로얄젤리, 방향용 화장품	물품가격의 7%
보석류, 귀금속류, 고급사진기·시계·용단·모피·가구	과세가격의 20%
자동차	10% 또는 5%
유류	리터당 일정액의 종량세
에너지다소비 품목	물품가격의 5%

(2) 과세장소 입장행위

□ 과세장소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와 세율은 다음과 같음¹³⁾

■ [표 74] 과세물품 적용세율 ■

과세물품	세율
경마장	500원
경륜·경정장	200원
투전기 설치 장소	10,000원
골프장	12,000원
카지노	50,000원 (폐광지역 3,500원, 외국인의 경우 2,000원)

13) 이는 모두 각 시설에 1인이 1회 입장시에 부과되는 세율이다.



(3) 유흥음식행위

-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음

■ [표 75] 유흥음식행위 적용세율 ■

과세물품	세율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

라. 주요 면세대상

- 개별소비세법상 면세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함
 - 개별소비세법상 면세제도는 완전면세라는 점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부분면세제도인 면세보다는 완전면세제도인 영세율과 비슷한 면이 많음
- 개별소비세법상 주요 면세제도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음

■ [표 76] 개별소비세법상 주요 면세대상 ■

면세항목	주요 내용
수출 및 근남 면세	수출 또는 주한 외국군에 납품하기 위한 판매·반출시 면세
외교관 면세	외국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공용품으로 사용목적으로 판매·반출시 면세
외국인전용 판매장 면세	외국인전용 판매장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교관에 판매목적으로 반출시 면세

면세항목	주요 내용
조건부 면세	국가시책으로서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판매·반출시 일정한 조건으로 면세
무조건 면세	국가시책으로서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판매·반출시 일정한 조건없이 면세
입장행위 면세	골프선수 육성과 폐광지역 개발을 위해 면세
유형음식행위 면세	과세유형장소 경영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교관에게 유형음식행위시 면세
세액의 공제와 환급	이중과세 방지위해 개별소비세 납부(예정)인 물품 면세·환급

3. 기타 소비세제

가. 교통·에너지·환경세

(1) 개요

(가) 의의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다음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3년 12월 31일에 도입되었음
 -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로 운영되면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로 2012년 12월 말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될 예정



(나) 현황

□ 아래의 [표 7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최근 5년간 납부세액을 살펴보면 2008년 10조 6,558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7% 감소를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며, 2010년 납부신고세액은 12조 9,028억원임

■ [표 77]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현황 ■

(단위: 명, kl, 억원)

	신고인원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세액	납부신고세액
2006	12	322,858	126,829	16,491	110,339
2007	12	330,049	132,291	18,107	114,185
2008	13	314,738	120,201	13,643	106,558
2009	12	326,683	137,557	14,253	123,303
2010	11	322,327	137,936	8,910	129,02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2010년 유류별 납부신고세액을 살펴보면 전체 12조 9,028억원 가운데 경유가 7조 1,825억원으로 약 5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휘발유는 5조 7,203억원 44.33%를 차지하고 있음

■ [표 78] 2010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현황(유류별) ■

(단위: 명, kl, 억원, %)

	신고인원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세액	납부신고세액
합계	11 (100.00)	322,327 (100.00)	137,936 (100.00)	8,910 (100.00)	129,028 (100.00)
휘발유	6 (54.55)	110,874 (34.40)	58,641 (42.51)	1,440 (16.16)	57,203 (44.33)
경유	5 (45.45)	211,453 (65.60)	79,295 (57.49)	7,470 (83.84)	71,825 (55.6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1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휘발유·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납세의무자: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 부터 반출하는 자 등

(3) 과세표준과 과세시기

- 과세표준: 휘발유 및 경유 등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수량과 휘발유 및 경유 등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수량
- 과세시기: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
- 다만, 다음의 과세대상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됨
 - 수출하는 것,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
 - 주한외국공관에서 사용하는 물품
 -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것 등으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것
 -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하는 것 등

(4) 세율

- 기본세율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 서울은 지원 사업¹⁴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 상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2012년 4월 현재 휘발유에 대하여는 리터당 529원, 경유는 리터당 375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5) 부가세(surtax: 주행세와 교육세)

- 주행세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표준세율(36%)의 30%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음(2012년 4월 현재 26%)
- 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15% 부과

나. 주세

(1) 개요

(가) 의의

- 주세는 건국초기부터 세수입 증대라는 재정적인 측면과 국민건강의 향상을 위해 주류의 소비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주류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주세는 과세의 편의상 주류제조사 등을 납세 의무자로 하는 출고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14) 여기서 말하는 지원사업이란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이다.

- 조세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가격기구를 통하여 전가할 것을 예정하여 과세하는 간접소비세임

(나) 현황

- 아래의 [표 7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주세의 신고현황을 살펴 보면, 출고량은 전체 평균 351만 9,613kl로 납부신고세액은 2조 3,433 억원으로 매년 출고량이나 세수에는 큰 변화가 없음
 - 2010년 기준 출고량은 361만 113kl이며, 납부세액은 2조 3,759억원을 나타냄

■ [표 79] 주세 신고 현황(연도별) ■

(단위: kl, 억원)

	출고량	과세표준	납부신고세액
2006	3,389,579	33,284	22,773
2007	3,482,278	35,540	23,222
2008	3,593,497	36,395	23,934
2009	3,522,600	36,336	23,477
2010	3,610,113	38,184	23,759
평균	3,519,613	35,948	23,43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2010년 주류별 주세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조 7,021억원 가운데 국내분이 2조 3,759억원 약 87.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분은 3,262억원 12.07%를 차지하고 있음
 - 2010년 기준 국내 주류별 주세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조 3,759 억원 가운데 맥주 1조 2,413억원과 희석식 소주 9,680억원이 약



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위스키 652억원 약 3%를 포함한 기타 주류의 경우는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80】 2010년 주세 신고 현황(주류별)

(단위: kl, 억원, %)

	출고량		과세 표준		납부 신고세액	
	량	비중	표준	비중	신고세액	비중
합계	3,732,713	(100.00)	44,123	(100.00)	27,021	(100.00)
소계	3,610,113	(96.72)	38,184	(86.54)	23,759	(87.93)
탁주	412,269	(11.04)	3,904	(8.85)	194	(0.72)
약주	18,841	(0.50)	724	(1.64)	212	(0.78)
청주	18,394	(0.49)	691	(1.57)	207	(0.77)
맥주	1,909,923	(51.17)	17,240	(39.07)	12,413	(45.94)
과실주	21,519	(0.58)	999	(2.26)	270	(1.00)
증류식소주	717	(0.02)	58	(0.13)	31	(0.11)
희석식소주	930,605	(24.93)	13,464	(30.51)	9,680	(35.82)
위스키	3,417	(0.09)	906	(2.05)	652	(2.41)
브랜드	66	(0.00)	4	(0.01)	3	(0.01)
일반증류주	3,708	(0.10)	68	(0.15)	46	(0.17)
리큐르	426	(0.01)	28	(0.06)	14	(0.05)
기타주류	2,090	(0.06)	94	(0.21)	10	(0.04)
주정	288,138	(7.72)	3	(0.01)	26	(0.10)
수입분	122,600	(3.28)	5,939	(13.46)	3,262	(12.0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2) 면허제도 및 납세의무자

- 주세법상에는 주류·밀술·술덧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제조면허)나 주류를 판매하는 자(판매면허)는 세무서장의 주류면허를 받아야 함
- 납세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와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해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임

(3)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 과세대상이 되는 주류는 주정과 알코올성 음료가 포함됨
 - 주정이란 희석하여 음료로 만들 수 있는 알코올성분이며, 알코올성 음료란 알코올성분이 1도 이상의 음료 가운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성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 것을 말함
 - 주류는 그 형태별로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류,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로 구분됨
- 과세표준 산정시 다음과 같이 과세대상에 따라 종량기준과 종가기준으로 구분됨
 -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수량으로 함
 -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함



(4) 세율

□ 주세의 세율구조는 크게 종량세율과 증가세율로 구분됨

- 종량세율은 주정 1kl당 57,000원
- 증가세인 주류에 적용되는 세율은 최저 5%에서 최고 72%까지로서 주정에 따라 다름

■ [표 81] 주류의 증가세율 ■

구분	주종	세율
발효 주류	탁주	5%
	약주·과실주	30%
	청주	30%
	맥주	72%
증 류 주 류		72%
기타 주류	발효방법에 의한 제성주류로서 발효주가 아닌 것	72%
	발효에 의하여 숙성한 주류로서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이외의 것	30%

다. 담배소비세

(1) 개요

(가) 의의

□ 담배소비세 도입 전에는 국가의 전매익금으로 국가 수입 이였으나, 1984년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지방세로 도입

- 1984년 특별시와 광역시(당시 직할시)를 제외한 시·군의 수입으로 하는 담배판매세로 도입

○ 1989년부터 특별시와 광역 시도 함께 세금을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세목을 담배소비세로 명칭 변경

□ 담배소비세는 납세의무자는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자 등이지만 경제적인 부담자는 담배를 구입하여 소비하는 소비자로 전형적인 간접 소비세의 형태임

(나) 현황

□ 아래의 [표 8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지방세 평균 449,251억원 가운데 담배소비세는 28,539억원 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표 82] 최근 5년간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비중(징수액 대비) ■

(단위: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지방세	412,937 (100.0)	435,243 (100.0)	454,797 (100.0)	451,678 (100.0)	491,598 (100.0)	449,251 (100.0)
담배소비세	27,027 (6.5)	27,610 (6.3)	29,204 (6.4)	30,107 (6.7)	28,749 (5.8)	28,539 (6.4)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2011.

□ 담배소비세의 종별 2010년 과세현황을 보면, 전체 2조 8,749억원 가운데 국산담배는 2조 6,761억원 약 93%으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외산담배의 경우는 1,988억원 약 7%로 그 비중이 매우 낮음



【표 83】 2010년 종별 담배소비세 과세현황

(단위: 백만갑, 억원, %)

	합 계				국산담배				외산담배			
	수량	비중	세액	비중	수량	비중	세액	비중	수량	비중	세액	비중
합계	4,611	(100.0)	28,749	(100.0)	4,304	(100.0)	26,761	(100.0)	307	(100.0)	1,988	(100.0)
시	2,189	(47.5)	13,354	(46.5)	1,970	(45.8)	11,978	(44.8)	219	(71.1)	1,377	(69.3)
군	460	(10.0)	3,160	(11.0)	404	(9.4)	2,787	(10.4)	56	(18.3)	373	(18.8)
구	1,962	(42.5)	12,234	(42.6)	1,929	(44.8)	11,996	(44.8)	33	(10.6)	238	(12.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2011.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과세물건은 담배의 반출행위 또는 수입행위이며, 과세대상은 연초의 잎을 주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담배임
 - 흡연용 담배는 제1종 쫄면, 제2종 파이프담배, 제3종 엽권련, 제4종 각련으로 재분류되고 있음
- 납세의무자는 담배의 제조자,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수입하는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입국할 때 담배를 반입하는 반입자임

(3)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하는 중량세임
 - 쫄면의 경우에는 개비수로 하고, 기타 담배는 중량으로 하고 있음
- 과세표준이 중량 또는 개비로 되어 있으므로 세율은 정액세로 되어 있으며, 표준세율의 30% 범위내에서 탄력세율¹⁵⁾ 적용

15) 지방세법상에는 조정세율이란 표현을 하고 있음

[표 84] 담배소비세의 세율

구분		세율
흡연용 담배	제1종 : 쫄면	641원/20개비
	제2종 : 파이프담배	1,150원/50g
	제3종 : 엽쫄면	3,270원/50g
	제4종 : 각면	1,150원/50g
씹는 담배		1,310원/50g
냄새 맡는 담배		820/50g

(4) 비과세

□ 다음의 양도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됨

- 수출
-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쫄면 200개비, 엽쫄면 50개비, 기타 250그램)
- 국군, 전투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주한외국군에 납품
- 보세구역내에서의 판매
-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 시험분석 및 연구용

4. 주요국의 소비세제 비교

가. 우리나라 및 OECD국가의 소비세제 부담 현황

□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비세제 부담은 OECD 34개국 중 GDP 기준으로 28번째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표 85] 참조)



【표 85】 OECD국가의 GDP대비 소비세제 부담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2010	순위('09)
호주	8.1	9.0	7.7	8.1	8.7	8.3	7.6	-	30
오스트리아	12.2	13.3	12.5	11.9	12.3	12.1	12.0	11.8	9
벨기에	11.2	11.3	11.1	11.2	11.4	11.3	10.9	11.1	18
캐나다	10.1	10.3	9.3	9.0	8.6	8.5	7.6	7.5	29
칠레	-	-	11.0	11.9	12.4	11.1	10.3	10.7	24
체코	-	-	-	12.1	11.1	11.8	11.6	11.6	13
덴마크	16.1	15.8	15.4	15.7	15.9	16.3	15.4	15.3	2
에스토니아	-	-	-	12.8	11.9	12.9	14.7	13.5	3
핀란드	12.6	13.5	14.2	14.0	13.7	13.8	13.4	13.3	6
프랑스	12.2	12.7	11.9	11.9	11.5	11.2	10.6	10.7	20
독일	9.9	9.3	9.3	10.4	10.5	10.1	11.1	10.7	17
그리스	8.9	10.9	11.7	11.9	12.0	11.1	10.8	11.5	19
헝가리	-	-	-	16.9	15.9	14.8	15.9	16.1	1
아이슬랜드	17.7	17.2	15.9	15.2	16.4	17.1	12.0	12.9	8
아일랜드	13.6	15.4	14.0	13.2	11.7	11.4	10.1	10.3	25
이스라엘	-	-	-	13.5	12.3	12.8	12.3	12.9	7
이탈리아	7.9	8.5	10.6	10.9	11.8	10.8	10.6	11.1	21
일본	4.1	3.8	4.0	4.2	5.2	5.3	5.1	5.1	33
한국	10.7	9.6	8.6	8.2	8.7	8.2	8.2	8.5	28
룩셈부르크	7.8	9.7	9.0	10.0	10.6	10.9	10.4	10.0	23
멕시코	7.6	10.0	8.7	8.2	8.9	10.2	8.7	9.8	27
네덜란드	10.8	10.9	11.3	11.3	11.5	12.2	11.8	-	11
뉴질랜드	6.8	7.2	12.4	12.1	11.5	11.8	11.5	12.3	15
노르웨이	15.0	16.0	14.6	15.8	13.5	12.1	11.9	12.0	10
폴란드	-	-	-	12.8	11.8	12.7	11.7	-	12
포르투갈	10.3	10.7	11.9	12.7	12.2	13.4	11.6	12.4	14
슬로바키아	-	-	-	14.4	12.3	12.6	10.6	10.3	22
슬로베니아	-	-	-	15.1	14.0	13.6	13.9	14.1	4
스페인	4.7	7.8	9.2	9.2	10.1	9.9	7.1	8.5	31
스웨덴	11.1	12.6	13.0	13.4	12.7	12.8	13.5	13.5	5
스위스	5.8	5.7	5.5	6.1	6.7	6.9	6.4	6.5	32
터키	3.4	4.1	4.2	6.3	10.1	12.0	11.2	12.4	16
영국	10.2	11.7	11.0	12.0	11.6	10.8	9.9	10.8	26
미국	4.7	4.8	4.8	5.0	4.7	4.8	4.5	4.5	34
OECD평균	9.8	10.5	10.5	11.4	11.3	11.3	10.7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비세제 부담은 OECD 34개국 중 총조세 기준으로 16번째임([표 86] 참조)

【표 86】 OECD국가의 총조세대비 소비세제 부담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2010	순위('09)
호주	31.1	32.8	27.8	29.0	28.7	27.8	29.1	-	21
오스트리아	31.5	32.6	31.5	28.7	28.5	28.7	28.1	28.0	24
벨기에	27.2	25.4	26.4	25.7	25.4	25.3	25.2	25.4	27
캐나다	32.6	31.8	25.8	25.4	24.2	25.3	23.8	24.4	30
칠레	-	-	62.9	62.6	63.8	51.5	55.9	51.3	1
체코	-	-	-	32.1	31.5	31.3	33.5	33.4	15
덴마크	37.5	34.3	33.0	32.1	32.1	32.0	32.0	31.7	17
에스토니아	-	-	-	35.2	38.5	42.1	41.0	39.8	4
핀란드	35.3	33.9	32.5	30.6	29.0	31.3	31.4	31.5	18
프랑스	30.4	29.7	28.4	27.7	25.8	25.4	25.1	25.0	28
독일	27.1	25.7	26.7	28.0	28.1	29.0	29.7	29.5	20
그리스	41.2	42.7	44.5	41.3	35.3	34.8	35.9	37.1	13
헝가리	-	-	-	40.6	40.5	39.7	39.8	42.8	5
아이슬랜드	59.9	61.1	51.3	48.7	44.1	42.0	35.5	35.5	14
아일랜드	43.7	44.4	42.3	40.7	37.6	37.4	36.4	36.9	12
이스라엘	-	-	-	36.5	33.3	35.9	39.2	40.0	6
이탈리아	26.5	25.4	28.0	27.3	27.9	26.4	24.3	25.8	29
일본	16.3	14.0	13.7	15.8	19.3	19.4	19.1	32.3	33
한국	62.7	59.5	44.3	40.7	38.4	34.3	32.0	33.9	16
룩셈부르크	21.8	24.6	25.1	27.1	27.2	29.0	27.6	27.1	26
멕시코	51.2	64.8	55.3	53.9	53.0	56.7	50.2	54.2	2
네덜란드	25.2	25.6	26.4	27.2	29.2	31.8	30.7	-	19
뉴질랜드	22.3	23.1	33.6	33.4	34.7	32.1	36.6	39.3	10
노르웨이	35.3	37.5	35.5	38.6	31.8	27.8	27.8	28.0	25
폴란드	-	-	-	35.2	36.1	38.5	37.0	-	9
포르투갈	46.5	43.7	44.2	43.3	39.6	43.1	37.9	39.6	7
슬로바키아	-	-	-	35.7	36.2	39.9	36.4	36.4	11
슬로베니아	-	-	-	38.7	37.6	35.1	37.2	37.3	8
스페인	20.7	28.4	28.4	28.6	29.6	27.7	23.2	26.7	31
스웨덴	24.0	26.6	25.0	28.1	24.6	26.1	28.9	29.5	23
스위스	23.0	21.9	21.2	21.9	22.5	23.6	21.5	21.8	32
터키	25.6	36.0	27.9	37.6	42.0	49.3	45.7	47.9	3
영국	29.2	31.5	31.0	35.3	31.9	30.3	29.0	30.9	22
미국	17.6	18.8	17.4	18.0	16.0	17.7	18.5	17.9	34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나.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제)

(1) 도입

□ 부가가치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한 조세이며, 프랑스가 1968년 최초로 도입한 국가임¹⁶⁾

■ [표 87]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도입연도 ■

구분	한국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일본
연도	1977년	1968년	1968년	1973년	1969년	1989년

(2) 비과세

□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요소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있음

- 대부분의 주요국가의 경우 다음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가가치의 창출요소 등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비과세(면세)의 범위가 다른 주요 국가보다 그 범위가 넓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필수품 등에 까지 조세정책목적상 면세를 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의 경우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임

16) 사실 프랑스는 1954년 세계개혁의 일부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나, 당초 도입은 제조업자의 거래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소매업자 및 기타 서비스업자에 대하여 특별세를 부과하여 한정적이었다. 그 이후 1968년 소매거래를 포함한 모든 생산·분배단계 및 서비스 제공 거래에도 확장·적용토록 하였다.

■ [표 88]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주요 비과세 품목 ■

국가	품목
한국	토지의 양도, 금융·보험, 의료, 교육, 도서, 기초생활필수품, 우편 등
프랑스	부동산거래, 부동산임대, 금융·보험, 의료, 교육, 우편 등
독일	부동산거래, 부동산임대, 금융·보험, 의료, 교육, 우편 등
영국	토지의 양도·임대, 건물의 양도·임대, 금융·보험, 의료, 교육, 우편, 복지 등
스웨덴	부동산거래, 부동산임대, 금융·보험, 의료, 교육 등
일본	토지의 양도·임대, 주택의 임대, 금융·보험, 의료, 교육, 복지 등

(3) 세율

- 현재 단일세율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10%)와 일본(5%) 등 소수국가에 불과하며, 유럽의 주요국가의 경우에는 복수세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복수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식료품 등 면세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표 89】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세율구조

국가	표준세율	영세율	경감세율
한국	10%	0%: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및 용역 등	-
프랑스	19.6%	-	5.5%: 식료품, 수돗물, 서적, 여객운송, 사료 등 2.1%: 신문, 잡지, 의약품 등
독일	19%	-	7% : 식료품, 수돗물, 신문, 잡지, 서적, 여객운송 등
영국	20%	0%: 식료품, 수돗물, 신문, 서적, 국내여객운송, 의약품, 거주용 건물의 건축, 장애인자용 기구 등	5%: 가정용 연료 및 전력
스웨덴	25%	0%: 의약품(의료기관에 의한 처방) 등	12%: 식료품, 숙박시설의 이용 등 6%: 스포츠관전, 신문, 잡지, 서적, 영화, 여객운송 등
일본	5%	-	-

자료: European Commission Taxation and Customs Union, 「VAT Rates Applied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EU, 2011. 7. 및 日本 財務省 홈페이지(<http://www.mof.go.jp>)

(4) 중소기업자에 대한 배려

- 우리나라의 경우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간편한 과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음
-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영국은 부가가치세 소매제도와 평균세율과세제도, 독일은 과세평균율제도,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음

■ [표 90] 주요국의 중소기업자에 대한 배려조치 ■

국가	내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과세제도: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지만,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일정한 전문자격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적용배제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T 소매제도: 과세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곤란한 소매업자로서 연간 소매매출액이 1억파운드 이하의 소매업자에 대하여 세율구분시 매입액에서 매출과 관련된 세액을 추계하는 방식이 인정되고 있음 • 평균세율과세제도: 다음해 연간과세매출 예상액(세제외)이 15만파운드 이하 또는 다음해 총사업수입(세포함)이 187,500파운드 이하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세포함)에 일정세율을 곱한 액을 부가가치세납부세액으로 할 수 있음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평균율제도: 기장의무나 결산서 작성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자들에게 매출세액에 과세평균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할 수 있도록 과세평균율제도를 두고 있음 • 과세평균율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지난 역년의 매출액이 61,356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임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과세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이며, 과세사업자의 기준기간에 과세매출액 5,000만엔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



다. 개별소비세

- 주요 선진국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주류, 담배, 석유류의 세 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이들 품목 외에는 매우 제한적· 예외적으로 개별소비세제를 운용

(1) 주세(酒稅)

- 주세는 각국에서 생산되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종량세나 종가세로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주류(맥주 및 와인)의 세율을 비교하면 다음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음

■ [표 91] 주요국의 주세 비교 ■

국가	주요 과세대상	세율
한국	맥주	• 생산자 가격에 72%의 종가세가 부과
	와인	• 생산자 가격 또는 수입가격에 30%가 부과
미국	맥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세(2012. 4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배럴(31갤런) - 州稅(2010. 1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0.19\$/갤런 최대 1.07\$/갤런(알래스카 州) 최소 0.02\$/갤런(와이오밍 州)
	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세(2012. 4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콜도수¹⁾ 14% 이하 : 1.07\$/와인갤런²⁾ • 14%초과 ~ 21%이하 : 1.57\$/와인갤런 • 21%초과 ~ 24%이하 : 3.15\$/와인갤런 - 州稅(2010. 1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0.67\$/갤런 최대 2.5\$/갤런(알래스카 州) 최소 0.11\$/갤런(루이지애나 州)

국가	주요 과세대상	세율
미국	증류주	- 연방세(2012. 4 현재) • 13.5\$/proof갤런 ³⁾ - 州稅(2010. 1 현재) • 평균 3.75\$/갤런 최대 12.8\$/갤런(알래스카 州) 최소 1.5\$/갤런(와이오밍 州)
영국	맥주	• 13.71파운드/헥토리터(=100리터)
	와인	• 54.85~227.99파운드/헥토리터
	증류주	• 19.56파운드/리터
독일	맥주	• 0.79유로/헥토리터(plato ⁴⁾ 도수)
	와인 ⁵⁾	• 1.36유로/리터
프랑스	맥주	• 2.64유로/헥토리터
	와인	• 3.45유로/헥토리터
일본	맥주	• 220엔/리터
	와인	• 80엔/리터

- 주: 1) 알콜도수 24% 초과인 와인은 증류주(distilled spirits)로 분류됨
 2) 와인갤런은 약 3.8리터
 3) 1proof갤런은 100proof 또는 알콜도수 50%인 1갤론과 같음
 4) 맥주 100g당 맥주의 원액성분의 양(g). 1%의 알콜은 2.5plato도수임
 5) Sparkling wine기준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0」, 2011.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www.ttb.gov)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
 (www.taxadmin.org/fta/rate/tax_stru.html#Excise)

(2) 담배세

- 담배세의 경우 주요국이 국세로 운용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로 운용됨
 -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부과



【표 92】 주요국의 담배소비세 세율 등

국가	과세주체	주요 세율*
한국	지방정부	• 641원/20개비
미국	연방 및 주정부	- 연방세 • 1.01\$/20개비 ³⁾
		- 州稅(2012. 1. 1 현재) • 평균 1.25\$/팩 최대4.35\$/팩(뉴욕 州) 최소0.3\$/팩(버지니아 州)
영국	연방정부	• 2.38파운드/20개비
독일	연방정부	• 1.65유로/20개비
프랑스	중앙정부	• 0.43유로/20개비
일본	중앙 및 지방정부	- 국세 • 담배세: 106엔/20개비 • 담배특별세: 16.4엔/20개비
		- 지방세 • 도도부현담배세 : 30엔/20개비 • 시정촌특별세: 92.4엔/20개비

주) 1) 주요세율 부분은 결련기준으로 하였음

2) 담배세 이외에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한국 10%, 영국 24%, 독일 24.66%, 프랑스 57%, 일본 5%임

3) 2009. 4. 1.부로 인상된 소형담배(Small Cigarettes) 기준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0」, 2011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www.ttb.gov),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www.taxadmin.org/)

(3) 유류세

□ 주유국은 유류에 대해서 대부분은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한시적(2012년까지)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다른 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 유류세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임

- 독일의 경우 유류에 최소한의 친환경 연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기후변화세를 도입하고 있음

【표 93】 주요국의 유류세 비교¹⁾

국가	구성세목	주요세율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주행세 	휘발유 ²⁾	• 745.89원/리터
		경유	• 528.75원/리터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소비세 (Excise Tax) • 유출지하저장탱크 기금조성세금 (Leaking Underground Storage Tank Trust Fund Tax: LUST Tax) 	휘발유	- 연방세(2011. 6 현재) • 0.184\$/갤런 - 州稅(2012. 1 현재) • 평균 0.235\$/갤런 최대 0.412\$/갤런(캘리포니아 州) 최소 0.08\$/갤런(알래스카 州)
		경유	- 연방세(2011. 6 현재) • 0.244\$/갤런 - 州稅(2012. 1 현재) • 평균 0.245\$/갤런 최대 0.462\$/갤런(코네티컷 州) 최소 0.08\$/갤런(알래스카 州)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소비세 (탄화수소세) • 기후변화세 	휘발유	• 0.106파운드/리터
		경유	• 0.125파운드/리터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소비세 	휘발유	• 0.655유로/리터
		경유	• 0.47유로/리터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소비세 	휘발유	• 0.606유로/리터
		경유	• 0.428유로/리터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 및 석탄세 • 휘발유세 • 항공유세 • 석유가스세 • 자동차용디젤 • 지방도로세 	휘발유 ³⁾	• 55.8엔/리터
		경유	• 34.1엔/리터

주: 1) 옥탄가 94~96의 무연 휘발유, 비상업용 경유 등 수송연료 위주로 작성함

2) 옥탄가 92의 무연 휘발유 기준

3) 옥탄가 91의 무연 휘발유 기준

4)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과세부분은 제외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0」, 2011

IRS, 「Modernized e-File Test Package for Excise Tax Returns」, 2011. 6



5. 주요국의 소비세제 최근 동향¹⁷⁾

□ 최근 주요국의 소비세제의 동향을 살펴보면,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일반 소비세(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이 증가 되고 있음

-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세수입 확보방안에 따른 조치

□ 영국

- 영국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표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한 후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이를 다시 인상하였음
 - 2008년 12월 1일 이전 부가가치 표준세율 17.5%였으나, 경기부양을 위해 2008년 12월 1일부터 15%로 인하한 후 2010년 1월 1일부터 이를 다시 17.5%로 회복시킴
 - 그러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2011년 1월 4일부터 표준세율을 다시 20%로 인상함

□ 이탈리아

- 2011년 9월 17일 이후부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종전 20%에서 1%p가 인상된 21%를 적용하고 있으며, 경감세율은 종전 세율을 계속 적용함
 - 일반세율의 적용대상: 법에서 정한 경감세율 적용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
 - 10% 경감세율: 농·축·수산물 등
 - 4% 경감세율: 우유, 버터 등 특정 농산물, 축산물, 신문 등

17) 이 부분은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1. 12.을 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 스페인

- 2010년 7월 1일부터 표준세율을 2% 인상하고, 경감세율을 1% 인상함
 - 스페인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 방안 가운데 하나로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던 16%의 표준세율을 18%로 인상하고, 7%의 경감세율을 8%로 인상함

□ 일본

- 일본은 복지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소비세의 세율인상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 일본 내각은 2011년 12월말 각의(閣議) 결정을 통하여, 2014년 4월에 소비세를 8%로 인상하고 2015년 10월에 10%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여 현재 의회가 법안심사 중에 있음



재산과세

- 1. 양도소득세 179
- 2. 상속세 및 증여세 190
- 3. 종합부동산세 213



V 재산과세

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해당 연도에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인하여 얻는 소득임. 사업적으로 행해지는 부동산 등의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가. 과세체계

(1) 과세 대상

- 토지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유가증권: 대주주¹⁸⁾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 기타자산: 과점주주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2) 공제, 감면 및 비과세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당해 양도주택 하나(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팔린 토지

18)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보유한 자이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 지분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보유한 자



-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 ①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 ②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 ③ 한 울타리 안에 두 채의 집이 있을 경우
 - ④ 집을 매입한 사람이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두 채가 될 경우
 - ⑤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 ⑥ 결혼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 ⑦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나)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 세제지원 요건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소유)하는 경우 세제지원
 -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8%)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적용
 - 법인세: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30%) 배제
 -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보유시 비과세
-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에 대한 비과세

(다)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 감면
 - 자경농지의 양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 자경농지의 대토: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중전농지 3년, 신규농지 3년 자경)

○ 비과세

-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하는 때

(라) 비사업용토지

- 충족 조건(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직접 사용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직접 사용
 - 보유기간의 80% 이상을 사업에 직접 사용
- 2012. 12. 31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투기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 세율을 가산하여 적용

(마) 필요경비 공제

- 양도차익의 계산이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방법으로 과세된 경우에 적용
-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3%(미등기자산 0.3%)
- 건물: 국세청 기준시가의 3%(미등기자산 0.3%)
-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취득시 기준시가의 7% (미등기자산 1%)
- 주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기타자산: 취득시 기준시가의 1%



(바)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에 적용
 - ※ 적용배제: 미등기자산,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주택, 비사업용 토지
- 공제율
 - 일반 부동산: 10%(3년), 12%(4년) 15%(5년),
18%(6년), ... , 30%(10년 이상)
 - 1세대1주택: 24%(3년), 32%(4년), ... , 80%(10년 이상)

(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201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전면 폐지하는 대신 예정신고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3) 계산흐름도(2010년)

양도가액	(107.4)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	취득가액	(52.2)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	필요경비	(2.2) 실거래가: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양도차익	(53.1)	
-	장기보유특별공제	(9.9) 1세대1주택 이외: 10%~30% 1세대1주택: 24%~80%
양도소득	(43.2)	
-	양도소득기본공제	(1.2) 부동산과 주식에 각각 연간 250만원 한도
과세표준	(42.0)	
×	세율	
산출세액	(9.3)	
-	세액공제+감면	(2.1) 8년 자경농민 세액감면(1.4조원), 공공사업용토지 세액감면(0.3조원) 등
+	가산세	(0.0)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결정세액	(7.2)	

주: 1) 괄호 안의 내용은 해당 항목의 금액(단위: 조원)으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합한 것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1



(4) 세율

구분		년도			
		2004~2006	2007~2008	2009~2011	2012
<개 인>					
토지 건물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9~36)	기본세율 (9~36)	기본세율 (6~35)	기본세율 (6~38)
	1~2년 보유	40	40	40	40
부동산에 관한권리	1년미만 보유	50	50	50	50
	1세대 3주택 ¹⁾	60 (신설)	60	기본세율	기본세율
	1세대 2주택 ¹⁾	-	50 (신설)	기본세율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¹⁾	-	60 (신설)	기본세율	기본세율
	미등기	70	70	70	70
기타자산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비상장 주식	대기업 대주주				
	1년미만 보유	30	30	30	30
	중소기업주식	10	10	10	10
	기타	20	20	20	20
상장 주식	대기업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30	30	30
	중소기업주식	10	10	10	10
	기타	20	20	20	20
<법 인>					
토지 건물	등 기	10 (투기지역)	10 (투기지역)	10 (투기지역)	10 (투기지역)
		30 (주택)	30 (주택, 사업용토지)	30 (주택, 사업용토지)	30 (주택, 사업용토지)
부동산에 관한권리	미등기	20 (투기지역)	20 (투기지역)	20 (투기지역)	20 (투기지역)
		40 (주택)	40 (주택, 사업용토지)	40 (주택, 사업용토지)	40 (주택, 사업용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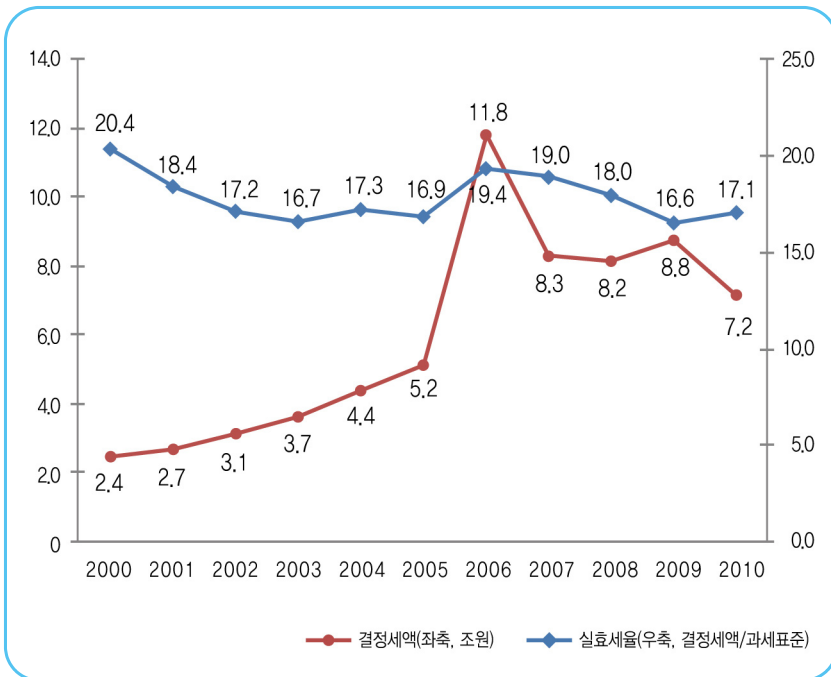
주: 1) 1세대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1~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 세율을 적용함

나. 양도소득세 현황

(1) 양도소득세수 추이

- 양도소득세수는 2000년 2.4조원에서 2010년 7.2조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음
- 2007년부터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자의 중과방침을 회피하기 위해, 2006년에는 고가 자산의 양도가 급증함
 - 과세표준의 80%를 차지하는 1억원초과 자산의 과표
: 2005년 22.7조원 → 2006년 48.5조원(114% 증가)
- 실효세율(결정세액/과세표준)은 16~20% 수준을 유지

■ [그림 14] 양도소득세수 추이: 2000~2010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양도소득금액 규모별 추이

- 양도소득 규모가 작을수록 신고건수는 많았으나, 결정세액은 소득 규모가 클수록 많아짐(2010년 기준)
 - ‘4천만 이하’: 신고건수 전체 대비 68%, 세액 전체 대비 6%
 - ‘5억 초과’: 신고건수 전체 대비 3%, 세액 전체 대비 52%
- 이는 건당 결정세액이 양도소득금액이 클수록 커지기 때문임
 - ‘4천만 이하’ 계층의 건당 세액은 2006년 168만원에서 2010년 110만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5억 초과’ 계층은 2.5~3.1억원 수준에서 변동함
 - ‘5억 초과’ 계층과 ‘4천만 이하’ 계층의 격차는 2006년 150배에서 2010년 230배로 커짐
- ‘1억 초과’ 계층이 전체 양도소득세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특히 ‘5억 초과’ 계층이 세수의 절반을 부담함
 - ‘1억 초과’ 계층: 2006년(83.4%), 2007년(81.9%), 2008년(80.0%), 2009년(86.2%), 2010년(84.7%)
- 1세대 2주택자의 중과방침이 실시된 2007년에 신고건수가 2006년에 비해 19만건 정도 감소했다가 점차 회복되어 2010년에는 54만건 수준임

■ [표 94] 양도소득금액 규모별 추이: 2006~2010년 ■

(단위: 억원, 건, 만원)

양도소득 금액 규모별	2006	2007	2008	2009	2010
<양도소득세수>					
4천만 이하	7,268 (6.1)	6,590 (7.9)	6,933 (8.5)	4,235 (4.8)	4,034 (5.6)
1억 이하	12,380 (10.5)	8,486 (10.2)	9,376 (11.5)	7,890 (9.0)	6,993 (9.7)
5억 이하	40,567 (34.3)	22,960 (27.6)	23,606 (28.9)	25,836 (29.4)	23,310 (32.4)
5억 초과	58,211 (49.2)	45,184 (54.3)	41,879 (51.2)	49,881 (56.8)	37,619 (52.3)
전체	118,426	83,220	81,794	87,842	71,956
<신고건수>					
4천만 이하	432,490 (63.9)	328,372 (67.5)	365,574 (67.4)	368,019 (64.3)	368,422 (67.7)
1억 이하	120,814 (17.9)	80,390 (16.5)	93,088 (17.2)	106,435 (18.6)	95,613 (17.6)
5억 이하	100,126 (14.8)	63,474 (13.0)	69,761 (12.9)	77,132 (13.5)	65,088 (12.0)
5억 초과	23,109 (3.4)	14,559 (3.0)	14,182 (2.6)	20,614 (3.6)	14,853 (2.7)
전체	676,539	486,795	542,605	572,200	543,976
<건당 결정세액>					
4천만 이하	168	201	190	115	110
1억 이하	1,025	1,056	1,007	741	731
5억 이하	4,052	3,617	3,384	3,350	3,581
5억 초과	25,190	31,035	29,530	24,198	25,327
전체	1,750	1,710	1,507	1,535	1,323

주: ()안은 전체 대비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세액공제·감면 현황

- 세액공제 및 감면액은 평균 2.6조원 규모임
 - － 세액공제 및 감면액은 변동성이 큰 편임
- 산출세액 대비 공제·감면액 비율은 2006년 12.6%에서 2010년 21.5%로 증가 추세임
- 세액공제는 2006년 1.2조원에서 2009년 0.9조원으로 감소하다가, 2010년에는 0.1조원으로 급감
 - － 세액공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2010년부터 공제조건이 강화되고 공제율이 인하됨
 - － 2011년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되어 공제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세액감면은 2조원 내외 규모임

■ [표 95] 세액공제·감면액 추이: 2006~2010년 ■

(단위: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세액공제 (A)	12,174	8,036	8,116	8,742	1,081	7,220
세액감면 (B)	18,748	16,404	22,273	27,531	19,959	18,893
공제+감면 (C)	30,922	24,441	30,388	36,272	21,039	26,113
산출세액 (D)	149,314	107,631	112,158	124,077	92,781	108,523
산출세액 대비 공제·감면 (C/D)	12.6	15.2	19.9	22.2	21.5	17.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2010년 기준으로 8년이상 자경농민(1.4조원)과 공공사업용토지등 (0.3조원), 농지대토(0.1조원)가 전체 감면액에서 각각 71.5%, 17.4%, 6.6%로 대부분을 차지함

【표 96】 2010년 세액감면 현황

(단위: 억원, 건, 만원)

세액감면 항목	세액 감면액	신고 건수	건당 감면액
8년이상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14,276	139,604	1,023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3,479	106,604	326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326	8,048	1,648
수도권외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341	2,058	1,65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79	1,568	1,139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13	729	1,55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85	1,284	662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감면	70	348	2,011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세감면	55	22	24,791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22	174	1,239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4	328	134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양도하는 토지 등	4	43	984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3	12	2,392
수도권밖미분양주택의취득자에대한 양도소득세의과세특례	2	35	709
전 체	19,959	260,857	76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1



2. 상속세 및 증여세

가. 개요

(1) 연혁

- 1950년 3월에 제정된 「상속세법」은 「증여세법」과 별도로 규정되어 오다가, 1952년 11월에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상속세법」에 통합
- 1996년 12월에 이루어진 「상속세법」 전면개정에서 법률의 명칭을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변경
- 2003년 12월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 도입
 - 과세유형을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능

(2) 과세방식

- ‘상속세’란 사망(실종선고 포함)을 원인으로 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및 ‘증여세’란 생존하고 있는 자로부터의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임
-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증여세는 ‘취득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음
 - 상속세는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음¹⁹⁾

19) 이러한 유산세 과세방식과 대비되는 과세방식으로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이 있음. 유산

-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득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음

(3) 현황

(가) 상속세

- 아래의 [표 9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세 징수액 가운데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약 0.7%로 매우 낮은 수준임
 - 2010년 기준 국세 징수액 전체 166조 149억원 가운데 상속세는 1조 2,028억원으로 약 0.72%를 차지하고 있음

■ [표 97] 상속세 징수추이: 2006~2010년 ■

(단위: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국세 합계	1,302,609	1,530,628	1,575,286	1,543,305	1,660,149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상속세	8,676	10,590	11,817	12,207	12,028
	(0.67)	(0.69)	(0.75)	(0.79)	(0.7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취득세 과세방식은 상속인이 무상취득하는 상속재산을 일종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를 보완한다는 것에 기초함.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에서는 유산을 취득한 자를 기준으로 하여 유산취득자 각자가 취득한 유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는 과세방식임



【표 98】 상속세 결정 현황

(단위: 명, 억원, %)

	합계		과세			과세미달	
	피상속 인수 (A+B)	상속 재산가액 (C+D)	피상속 인수 (A)	상속 재산가액 (C)	총결정 세액	피상속 인수 (B)	상속 재산가액 (D)
2006	304,215	178,046	2,221	47,363	7,576	301,994	130,683
	(100.0)	(100.0)	(0.7)	(26.6)		(99.3)	(73.4)
2007	355,789	211,035	2,603	65,429	11,666	353,186	145,606
	(100.0)	(100.0)	(0.7)	(31.0)		(99.3)	(69.0)
2008	383,001	193,625	3,997	86,360	13,329	379,004	107,265
	(100.0)	(100.0)	(1.0)	(44.6)		(99.0)	(55.4)
2009	288,503	198,051	4,340	101,083	15,464	284,163	96,968
	(100.0)	(100.0)	(1.5)	(51.0)		(98.5)	(49.0)
2010	325,045	249,150	4,547	90,191	12,217	320,498	159,859
	(100.0)	(100.0)	(1.4)	(36.2)		(98.6)	(64.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상속세의 징수 비중이 낮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위의 [표 9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근 5년 평균 피상속인 가운데 약 1%만이 상속세를 납부하고 약 99%가 과세미달자이기 때문임
 - 상속재산가액 가운데 과세되는 상속재산 역시 최근 5년 평균 37.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아래의 [표 9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자산종류별 상속세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상속재산 가운데 약 2/3 이상이 부동산임을 알 수 있음

- 최근 5년간 상속재산 전체 평균 약 6조 5,506억원 가운데 부동산(토지 및 부동산)이 약 4조 3,823억원 약 6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금융자산(유가증권 포함)이 약 1조 8,000억원 약 28%이며 기타 상속재산은 약 3,683억원 약 5.7%를 나타내고 있음
- 부동산 가운데에는 전체 약 4조 3,823억원 가운데 토지가 약 2조 7,453억원으로 약 56.2%로 건물 약 1조 6,370억원 약 43.8%보다 그 비중이 높음

■ [표 99] 자산종류별 상속세 결정 현황: 2006~2010년

(단위: 억원)

	합계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상속재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06	40,214	(100)	18,398	(45.8)	7,058	(17.6)	5,759	(14.3)	6,479	(16.1)	2,520	(6.3)
2007	56,395	(100)	22,933	(40.7)	12,082	(21.4)	9,052	(16.1)	9,315	(16.5)	3,013	(5.3)
2008	72,740	(100)	29,828	(41.0)	19,777	(27.2)	9,152	(12.6)	10,490	(14.4)	3,493	(4.8)
2009	83,492	(100)	34,088	(40.8)	22,542	(27.0)	8,799	(10.5)	12,991	(15.6)	5,072	(6.1)
2010	74,630	(100)	32,018	(42.9)	20,389	(27.3)	5,230	(7.0)	12,734	(17.0)	4,319	(5.8)
평균	65,506	(100)	27,453	(42.2)	16,370	(24.1)	7,598	(12.1)	10,402	(15.9)	3,683	(5.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나) 증여세

- 아래의 [표 100]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국세 징수액 가운데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약 1%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상속세(약 0.72%)보다는 약간 높은 편임
- 2010년 기준 국세 징수액 전체 166조 149억원 가운데 증여세는 1조 8,733억원으로 약 1.1%를 차지고 있음



【표 100】 국세 수납액 중 증여세의 비중

(단위: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국세 합계	1,302,609 (100.00)	1,530,628 (100.00)	1,575,286 (100.00)	1,543,305 (100.00)	1,660,149 (100.00)
증여세	15,216 (1.2)	17,830 (1.2)	15,953 (1.0)	12,096 (0.8)	18,733 (1.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아래의 [표 10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자산종류별 증여세 결정현황을 살펴보면, 상속재산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이 약간 높음을 알 수 있음

- 최근 5년간 상속재산 전체 평균 약 12조 7,586억원 가운데 부동산(토지 및 부동산)이 약 7조 2,101억원 약 5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금융자산(유가증권 포함)이 약 5조 638억원 약 29.4%이며 기타 증여재산은 약 7,864억원 약 3.8%를 나타내고 있음

【표 101】 증여재산종류별 결정 현황

(단위: 명, 억원)

	합계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상속재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06	107,906	(100)	43,684	(40.5)	26,911	(24.9)	14,891	(13.8)	18,312	(17.0)	4,107	(3.8)
2007	151,683	(100)	49,056	(32.3)	43,937	(29.0)	27,364	(18.0)	27,158	(17.9)	4,167	(2.7)
2008	137,112	(100)	35,989	(26.2)	29,082	(21.2)	42,827	(31.2)	25,405	(18.5)	3,809	(2.8)
2009	110,563	(100)	34,594	(31.3)	28,590	(25.9)	20,621	(18.7)	22,476	(20.3)	4,282	(3.9)
2010	130,664	(100)	36,637	(28.0)	32,027	(24.5)	23,347	(17.9)	30,788	(23.6)	7,864	(6.0)
평균	127,536	(100)	39,992	(31.7)	32,109	(25.1)	25,810	(19.9)	24,828	(19.5)	4,846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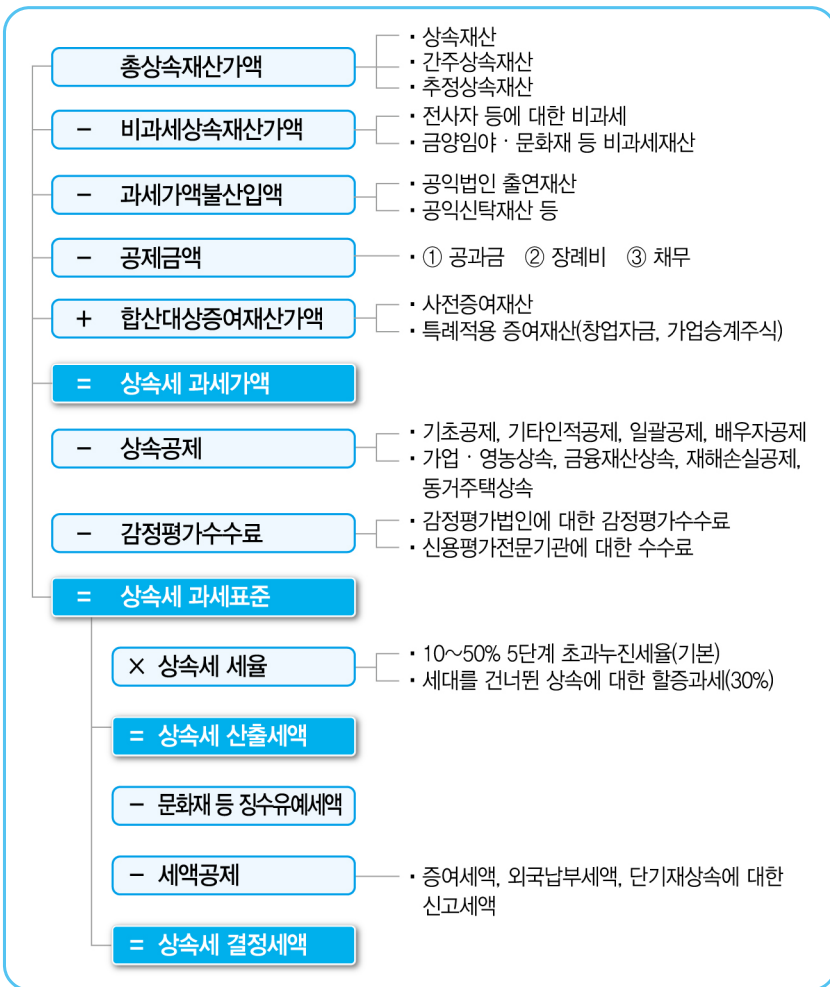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나. 상속세

(1) 과세체계

□ 유산취득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속세의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음

■ [그림 15] 상속세의 과세체계





(2) 과세대상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
 - 상속에는 유증·사인증여 및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

■ [표 102] 상속세의 과세대상 ■

구분	과세대상
거주자 사망의 경우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무제한 납세의무)
비거주자 사망의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의 모든 상속재산 (제한 납세의무)

-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간주 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으로 대별됨
 - 본래의 상속재산: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
 - 의재상속재산: 상속이나 유증·사인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 아니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
 -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
 -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2억원 이상, 2년 내 5억원 이상인 경우
- 피상속인이 생존 시 증여한 다음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됨
 -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유증 등을 한 재산,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9,900㎡이내),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1,980㎡이내), 족보 및 제구 등은 비과세됨
 - 다만, 금양임야 및 묘토는 2억원을 한도로 함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은 과세가액에 불산입

(3) 납세의무자

-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
 - ‘유증을 받는 자’라 함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수유자’라고도 함
 - 상속인이 없이 「민법」규정에 따라 특별연고자에게 상속재산의 일부가 귀속되는 경우는 특별연고자에게 상속세납부의무를 부여함
 - 특별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추정상속인·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을 수 있음



【표 103】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구분	납세의무 여부	
상속인 (태아·상속포기자 포함)	상속세 납세의무자	
유증을 받은자(수유자) 사인증여 받은자 상속개시 후 증여재산 취득자	상속인 외의 자연인 비영리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	상속세 납세의무자
	영리법인 공익법인(조건부 면제)	상속세 면제
특별연고자	상속세 납세의무자	
추정상속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세 납세의무자	

-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4)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상속공제

(가) 과세표준

-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는 유산세 과세체계이므로 피상인의 모든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고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
-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음

(나) 상속공제

- 상속세의 상속공제는 인적공제·물적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로 대별됨
 -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 등 기타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등이 있음
 - 물적공제는 가업·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음



【표 1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공제

구분	상속공제액	
인 적 공 제	기초공제	• 기초공제액 : 2억원
	자녀공제	• 자녀공제 : 자녀수 ×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녀수×5백만원×20세까지 잔연연수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60세이상) × 1인당 3천만원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5백만원×통계청고시 기대여명연수
	일괄공제	• MAX(①, ②) ① 5억원 ② 기초공제 2억원+기타인적공제 합계
	배우자공제	• MAX[min(①, ②), 5억원]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 ② 상속재산×배우자 법정상속분(30억원한도)
물 적 공 제	기업상속공제	• MAX(①, ②) ① min[기업상속재산가액의 70%, 100억원(15년 이상 : 150억원, 20년 이상 : 300억원)] ② min(2억원, 기업상속재산가액)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 상속공제	• MIN(①, ②) ① 영농 등 상속재산가액 ②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①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가액 ②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min[MAX(순금융재산가액×20%, 2천만원), 2억원]
	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 내 손실가액 - 보험금 등
	동거주택 상속공제	• MIN(①, ②) ①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가액 포함)×40% ② 5억원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① + ② ① MIN(㉠, ㉡) ㉠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 500만원 ② MIN(㉢, ㉣) ㉢ 비상장주식의 평가심의위원회 의뢰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평가수수료 ㉣ 평가대상법인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수 별로 각 1천만원	

-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 인적공제와 물적공제의 합계는 다음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begin{array}{c} \text{상속공제} \\ \text{한도액} \end{array} = \begin{array}{c} \text{상속세} \\ \text{과세} \\ \text{가액} \end{array} - \begin{array}{c} \text{상속인이} \\ \text{아닌 자에게} \\ \text{유증·} \\ \text{사인증여} \\ \text{재산가액} \end{array} - \begin{array}{c} \text{상속인의 상속} \\ \text{포기로 그 다음} \\ \text{순위의 상속인이} \\ \text{상속받은} \\ \text{재산가액} \end{array} - \begin{array}{c} \text{상속재산} \\ \text{가액에} \\ \text{가산한} \\ \text{증여재산} \\ \text{가액} \end{array}$$

(5) 세율 및 세액공제

(가) 세율

- 상속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음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서는 30%의 할증과세율을 적용함

■ [표 105] 상속세율 ■

과세표준	세 율
1억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 ~ 5억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 ~ 10억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 ~ 30억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나) 세액공제 등

□ 상속세의 산출세액에 신고납부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세액공제 등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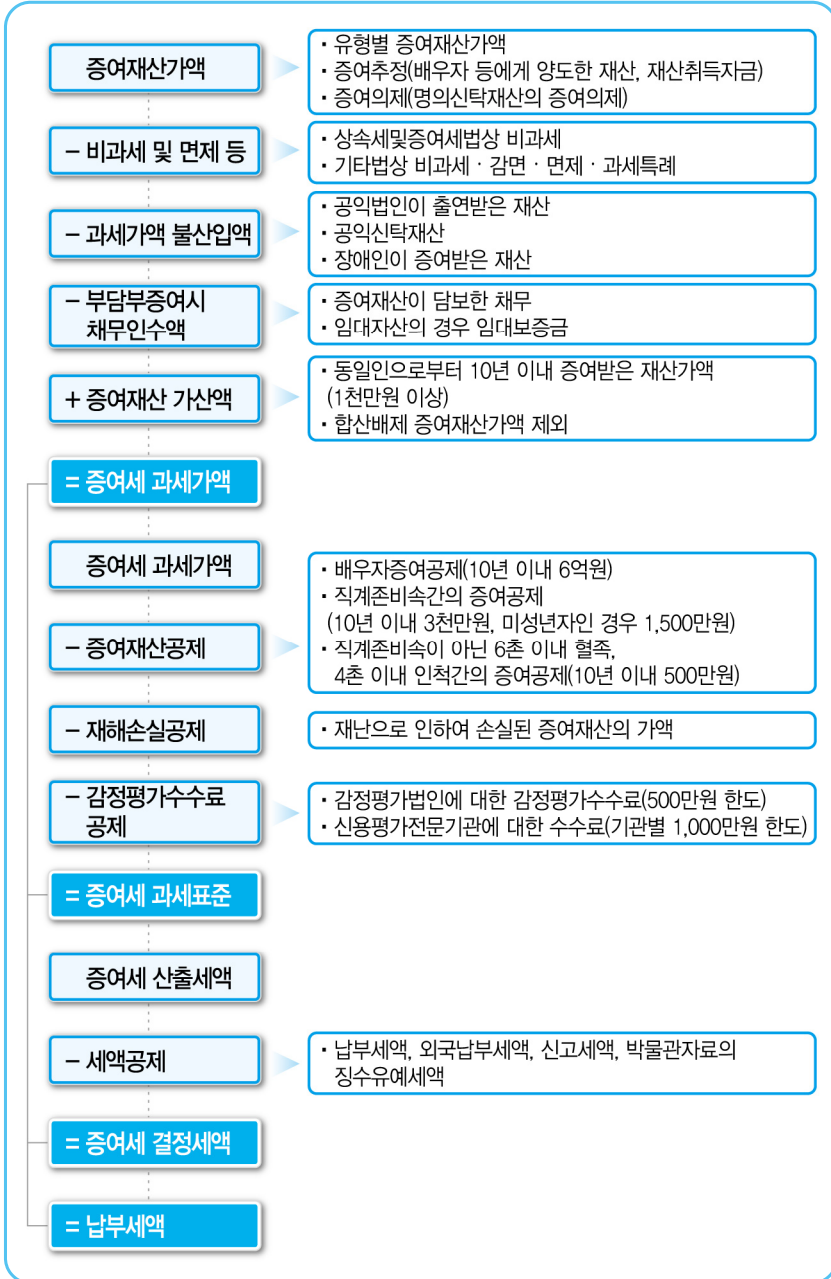
■ [표 106] 상속세의 세액공제 등 ■

구분	내 용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 문화재 등 일정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의 징수를 유예
증여세액공제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해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상당액 공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개시된 경우 그 재상속이 개시되는 기간에 따라 일정액 공제
신고세액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10% 공제

다. 증여세

(1) 과세체계

■ [그림 16] 증여세 과세체계 ■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가) 과세대상

-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표 107] 과세대상 ■

구분	과세대상
수증자가 거주자·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	거주자 등이 증여받은 모든 재산 (무제한 납세의무)
수증자가 비거주자·비영리외국법인인 경우	비거주자 등이 증여받은 재산 가운데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제한 납세의무)

-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증여재산 가운데 다음의 항목은 가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게 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 항목과 기타법령 비과세 감면 항목은 차감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소액주주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 기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품목 등
 - 과세가액불산입액의 차감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공익신탁재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 부담부증여시채무인수액의 차감
 - 증여재산이 담보한 채무, 임대자산의 경우 임대보증금
- 증여재산 가산액
 -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가액(1천만원 이상)

(나) 납세의무자

□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임

■ [표 108]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		과세상 차이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 • 예외적으로 사인증여 및 유증인 경우 상속세, 사업과 관련한 무상취득인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법인으로 보는 경우	•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
	이외의 경우	• 개인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
비영리 법인	공익법인	• 요건 충족시 과세가액불산입
	이외의 경우	• 증여세 납세의무
영리법인		• 증여세 면제

(3) 과세표준 및 증여재산공제

(가)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표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되며,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표 109】 과세표준 구분

구분	과세표준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명의신탁재산금액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특수관계법인과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의제이익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두번째 항목 이외의 합산배제 증여재산	합산배제 증여재산가액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위 항목 이외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여기서 합산배제증여재산이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산가치증가로 인한 이익, 특수관계법인과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말함

(나) 증여재산공제

□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이 친족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 등이 있음

【표 110】 증여재산공제

구분	내 용
친족 등으로 부터의 증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5백만원 위 항목 이외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백만원
재해손실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산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의 멸실 및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
감정평가 수수료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세와 동일

(3) 세율 및 세액공제

- 증여세의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
- 증여세의 세액공제에는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가 있으며, 박물관자료에 대해서는 징수를 유예하고 있음

■ [표 111] 증여세 세액공제 ■

구분	내 용
납부세액공제	•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상당액 공제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10%공제
박물관자료의 징수유예	• 박물관자료 등 일정재산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징수를 유예

라. 주요국의 상속세제 및 최근 동향

(1) 주요국의 상속세제

(가) 과세방법

- 취득세의 과세방법에는 조세이론상 유산세형 과세방식과 유산취득세형 과세방식으로 대별되며, 주요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과세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12】 주요국의 상속세 과세방법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과세 방법	유산 세형	유산 세형	유산 취득세형	유산 취득세형	유산 취득세형

(나) 증여세와의 관계

- 주요국가의 경우 상속세의 누진세율 적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전증여 행위를 막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있음
 - 주요국가가 평균 7년에서 10년간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시 합산하고 있으나, 미국은 전생애 걸친 증여세를 합산하고 일본은 상속개시일 전 3년간으로 짧은 편임

【표 113】 주요국의 상속세 계산시 증여세 고려방법

국가	내 용
미국	생애에 걸쳐 누적한 유산과 합산하여 유산세를 과세
영국	상속개시일 전 7년간의 증여재산 가액의 누적과세
독일	상속개시일 전 10년간의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과세
프랑스	상속개시일 전 10년간의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과세
일본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과세

(다) 상속공제

- 상속공제에 있어 주요국가의 기본적인 인적공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표 114] 주요국의 상속세 기본공제 등 ■

국가	내 용
미국	• 통합이전세액공제 500만달러이며, 부부에 대해서는 이전자산의 전액 비과세
영국	• 기초공제 28만 5000파운드, 배우자간 상속과세 비과세
독일	• 기본적인 인적공제 - 배우자 50만유로, 자녀 40만유로, 손자녀 20만유로 - 연령에 따른 특별생계비 공제
프랑스	• 기본적인 인적공제 - 배우자 7만 6천유로, 직계존속 및 비속 15만 1,950 유로, 장애자의 경우 15만1,950유로 추가공제
일본	• 기본공제 - 5천만엔 + 1천만엔 × 법정상속인수

(다) 세율

□ 주요국가의 상속세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표 115] 주요국의 상속세율 ■

국가	내 용
미국	• 현행 500만달러 공제 최고세율 35%, 2013년 이후 100만달러 최고세율 55% 인상 예정
영국	• 40% 일률과세
독일	• 친족 등 구분에 의한 차등누진세율 - 배우자 및 자녀 7 ~ 30% - 형제자매 12 ~ 40% - 기타 17 ~ 50%
프랑스	• 친족 등 구분에 의한 차등누진세율 - 배우자 및 직계 5~ 45% - 형제자매 35%, 45% - 4촌 55% - 5촌 이상 60%
일본	• 10~ 50%까지 6단계의 초과누진세율



(2) 최근동향

(가) 미국

- 미국은 2001년 공화당정부가 감세조정법²⁰⁾을 통하여 한시적으로 2009년 까지 단계적으로 상속세를 경감(상속세 공제한도의 확대)하여 2010년에는 상속세를 폐지하도록 입법하였음

- 그러나 민주당 정부하에서 2010년 상속세 폐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다만 조세경감법 개정²¹⁾을 통해 2012년까지 공제액 한도 및 최고세율을 35%로 유지하기로 함
 - 2011년 공제한도 500만달러 최고세율 35%
 - 2012년 공제한도 512만달러 최고세율 35%
 - 2013년 이후 공제한도 100만달러 최고세율 55%

(나) 프랑스

- 프랑스 의회는 2011년 7월 2011년 수정예산안을 승인하면서 상속·증여세율을 인상함
 - 상속·증여세 세율의 최고 2개 구간에서 5%p씩 인상됨

20)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21) The 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Tax Relief Act of 2010)

[표 116] 상속·증여세율 체계

(단위: 유로, %)

현행 과세구간	세율	개정 과세구간	세율
~ 8,072	5	~ 8,072	5
8,073 ~ 12,109	10	8,073 ~ 12,109	10
12,110 ~ 15,932	15	12,110 ~ 15,932	15
15,933 ~ 552,324	20	15,933 ~ 552,324	20
552,325 ~ 902,838	30	552,325 ~ 902,838	30
902,839 ~ 1,805,677	35	902,839 ~ 1,805,677	40
1,805,677 ~	40	1,805,677 ~	45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2011. 12.

□ 증여자의 연령에 기초한 공제제도 폐지됨

- 현행 제도에 따르면, 증여자가 증여 시점에 65세 이하인 경우 법정 연령의 직계비속을 위하거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4촌 조카를 위한 현금 증여금액은 31,395유로까지 소득공제함

(다) 뉴질랜드

□ 뉴질랜드는 2011년 세법 개정에 따라 2011년 10월 1일 이후 이전하는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폐지됨

- 1992년 상속세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를 보조하는 자산으로의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존속시켜 왔음
- 그러나 뉴질랜드 정부는 2010년 6월에 증여세의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후 정부부처와 다양한 협력을 통한 대체적인 세수 보호조치를 만들어 왔음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신탁자의 세율을 33%로 일치시켰고, 이에 따라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동기가 상당히 감소함

(라) 일본

- 일본은 2012년 세법개정 대강에서 증여세 비과세조치를 확대함
 - 젊은 세대로 자산을 조기 이전하고 양질의 주택을 보유하도록 하는 관점에서 주택취득 등 자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조치 확대·연장함

■ [표 117] 연도별 비과세금액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에너지 절약형 주택과 내진주택	1,500만엔	1,200만엔	1,000만엔
기타	1,000만엔	700만엔	500만엔

자료 : 日本の財務省, 「平成24年度税制改正大綱の概要」, 2011. 12.

3. 종합부동산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가. 과세체계

(1) 납세의무자

- 주택: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인별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인별 국내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인별 국내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표 118]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 변화: 2005~2012년 ■

과세대상		2005	2006~2008	2009~2012
	주택	4.5억	세대별 ¹⁾ 6억	6억
토 지	종합합산토지	3억	세대별 ¹⁾ 3억	5억
	별도합산토지	20억	40억	80억

주: 1)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이외의 경우에는 개인별 합산이 기준임



(2) 과세대상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함
-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

(3) 과세표준

【표 119】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과세대상		과세기준금액	적용비율
주택		인별 공시가격 ¹⁾ - 6억 ²⁾	80% (공정시장가액비율)
토 지	종합합산토지	인별 공시가격 ¹⁾ - 5억	80%
	별도합산토지	인별 공시가격 ¹⁾ - 80억	80%

주: 1) 재산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인별 공시가격에서 대상별로 재산세 감면비율만큼 제외하고 계산:
인별공시가격 × (1 - 재산세 감면율)

2) 1세대 1주택은 9억원 적용

(4) 합산배제

- 일정기준(주거전용면적, 가격, 수, 임대기간, 지역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합산배제 기타주택: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비수도권 1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노인복지주택 등

(5) 서울

■ [표 120] 종합부동산세 서울 추이 ■

과세대상		2005	2006~2008 ¹⁾	2009~2012
주택		~5.5억 1.0% ²⁾ 5.5~45.5억 2.0% 45.5억~ 3.0%	~3억 1.0% 3~14억 1.5% 14~94억 2.0% 94억~ 3.0%	~6억 0.5% 6~12억 0.75% 12~50억 1.0% 50~94억 1.5% 94억~ 2.0%
토지	종합합산 토지	~7억 1% 7~47억 2% 47억~ 4%	~17억 1% 17~97억 2% 97억~ 4%	~15억 0.75% 15~45억 1.5% 45억~ 2.0%
	별도합산 토지	~80억 0.6% 80~480억 1.0% 480억~ 1.6%	~160억 0.6% 160~960억 1.0% 960억~ 1.6%	~200억 0.5% 200~400억 0.6% 400억~ 0.7%

주: 1) 2006~2008년 동안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은 각각 0.7, 0.8, 0.9를 곱한 값을,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은 각각 0.55, 0.6, 0.65를 곱한 값을 적용

2) '과세표준 5.5억원 이하일 경우, 1%의 서울 적용'을 의미함



(6)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 흐름도

【그림 17】 종합부동산세 계산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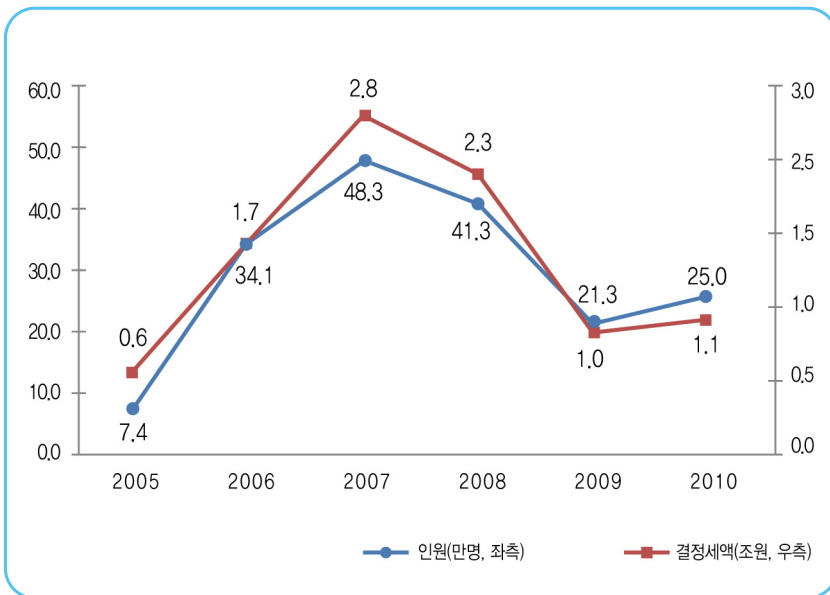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Σ 공시가격	Σ 주택공시가격	Σ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Σ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			
공제액	6억(주택자 9억)	5억	80억
×	80%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과세표준	주택분 과세표준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6억 0.5% 6~12억 0.75% 12~50억 1.0% 50~94억 1.5% 94억~ 2.0%	~15억 0.75% 15~45억 1.5% 45억~ 2.0%	~200억 0.5% 200~400억 0.6% 400억~ 0.7%
-			
누진공제	~6억 - 6~12억 150만원 12~50억 450만원 50~94억 2,950만원 94억~ 7,650만원	~15억 - 15~45억 1,125만원 45억~ 3,375만원	~200억 - 200~400억 2,000만원 400억~ 6,000만원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표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과세대상 유형별로 구분하여 계산)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토지분 산출세액
-	장기보유 특별공제: 5~10년(20%), 10년이상(40%) 고령자 공제: 60~65세(10%), 65세~70세(20%), 70세이상(30%)		
세액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5~10년(20%), 10년이상(40%) 고령자 공제: 60~65세(10%), 65세~70세(20%), 70세이상(30%)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금년도 재산세 · 종부세) - (전년도 재산세 · 종부세 × 150%)		
=			
결정세액	500만원 초과 분납, 1,000만원 초과 물납 가능 농어촌특별세: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나. 종합부동산세 현황

(1) 종합부동산세 추이

- 종합부동산세수는 2005년 0.6조원에서 2007년 2.8조원까지 증가했다가 2009년 1조원으로 급감한 후, 2010년 1.1조원이 유지되고 있음
- 세수는 과세대상자 수의 추이와 관계가 깊은데, 과세대상자는 2005년 7만명에서 2007년 48만명으로 증가했다가 2010년에는 25만명 수준으로 감소
- 이는 2006~2008년에는 과세대상자 기준이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면서 과세대상자 수가 급증했고, 2009년에는 개인별 합산으로 환원되면서 토지의 납세의무 기준액도 증가했기 때문임

■ [그림 18]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인원과 세수: 2005~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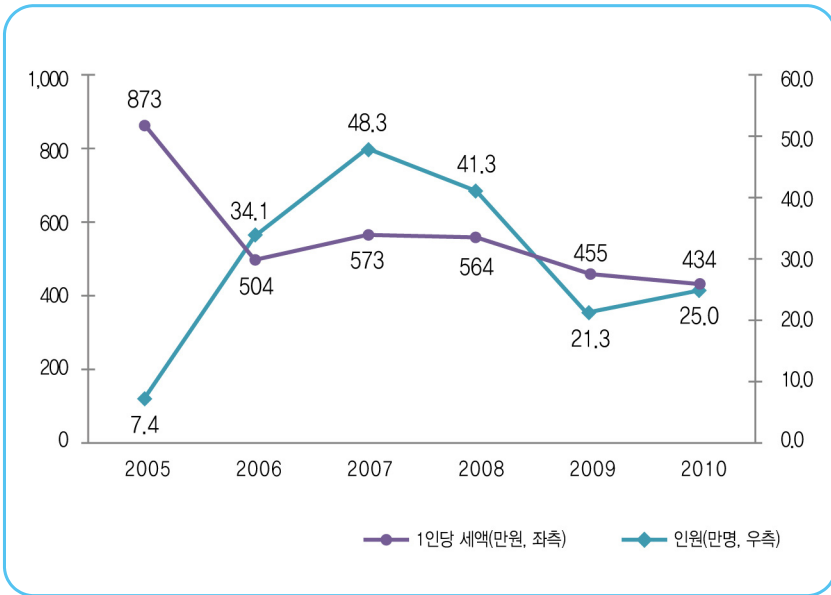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1인당 중부세액은 2005년 873만원이었다가 2006년 504만원, 2008년 564만원, 2010년 434만원으로 2006년 이후에는 400~600만원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
- 2009년을 기점으로 과세대상 인원의 감소로 세수가 함께 감소했고, 이로 인해 부가세 형태의 농어촌특별세 납부분도 2007년 4,829억원에서 2010년 2,084억원으로 감소함

■ [그림 19] 중부세 과세대상 인원과 1인당 세액: 2005~2010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과세대상별 종합부동산세

- 2010년 기준으로 과세대상별로 주택은 20.0만명, 토지는 6.1만명, 전체 25만명이 과세대상자였음. 주택과 토지의 과세대상자 단순합이 26.1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1.1만명의 경우, 주택과 토지 모두 중부세를 부담한 것으로 보임

- 주택(세부담자: 20만명)의 결정세액은 2,414억원이었으며, 개인별 공시가격은 11억원으로 추정되며 각자 121만원의 세금을 부담하였음
-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의 결정세액은 각각 4,713억원, 3,735억원이었으며, 1인당 결정세액은 각각 851만원과 6,422만원이었음

【표 121】 과세대상별 종합부동산세: 2010년

(단위: 만명, 억원, 만원, %)

과세대상	인원 (만명)	결정세액 (억원)	1인당		
			공시가격 ¹⁾ (억원)	결정세액 (만원)	결정세액/ 공시가격
주택	20.0	2,414	11	121	0.11%
토 지	종합합산토지	4,713	16	851	0.53%
	별도합산토지	3,735	313	6,422	0.21%
전체	25.0	1조 862	20	434	0.22%

주: 1) 국세통계연보에는 공시가격의 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재산세 감면율을 '0'으로 보고 국세통계연보의 과세표준을 역산하여 계산함. 주택의 경우, 보유주택수가 1호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9억원을 공제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VI

부 록

부록 1: 2012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정리	223
부록 2: 세제용어 해설	230



부록 1: 2012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정리

	조문	조세지원내용	감면분야	세목	2012 전망치
1	조특법104조의 1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일반공공 행정	법인세	14
2	조특법47조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일반공공 행정	법인세	-
3	조특법52조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특례	일반공공 행정	법인세	-
4	소득세법104조 4, 6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과완화	일반공공 행정	양도소득세	-
5	조특법122조의 3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공제	교육	소득세	15
6	조특법106조 1항2호	공장·학교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	부가가치세	추정 곤란
7	조특법106조 1항8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	부가가치세	추정 곤란
8	조특법118조 1항10호	디지털TV 방송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경감	문화/관광	관세	10
9	조특법121조의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문화/관광	법인세 소득세	-
10	조특법121조의 18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문화/관광	개별소비세	-
11	조특법106조 1항9호	천연가스(CNG)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환경	부가가치세	242
12	조특법106조 2항14호, 116 조1항 24호, 118조1항15호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환경	부가가치세 관세 인지세	-
13	조특법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사회복지	소득세	1,206



	조문	조세지원내용	감면분야	세목	2012 전망치
14	조특법74조 1항	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사회복지	법인세	1,084
15	조특법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회복지	소득세 법인세	139
16	조특법25조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회복지	소득세 법인세	49
17	조특법104조의 20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회복지	양도소득세	5
18	조특법30조의3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회복지	소득세 법인세	4
19	조특법91조의 13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사회복지	소득세	
20	조특법89조의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저울과세등 (~'12년: 비과세, ~'13년: 5%, '14년~: 9%)	사회복지	소득세	추정 곤란 ²⁾
21	조특법91조의4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배당소득세 대한 과세특례	사회복지	소득세	
22	조특법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사회복지	소득세	추정 곤란 ³⁾
23	조특법66조, 67조	영농·영어 조합법인 배당소득 저율과세	사회복지	소득세	추정 곤란 ⁴⁾
24	조특법104조의 24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사회복지	소득세 법인세	추정 곤란
25	조특법55조의 25항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회복지	소득세	추정 곤란
26	법인세법55조의 2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유예	사회복지	법인세	-
27	부가가치세법26조 1항 8호	외국인환자 유치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복지	부가가치세	-
28	조특법74조 4항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보건	법인세	50
29	조특법122조의 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	보건	소득세	2

	조문	조세지원내용	감면분야	세목	2012 전망치
30	조특법69조, 69조의2	자경농지·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림수산	양도소득세	14,472
31	조특법72조	조합법인(농협·수협·신협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림수산	법인세	3,594
32	조특법66조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및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등	농림수산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246
33	조특법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	농림수산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41
34	조특법106조 1항1호, 111조 1항2호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대한 간접세 면제	농림수산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25
35	조특법67조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및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등	농림수산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19
36	조특법85조의 1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림수산	양도소득세	5
37	조특법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농림수산	소득세	0.1
38	조특법106조 1항3호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림수산	부가가치세	추정 곤란
39	조특법106조 1항12호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림수산	부가가치세	추정 곤란
40	조특법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산업/중소 기업/에너지	소득세 법인세	25,994
41	부가가치세법 32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산업/중소 기업/에너지	부가가치세	12,817
42	조특법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산업/중소 기업/에너지	소득세	2,108
43	조특법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산업/중소 기업/에너지	소득세 법인세	1,205
44	조특법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산업/중소 기업/에너지	소득세 법인세	1,191



	조문	조세지원내용	감면분야	세목	2012 전망치
45	조특법38조의2	주식 현물출자 또는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과세특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양도소득세 법인세	288
46	조특법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법인세	274
47	조특법106조의5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가가치세	228
48	조특법106조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특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가가치세	166
49	조특법5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소득세 법인세	123
50	조특법111조의2	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개별소비세 (교통세)	92
51	조특법31조, 32조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양도소득세 법인세	81
52	조특법117조 1항 16호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증권거래세	53
53	조특법117조 1항1호, 2호, 2호의3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증권거래세	42
54	조특법40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법인세 등 과세특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양도소득세 법인세	33
55	조특법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법인세	30
56	조특법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법인세	23
57	조특법33조, 33조의2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소득세 법인세	22
58	조특법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소득세	10
59	조특법12조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소득세 법인세	4
60	조특법38조의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법인세	0.2

	조문	조세지원내용	감면분야	세목	2012 전망치
61	조특법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법인세	0.2
62	조특법5조의2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법인세	0.1
63	조특법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상속세 증여세	추정 곤란
64	조특법8조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손금산입 특례 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법인세	-
65	조특법47조의3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법인세	-
66	조특법34조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양도소득세 법인세	-
67	조특법39조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과세특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법인세	-
68	조특법45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
69	조특법46조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과세특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양도소득세 법인세	-
70	부가령33조 1항 12호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가가치세	-
71	조특법105조 1항3호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교통/물류	부가가치세	2,164
72	조특법111조의 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교통/물류	개별소비세 교육세	1,019
73	조특법 104조의9, 106조2항11호, 109조의3, 116조1항21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교통/물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인지세 관세	256
74	조특법104조의 14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교통/물류	법인세	151



	조문	조세지원내용	감면분야	세목	2012 전망치
75	조특법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교통/물류	소득세	추정 곤란
76	조특법85조의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교통/물류	법인세 양도소득세	-
77	조특법85조의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교통/물류	양도소득세 법인세	-
78	조특법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국토/ 지역개발	양도소득세	3,959
79	조특법121조의 14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국토/ 지역개발	개별소비세 교육세	243
80	조특법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국토/ 지역개발	소득세 법인세	86
81	조특법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국토/ 지역개발	양도소득세	43
82	조특법121의 17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국토/ 지역개발	소득세 법인세	9
83	조특법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국토/ 지역개발	양도소득세 법인세	3
84	조특법121조의 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국토/ 지역개발	소득세 법인세	3
85	조특법85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시 세액감면 등	국토/ 지역개발	양도소득세 법인세	1
86	조특법121조의 9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국토/ 지역개발	소득세 법인세	0.1
87	조특법85조의3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국토/ 지역개발	양도소득세 법인세	-
88	조특법121조의 10·1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국토/ 지역개발	관세	-
89	조특법121조의 21	금융중심지내 창업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국토/ 지역개발	소득세 법인세	-
90	조특법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첨단기술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과학기술	소득세 법인세	265

- 주: 1) 90개 항목은 「2012 조세지출예산서」(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작성됐으며, 일부 항목(87~90번)은 예산서에는 없으나 조문 확인을 통해 추가됐음. 향후 항목 개수(90개)는 분류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2) 「2012년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사회복지기반조성 항목(55번) 8개를 묶어서 조세지출액을 표기하여 각 내역별 전망치는 계산할 수 없음
(8개 내역들의 2012년 전망치: 18,031억원)
- 3) 조세지출예산서 56번 항목의 7개 내역들의 전망치: 2,638억원
- 4) 조세지출예산서 58번 항목의 5개 내역들의 전망치: 132억원
- 자료: 「2012 조세지출예산서」, 「2011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부록 2: 세제용어 해설

1	1가구 1주택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고급주택을 제외)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1세대 1주택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즉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일정기간(1년이상) 보유 또는 거주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요건을 말함
ㄱ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은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제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3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
	간이과세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직전 1억원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보다 간편한 방식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
	간주임대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정임대료와는 별도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전세금 등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간편장부신고자	중·소규모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를 간편장부라 하며, 이것을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자
	감가상각비	토지를 제외한 유형·무형의 고정자산은 사용 또는 시일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로 감소되는 것인데 이것을 감가라 하고, 유형·무형자산의 유지, 회수와 공정한 비용배분을 위하여 유형·무형자산의 감가액을 일정한 산정방식에 의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의 비용을 감가상각비라고 함
	감세	조세의 일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증여세의 신고를 목적으로 상속·증여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함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
	개별소비세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물품 또는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
	당기순손익	손익계산에 있어서 당기의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순액

결산조정	장부상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함으로 익금·손금을 인정받는 경우와 장부상에 익금·손금을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손금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와 같이 장부상에 계상하고 익금·손금으로 인정받는 방법
결정/경정 청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 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라고 말함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
경정결정 (=경정결정)	신고과세제도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신고의무자의 고의적인 무신고나 허위 신고 또는 고의가 아닌 부당한 신고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한 자료에 입각하여 과세표준을 정정 결정하는 것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반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준비금으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만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공급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함
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중에서 사회전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공제	예를 들어 과세에 있어서 중복과세 등의 부담이나 부담의 불공평을 피하기 위하여 중복부분 등을 계산하여 차액을 빼는 것으로, 어떤 항목에서 차감한다는 의미
과세가격	어떤 조세의 과세표준이 당해 조세의 과세물건의 특정가격인 경우에 그 과세표준을 특히 과세가격이라고 함
과세기간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함.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연도',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대로 '과세기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양자를 총칭하여 '과세연도'라고 규정
과세물건	조세법규가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행위 또는 사실
과세소득 열거주의	법률에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식(독일, 영국, 우리나라 등)
과세소득 포괄주의	포괄적인 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미국, 일본 등)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 즉 과세물건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
과세유형장소	유흥음식행위를 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특정한 장소(카바라·나이트 클럽·요정·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
과세이연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



과세표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과세표준이 수량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량세'라고 하고,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가세'라고 함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산림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산림소득과세표준 또는 양도소득금액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
과소자본 과세제도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차입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과점주주	주식회사에서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하며, 지배주주 또는 일반적으로 대주주라고 함
관세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
관세감면	일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세납부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
관세율	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율
관세환급	수입시 부담한 관세를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되돌려주는 것
교육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 교통세를 신설하여 10년간 (1994~2003) 한시적으로 적용하다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을 변경하여 과세시한을 2012년까지 연장함
교환계약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
국고보조금	국가가 특정한 행정을 지방정부로 하여금 처리케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국제거래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
귀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
귀속법인세	주주단체에서 소득세를 과세할 때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
근로소득	개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소득으로,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이 이에 속함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당해 근로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표준적인 금액을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표준공제만을 허용하는데 이를 근로소득공제라 함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수입금액(급여총액)에서 필요경비적 성질의 각종 공제를 한 금액

근로소득 세액공제	월정급여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저소득근로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소득(을중소득도 포함)이 있는 소득자의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별도의 공제신청 없이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공제된다는 점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유사하지만, 세액공제는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이후의 공제인데 대하여 소득공제는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직접 차감한다는 점에서 구별됨
근로장려세제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금융보험업	보험료를 수입하고 사고가 발생하거나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
금융소득 종합과세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기준금액(4천만 원)을 기점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
금지금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에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금시장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정요건의 금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특례 제도를 도입됨
기간과세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파악된 유량(流量, flow)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기본관세	법률에 의해 장기간 적용되는 관세
기산일	자금거래, 외환거래 등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자금의 수도 결제일 즉, 자금의 수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자
기장의무	과세요건과 과세대상에 대한 확인과 계산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거래행위 등의 내용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한 것
기준경비율 제도	사업의 주요 경비는 납세자의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 경비를 인정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제도로, 영세 사업자들이 납세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시행돼 오던 표준소득률제도가 축소신고로 인해 세금회피 수단으로 전용됨에 따라 마련된 새로운 조세제도
긴급관세	특정상품이 자국에 급속도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될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부가 긴급히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
L	
납세의무자	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
납세자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같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
농지대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
누진세	조세의 부과징수에 따른 구별로서 과세표준에 비례하여 과세하는 것을 비례세율이라 하고, 과세표준의 증가에 대하여 비례 이상으로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세율을 누진세율이라 함. 대개 소득세는 누진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누진세 제도는 고소득자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의 재분배 효과를 수반한다.



누진세율 과세표준금액이 커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를 말함. 하나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단순누진율과 과세표준을 몇 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초과누진율이 있음

ㄷ

단기재상속세액 공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가 부과된 후 10년 이내 상속인 또는 수익자의 사망으로 또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종전의 표준소득률 개념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

담배소비세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소비세

당기순손익 손익계산에 있어서 당기의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순액

대기업 2012년 기준으로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기업으로 규정 1)종업원 1천명 이상 2)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3)3년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 4)자기 자본 500억원 이상

대리납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용역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제도

대손충당금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 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의 대손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충당금

대주주 한 회사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소유하고 있거나 지배하고 있는 주주, 혹은 소액주주 이외의 주주를 말함

동업기업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동업기업 과세특례 동업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동업자가 동업 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

등록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

ㄹ

레저세 경마, 경륜 및 소싸움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발매가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ㄴ

매수합병 회사가 해산함과 동시에 다른 기존회사 또는 새로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그 영업 전부를 양도하는 것

매입세액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중 일반과세자에 대한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

매출세액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면세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발생한 조세의 납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
면허세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
명목세율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
목돈마련저축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에게 금리 및 세제상의 우대를 제공하는 예금제도
미등기양도자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때의 당해 자산으로, 주로 투기혐의자에 대한 부동산거래 추적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양도소득세계산시 최고세율(70%)이 적용됨
미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행정벌적 성격을 가지는 과태료
ㄴ	
방문판매업	상품의 판매업자 또는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
배당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배당소득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주주나 출자자가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
배우자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공제대상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
법인세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법정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증품의 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이 없는 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
보세운송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제도
보세제도	일정한 지역을 제한하여 관세 특히 수입세의 부과를 일시적으로 유보한 상태에서 장치, 검사, 제공, 가공, 전시, 건설, 판매, 운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상의 제도
보증인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법률 또는 일정한 요건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료의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보험모집인	소속된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본선인도 (FOB)	약속된 화물을 구매자측이 부른 선박에 싣고 본선에서의 화물인도완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판매자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상운임이나 선적이후의 비용은 구매자측이 부담함(free on board)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정이 일어난 곳에 원산지를 부여한다는 기준
부가가치세	재화·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간접세
부가가치율	일정기간 안에 창출된 부가가치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부가세	다른 조세(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로서 그 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 현행 세법상 부가세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소득할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가 있음
부과과세제도	확정의 권한을 과세권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며,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현재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고 있음
부진정소급	과세기간 중(납세의무의 성립일 전)에 개정된 세법 등을 그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
분납	조세는 그 납부기한 내에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거나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 납세가 지극히 어려울 때에는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징수유예를 받는 때에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
분류소득세제	소득을 몇 개의 발생원천별로 구분하고 각 소득원천에 따라 단일비례세율 또는 복수비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되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일정률의 원천징수를 하고 나면 종합소득 신고시 이를 합산하지 않는 것
비과세	조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
비사업용토지	나대지·부채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비상장주식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하며, 증권거래금액(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0.5%세율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됨
비영리법인	학술·종교·자선·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人	
사업소득	사업이란 특정인의 위험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경영 주체의 의사나 사회적·객관적 사실관계로 보아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업에서 얻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함
산림소득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육림사업을 육성·장려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산림소득세로서 분류과세하고 있음

산출세액	각 세목별 과세표준에 해당 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
상속세	상속개시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
상장주식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지정된 주식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및 작성 연월일 등이 기재된 계산서를 말하며 일종의 세금영수증임
세무조정	기업이익과 과세소득과의 차이는 조세정책상의 이유에서 생기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양자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양자간에 존재하는 차이 여하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의 산출기본은 기업이익에서 구해야 함. 이렇게 기업이익을 기본으로 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함
세번변경기준	원재료와 제품의 HS번호(세번) 변경여부를 기초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신속/정확하고 객관적이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됨
세액감면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 정책상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하며 각 개별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그 요건을 명시
세액공제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 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함
소급과세의 금지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법규 등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규 등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함
소득공제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각종 소득금액은 각종 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하는데, 이렇게 산출된 각종 소득금액에서 개개인의 특수과정을 고려하여 다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
소득처분	세무조정사항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인 내부에 남아 있으면 이를 기업회계상 순자산에 가산하여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하고, 법인외부로 유출되었으면 소득 귀속자를 파악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제도
소액주주	일반적으로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 기준으로 3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손금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비용
손금불산입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금에는 해당하지만 그 거래의 성질이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 조세이론상, 조세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출에 있어 세무조정과정에서 그것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소득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
손금산입	기업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 조치로서 기업의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즉, 자본환급에 의한 순자산의 감소요인도 아니며, 영업거래에 의한 순자산의 감소요인도 아닌 것을 손비로 인정하는) 항목
수시과세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된 저장(stock)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수유자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게 되는 사람(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
수입배당금	출자자로서 분배를 받은 이익금으로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함
시가(時價)	자산의 평가시점에서 형성되는 객관적인 시장가격이며, 원가와 더불어 회계적 측정에 쓰이는 기초개념의 하나
신고납세제도	확정의 권한을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하고 과세권자의 확정권은 2차적·보충적 지위에 유보하는 제도를 말함.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한 경우)·개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적용되고 있음
신고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은 소정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세금
신고조정	결산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익금 또는 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
실질적변형기준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실효세율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에 대해서, 각종 공제·면세점제도·조세특별조치 등에 의하여 실제의 세부담률이 차이가 있을 경우 법정세율에 대한 실제의 세부담률을 말하며, 표면세율에 대한 실제 세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됨
심사청구	심사청구라 함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국제(국제기본법상)에 있어서는 국제청장, 관세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및 방위세에 있어서는 관세청장, 지방세 중 도세(道稅)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하며, 심판청구로도 불림
알코올분	주세법상 각종 주류의 규격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15°C에 있어서 원용량 100분 중에 함유하는 0.7947의 비중을 가진 알코올의 용량
양도가액	일반적으로는 토지 등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 유상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가격
양도담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과세는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라 자산소유자에 귀속되는 증가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소유자의 지배를 떠나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기회로 과세함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별로 연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것

양도소득금액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토지, 건물, 대주주의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양도차익	소득세법 및 특별부가세(법인의 경우) 과세대상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으로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단계에서 산출되는 금액
양허관세	다자간 협상 과정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로, 일단 관세를 양허하면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있어도 더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업무무관경비	기업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비용 등의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지 않음
연결납세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법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이들 관계회사 그룹(affiliated group)에 대하여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합쳐서 계산하여 실질적 조세부담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연대납세의무	원칙적으로 하나의 납세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국제기본법과 개별세법은 이를 변형시켜 납세의무 중 납부의무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사용
연부연납	조세의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하여 주는 제도가 연납인데, 연부연납은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것
영세율	세율이라 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증가세의 경우)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증량세의 경우)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율이 영(zero)인 것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기간 경과 후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과세기간 중간에 신고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를 예정신고라 함
완전생산기준	어떤 물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협정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며, 일부 농수산물/광산물 등에 대해서 주로 적용되며 공산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준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CIF)	무역거래에서 수출업자가 화물이 목적지에 인도될 때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가격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원산지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수출입물품을 최초로 생산한 지역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
유가증권	일정한 금전이나 화물 등의 유가물(유가물)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로, 단순히 '증권'이라고도 함
이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이월결손금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



이월과세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같은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
이의신청	행정작용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처분청에 대해 취소·변경을 위한 재심을 구하는 절차
이자소득	이자란 자본의 사용대가로 원본금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하며, 이러한 자본(자금)의 이용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소득이라고 명
이전가격세제	기업이 모회사 등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해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조세를 부과하는 것
이종과세	동일한 과세대상사실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의 총칭임. 예를 들면, 법인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의 과세와 배당수입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에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재산이 가산된 경우의 상속세와 가산된 증여재산에 과해진 증여세 등이 있음
익금	자산의 판매, 유상 또는 무상에 의한 자산양도 내지 역무의 제공, 무상에 의한 자산의 양수 기타 거래 중 자본 등 거래 이외의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익금불산입	법인세법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익금으로 간주하는 순자산증가설에 의거하여 소득개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 중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명문규정을 둔 사항만을 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는 바,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
익금산입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을 구성하는 대상(또는 요소)이 아니나 세무회계상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수익, 즉 익금에 부가적으로 포함시키는 것
인적공제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 등의 가족상황 등 인적사항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
인지세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하는 수입인지를 통하여 과세하는 조세
일감 몰아주기	모기업의 대주주가 자신의 특수관계자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그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높이는 것
일반특혜관세	어떤 특정국이나 특정지역에 대하여 통상관세를 유지·촉진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일반 수입품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
임대사업자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된 자

임시투자세액 공제	기업이 기계장치·설비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규 구입한 경우 투자 금액의 일정액을 각 과세년도의 산출세액에서 감해주는 것을 투자세액공제라 하는데, 이 가운데 정부가 경기조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시적으로 인정해 시행하는 것
입주권	아파트를 특별히 분양대상자로 확정지어 그 대상자가 시행처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 확인 된 자나, 공공기관에서 대상자로 확정지어 통보를 한 철거민으로써 공공기관에 확인 될 수 있을 때 그 권리
ㄷ	
자기공급	간주공급의 한 형태로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를 말함
자경농지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서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함. 8년이상 자경한 후에 양도하게되는 경우에는 2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음
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은 2개 이상의 국가가 통합하여 상호간의 무역에 대해서는 관세나 수출입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역외 제국과의 무역에 대해서는 각국이 각각 독자의 관세, 기타 통상규칙을 적용하는 제도
자회사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할 때에는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얻게 되므로, 투자회사를 모회사라 하고 피투자회사를 자회사라고 함
잠정관세	일정기간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의 관세로, 잠정관세가 기본관세보다 우선 적용됨
잠정세율	우선 임시로 정하여 시행하는 영구성이 없는 세율로, 현행 국세에 관한 세법 중 개별소비세법과 관세법에서만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장기보유특별 공제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
장기저당담보 주택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매분기별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만기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계약조건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
장기주택마련 저축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저축상품으로, 가입 자격은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거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로 가입일 현재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로 한정됨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탁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토지·건축물·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
점감구간	근로장려세제에서 일정 소득구간 이상에서는 근로장려금이 점차 줄어드는 구간
점증구간	근로장려세제에서 근로 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는 구간
접대비	기업활동비중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교제비·기밀비·사례금 등과 같은 항목의 지출금을 뜻함
정상가격	생산원가에 적당한 평균이윤을 부가한 가격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이상적인 가격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
제척기간	법률상 일정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이 예정해 놓은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 내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 내지 실추가 되는 기간
조세특례제한법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조경관세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시장이나 산업기반을 교란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관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
증가세	과세표준에 의한 조세분류로서 증가세는 과세물건의 가격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중량세	물품의 수량·길이·면적·중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
종합부동산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유세를 부과하는 조세
종합소득세제	소득의 원천이나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주민세	지방세의 하나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그 지역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그들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주세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비세
주정	세법상으로는 증류주 중의 하나로서 특정한 방법에 의하여 만드는 고농도의 알코올성분을 가진 주류
주택임차차입금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전세)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및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간예납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과세기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정해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세법은 과세기간이 모두 지난 후에 확정된 소득금액에 의해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조세수입의 조기확보, 부담의 분산 내지는 조세회피의 미연방지 등을 위해 이 제도를 두고 있음
중견기업	경영학 혹은 경제학 용어로 현장 또는 언론에서 주로 사용됐는데, 통상적으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소기업,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기업으로 분류하는데 중견기업은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 1,000명 미만의 사업장
중소기업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 종업원이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며 3년평균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이며 자기자본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의 기업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증여재산공제	친족 간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등록세, 레저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2001년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함으로써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원
지방소득세	그 지역에서 발생한 개인의 소득에 대해 지자체가 과세권을 갖고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소득분으로는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총액의 0.5%를 부과함
지방소비세	2010년부터 신설된 세목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원확충 효과가 자치단체 수입으로 연결되는 지방재정의 선순환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 5%를 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
지점세	본래 외국기업이 자국에 합작투자의 형태로 진출한 경우에는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후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지점형태로 진출한 경우에는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 후 소득을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송금한 후 당해 외국에서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관할이 미치지 못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이를 시정하기 위해 외국법인의 지점에 대하여는 일반법인세에 추가하여 지점세를 부과하는 것
지정기부금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지주회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투자신탁,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상법상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유한회사, 상법상 합자회사 형태의 투자합자회사, 민법상 조합형태의 투자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형태인 투자익명조합,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말함

㉠

청산소득 법인이 사업수행을 종결짓고, 그 시점에서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출자자에게 반제할 것을 반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을 때 이것을 청산소득이라 한다.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합병에 의해 소멸하는 때와 해산에 의한 때와 다르다.

체납처분 조세 및 기타 공법상의 채권이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교부청구를 하고, 교부받은 금전으로 국세채권이나 공법상의 채권 등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

체비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환지에서 제외하는 토지

초과반환금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

총당금 아직 지출은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연도의 부담이 될 금액에 대한 준비로서 추정한 금액을 불특정형태의 자산으로 유보하고 있는 것

취득가액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필요 경비로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취득의 대가 또는 취득의 대가로 의제하는 것

취득세 부동산·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 부과되는 조세

㉡

코스닥시장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을 (주)코스닥증권시장의 중개로 거래하는 시장을 말함: KOSDAQ(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코스닥주식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으로, 증권거래금액(과세표준)을 기준으로 0.3%세율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됨

코스피주식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으로, 증권거래금액(과세표준)을 기준으로 0.15%세율로 증권거래세를, 0.15%세율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됨

㉢

탄력관세 수입품에 대하여 국내산업 보호나 물가의 안정 내지는 경제적인 이유로 국정 관세율을 증감·변경할 수 있는 관세

탄력세율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세율

퇴직급여충당금 장래에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될 퇴직금을 미리 총당금의 형태로써 계상해 놓은 것

퇴직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단체퇴직보험금의 총칭
퇴직소득공제	퇴직급여액이 있는 자에 대하여 퇴직소득 특별공제를 한 금액에서 근무 연한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
특별공제	주로 소득세의 각종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등 이외의 공제하거나,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세율조정 등을 위해서 공제하는 것
특수관계인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에 쓰여지는 용어인데, 법인세법상으로는 ①주주 1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해당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해당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③해당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과 그 친족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④ 해당 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을 말함
보세구역	외국물품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채로 둘 수 있는 장소로서 일정한 내국물품도 보세구역에 한하여 저장할 수 있음. 외국물품이 수입되었을 때 보세구역에 있는 동안은 관세징수를 유예 받고 여기서 수출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국내에 옮겨져 내국물품이 된 때에야 과세됨
특혜마진	최혜국 대우 관세와 특혜관세의 차이
II	
평탄구간	근로장려세제에서 점감구간 앞에 근로장려금의 최대급여가 유지되는 구간
표준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60만원) 항목별공제(실액공제) 대신 획일적으로 연 100만원을 공제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
표준소득율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벌었는지 추정하기 위해 세무당국이 정해놓은 기준. 회계장부를 작성했다라도 장부가 너무 부실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도 사용됨
필요경비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를 인정
III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파생상품시장 등 국내 증권 관련 거래를 총괄하는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국내의 유일한 유가증권 중앙예탁결제기관으로,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
할당관세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의 일종
협정세율	1국이 타국과 협상해서 체결한 통사조약 또는 관세계약에 의하여 정한 세율
확정신고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조세채권·채무를 확정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고납세제도에 있어서 대표적인 납세신고임



환급	돈이나 물건을 되돌려 주는 행위로 환부라고도 말함.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했거나 착오에 의해 납부의무 없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그리고 세법에 의해 환급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입세액 등)에 조세채권자(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행위를 환급이라 함
환지처분	토지개발·개발이나 도시계획 등의 사업 결과 그 토지상에 존재하는 종래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에 변동이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이에 해당하는 다른 토지나 금전으로써 청산하는 처분
HS품목분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

알기쉬운 조세제도

발 간 일	2012년 5월 11일
편 집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발 행 인	주 영 진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2070·3114
인 쇄 처	(주)경인디앤피 TEL. 02·741·5941~5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과 (TEL 02·788·3778)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ISBN 978-89-6073-529-3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2